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플레이스

역사와 오늘

교정교화에 대한 훈훈한 사람 냄새 청주교도소

교정의 공간

조화로운 화합으로 내일의 희망을 일구다

청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지금, 이 사람

한국교정학회 오경식 회장

교정 아카이브

교정 논문 I 이민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용자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 논문 II 윤동호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 통제를 위한

교정행정 개선 방안

교정 리포트 김병배

교정보호체계의 재범방지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 방안 연구

전문가 칼럼 심혜인

여성수형자에 대한 국내 교정정책 개선방향

교정 판례 이세린

엄중관리대상자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고찰

교정 백과 심혜인

마약류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정 NEWS

02

2023 February + Vol. 561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월
2023년 2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기획·디자인
반디컴 Tel. 02-2272-1190

월간 <교정>은 웹진(cowebzine.com)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정 플레이스 Corrections PLACE

| | |
|---|-----------|
| 역사와 오늘 교정교화에 더한 훈훈한 사람 냄새 청주교도소 | 04 |
| 교정의 공간 조화로운 화합으로 내일의 희망을 일구다 청주교도소 직업훈련과 | 10 |
| 지금, 이 사람 한국교정학회 오경식 회장 | 14 |
| 외부 칼럼 검은 토끼의 해를 관동하는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 18 |



교정 아카이브 Corrections ARCHIVE

| | |
|---|------------|
| 교정 논문 I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용자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희 법무부 교정기획과 교정관 | 20 |
| 교정 논문 II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 통제를 위한 교정행정 개선 방안 윤동호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사 | 38 |
| 교정 리포트 교정보호체계의 재범방지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 방안 연구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전공 교수 | 70 |
| 전문가 칼럼 여성수형자에 대한 국내 교정정책 개선방향 심혜인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96 |
| 교정 판례 엄중관리대상자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고찰 이세린 안양교도소 보안과 교감 | 98 |
| 교정 백과 마약류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심혜인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114 |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정본부TV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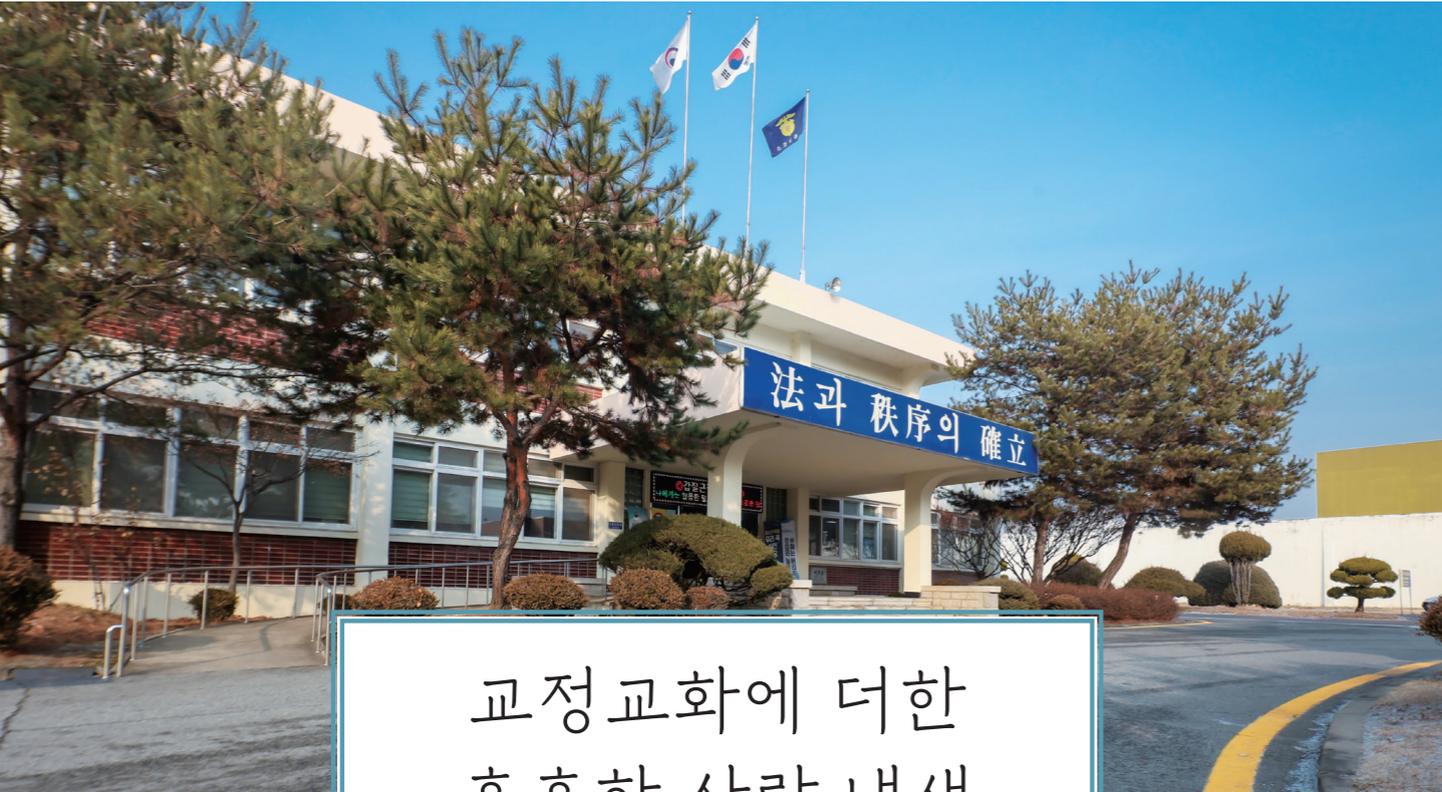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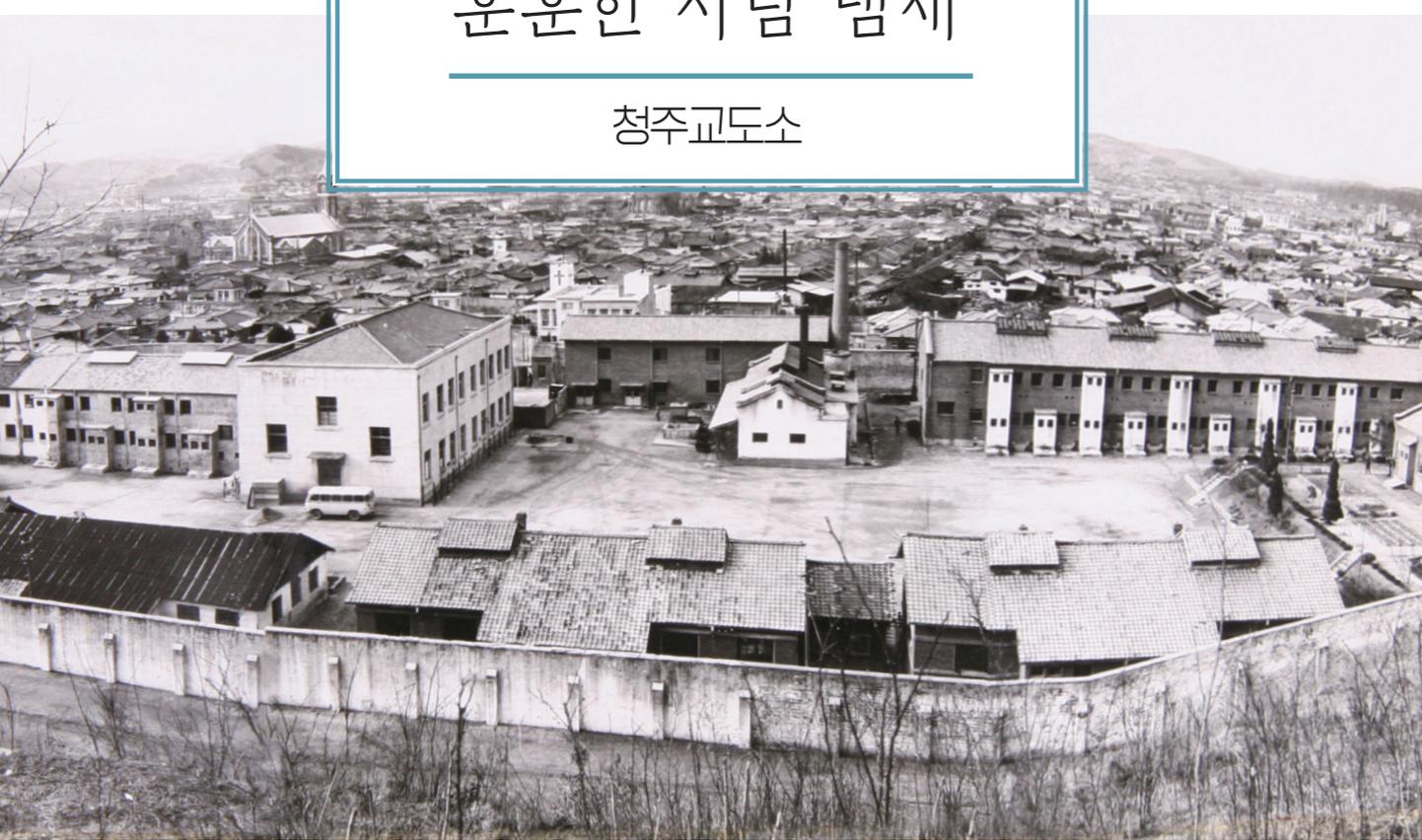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 | |
|----------------|------------|
| 교정 NEWS | 136 |
| 모범 공무원 | 145 |
| 독자마당 | 146 |





교정교화에 더한
훈훈한 사람 냄새
청주교도소



청주교도소에 들어서자 냉기 가득했던 한겨울이 마법을 부린 듯 한결 훈훈해졌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안팎을 둘러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곳이 바깥보다 따뜻하게 느껴진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 기분 좋은 사람 냄새가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그리고 청주교도소를 오가는 이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던 것이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1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향한 뜨거운 진심

청주교도소는 그야말로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다. 1908년 11월 20일 공주감옥 청주 분감으로 처음 문을 연 뒤 1946년 청주형무소 승격, 1961년 청주교도소 개칭, 1979년 현 위치 신축 이전 등 크고 작은 일을 두루 거치며 지금껏 수용자 범 집행과 교정교화라는 교정시설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그래서인지 청주교도소 곳곳에는 오래 묵힌 씨간장 같은 깊고 진한 사람 냄새가 가득 배어 있다.



그 안에 속해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청주교도소 특유의 온정 넘치는 교정교화는 출소 후 삶에 대한 수용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불을 지피고 있다. 청주교도소는 법무부 제12공공직업훈련소를 운영하는데, 매년 270여 명의 수용자가 자동차 정비·타일도배·컴퓨터 응용기계 등 14개 훈련공과에서 직업훈련을 받는다. 훈련 기간 동안 직업훈련교사들은 한 명 한 명이 수제자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수용자들을 가르치고, 청주교도소는 수용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실제 작업 현장을 고려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장, 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열띤 직업훈련은 매년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는 수용자 2명이 대기업 직원조차 줄줄이 떨어진 기계가공기능장에 이름을 올렸고, 총 174명이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지방·전국·장애인가능경기대회에서 9명이 입상에 성공했다.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청주교도소 직원들의 간절한 바람과 굵은 땀방울이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다.



#2

행복한 웃음을 피워 내는 아늑한 업무 환경

아무리 교정시설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더라도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교정교화를 이루기 힘들다.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청주교도소는 업무 및 복지 환경에도 편안한 사람 냄새가 났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청주교도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힘을 합쳐 민원실 옆에 마련한 '동행카페'는 수용자 가족 상담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직원들을 위한 아늑한 휴식 공간이다. 전문가용 커피머신으로 내린 향긋한 커피에 소소한 담소를 곁들이는 직원들의 화가에애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동행카페 오른쪽에 자리 잡은 풋살장 겸 족구장과 테니스장에서도 직원들을 생각하는 청주교도소의 마음이 물씬 느껴진다. 풋살장에는 사시사철 푸르른 인조잔디가, 테니스장에는 폭신한 카펫 코트가 빈틈없이 깔려 있어 언제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땀을 흘릴 수 있다.

지난해 말 대체복무요원을 위해 리모델링한 청심관의 지하 1층에는 유도장이 설치됐는데, 이달부터는 청주교도소 유도동호회의 주관으로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 및 가족을 위한 '교도관 가족과 함께하는 유도교실'도 열린다. 대체복무요원들과 함께 사용할 체력단련장에도 최신 운동기구가 가득 마련돼 있었다.

한편, 청주교도소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직원은 전체의 40%에 이르며 그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시종일관 피어 있는 청주교도소 직원들의 행복한 웃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교정

청주교도소는 이곳 특유의 뜨끈한 온정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매년 시행하는 '위드클린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청주교도소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표어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어깨띠로 제작해 메고 다니며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쓰레기 줍기·위험 시설물 점검 등 지역사회 대상 봉사활동을 펼친다.



또한 청주교도소는 지역사회 초·중·고등학교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도 시행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존재 이유와 교정공무원의 업무를 쉽고 재미있게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등 교내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교도소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장비를 가져가 경험해 보도록 함으로써 교정교화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정장비체험' 시간이 포함돼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가 더욱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지난해 5월 이후 진행된 현장 강의는 10회에 걸쳐 437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을 수강할 정도로 인기 있었다.



청주교도소는 이외에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 헌혈버스를 활용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 등을 적극 진행하며 사람 냄새 나는 교정과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모두의 상생과 성장을 위한 청주교도소의 노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조화로운 화합으로 내일의 희망을 일구다

청주교도소 직업훈련과는 법무부 제12공공직업훈련소의 주관 부서로서, 지금까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에 걸맞은 결실을 꾸준히 맺고 있다. 이는 모든 직원이 한결같이 조화로운 화합을 실천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아름다운 동행



청주교도소 직업훈련과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건전한 사회 복귀의 산실을 만들어 가다

청주교도소는 대전지방교정청 산하 10개 교정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직업훈련소를 갖추고 있는 '건전한 사회 복귀의 산실'이다. 매년 심사를 거쳐 선발된 250여 명의 수용자가 자동차정비·도배·타일·컴퓨터응용·기계 등 14개 훈련공과에서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직업훈련과는 그 중심에서 모든 직업훈련을 주관한다.

“청주교도소 직업훈련과는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9명이 직업훈련교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과 작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직업훈련교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수용자들을 성심성의껏 가르치고 있습니다. 14개 훈련공과에서 진행되는 직업훈련 과정 중 하나인 컴퓨터응용산업기사를 취득한 수용자 중에서 실력이 뛰어난 인원을 선발해 집중 훈련시키는 기계가공기능장 과정과 웹사이트 제작



에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밑천이 되는 작업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봉제작업장에서는 수용자 동복을 완성도 높게 제작해 전국 교정시설에 납품함으로써 수용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일조하고 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남다른 성과

청주교도소 직업훈련과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매사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 덕분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여러 개 만들어졌다. 지난해에만 무려 174명의 수용자가 각자 목표로 삼은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고 그중 2명이 오랜 노력 끝에 기계가공기능장을 취득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기능장은 최고의 기술인임을 증명하는 자격증입니다. 기능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6년간의 오랜 직업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기능장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난해에는 총 10명이 기계가공기능장에 도전했는데, 우리 수용자 2명만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나머지 응시생 8명은 모두 대기업에 다니며 해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직장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전문 기술인으로 발돋움한 출소자가 수용자를 가르치러 오는 감격적인 일도 벌어졌다. 출소 후 IT 기업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자기계발을 한 덕분에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IT 전문가가 종종 특별 전문 강사로 초빙돼 수용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것. 그에게서 배우는 수용자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회 복귀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만 무려 174명의 수용자가 각자 목표로 삼은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고 그중 2명이 오랜 노력 끝에 기계가공기능장을 취득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기술을 교육하는 컴퓨터프로그래밍공과는 우리 교정기관에만 있는 특화 직업훈련 과정입니다. 이곳에는 모두 6개의 작업장이 존재한다.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종종 작업이 중단되고 몇몇 작업장은 잠정 휴업에 돌입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직업훈련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기업을 유치하고 일감을 수주한 덕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 종목을 기존 2종목에서 3종목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에 한창이며, 오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학점은행제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주 과장과 직원들은 최근 화두인 취업조건부가석방제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의욕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내일의 희망을 일궈 나가고 있다.

‘워라벨’로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다

들수록 감명 깊은 이야기의 배경에는 직원들의 행복한 삶이 있다. 직업훈련과 구성원들은 업무에 부담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연근무제와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어린 자녀가 3명인 김재덕 교사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아이들의 등·하원을 도맡고 있으며, 서양화 그리기가 취미인 류태주 교위는 연가를 활용해 지역 단체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기계발에 진심인 최창수백성용 직업훈련교사는 평생교육사 자격취득과정을 밟고 있다. 직업훈련과 직원들의 ‘워라벨’은 이렇듯 다채롭고도 유익하다.

“부서와 동료 직원들이 개인적인 일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 의욕이 높아졌고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직원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직원 간 단합이 잘되고 그만큼 직업훈련과의 일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라벨’ 선순환은 곧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들은 더 열심히 가르치고 직업훈련 지원에 매진하니, 이 또한 의미 깊은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웃음)”
청주교도소 직업훈련과의 2023년은 지난해만큼이나

MINI INTERVIEW

‘즐겁게 일하는 부서’를 향한 발걸음은 새해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일상을 더욱 쾌적하고 활기차게 만들고 싶어 월간 <교정>에 개별 치솔살균가목 안마기·커피 원두를 선물로 신청했는데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출근해서 즐겁게 일해야 수용자들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테니 2023년에도 언제나 속마음을 가감 없이 들려주세요!”

직업훈련과 이달주 과장



오경식 교수

진취적 현장 중심 연구 교정행정의 진화를 이끈다

한국교정학회 오경식 회장

글 김주희 사진 이정도

어떤 분야이건 학술 연구는 근간이자 시작점으로 작용한다. 한국교정학회는 교정행정의 이론적·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 활동의 질적·양적 증진의 토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이론과 현장의 긴밀한 연결 고리를 구축하며 실효성 높은 학문 연구를 이어간다. 29대 회장으로 선출된 오경식 회장은 2023년 새로운 전진과 도약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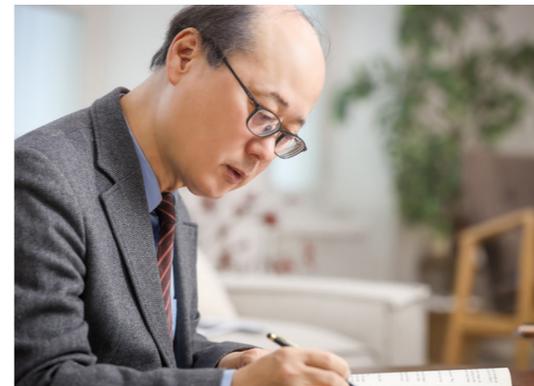
학술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꽤 오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빌드업(Build-up)'이라고 한다. 한국교정학회의 행보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1990년 창립된 한국교정학회는 실무현장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교정행정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는 중이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회원의 고민과 노력을 거쳐 축적된 연구결과와 학술정보는 마치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는 것처럼 교정행정이 진일보하는 데 크고 작은 역할들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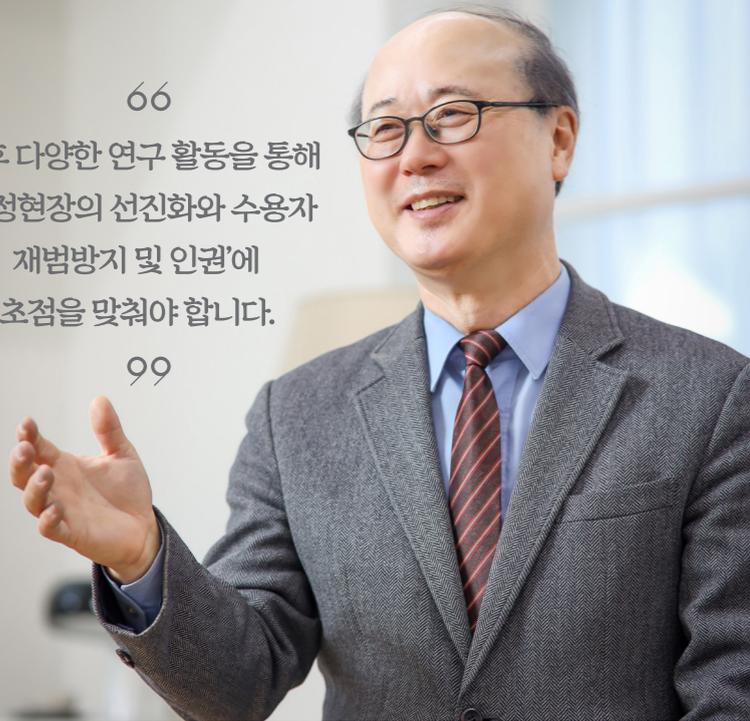
제29대 회장으로 활동 중인 오경식 회장은 한국교정학회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창립 당시 만 30세의 새내기 학자로서 학회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이다.

“학회 창립 멤버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껴왔는데 회장으로 취임하니 감개무량한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장은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를 집행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한국교정학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해 역점 사업을 집행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올해 학술대회의 주요 주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66
향후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교정현장의 선진화와 수용자
재범방지 및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부와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기반으로 교정학문 발전과 교정현장의 실무 개선을 이어간다. 오경식 회장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회원 중심'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학회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회원들이 지향하는 접점을 파악하고 이를 연구 활동에 녹여내면서 공감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주제가 교정현장의 선진화와 범죄예방을 위한 교정활동, 교정현장에서의 인권입니다. 특히 교정 현장의 실무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래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과 이론 형성이 시급하죠. 이렇듯 필요한 담론

교정활동과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의 역할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자와 실무자들이 함께 학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정현장과 시설참관을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술지의 논문투고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논문투고부터 심사·발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올해 학술지 발간 제33권 제1호부터 논문투고시스템 도입이 시작된다.

현장과 연구의 연대, 실효적 이론 창출

한국교정학회의 회원은 800여 명에 달하며 전문 학자들과 교정 현장의 실무자들이 함께 활동한다. 교정학, 범죄학, 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비롯해 5급 이상의 교정공무원들과 교화위원 등이 한데 모여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를 하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

들이 심화·발전되는 과정의 발판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교정학회는 30년을 훌쩍 넘긴 시간 동안 교정행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선사했다. 과거 교정시설은 교정의 측면보다 인권침해의 현장으로 인식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부정적인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었다.

“아직 완전히 인식을 개선했다고 말할 수는 없기에 학회는 더욱 힘을 보태고 뒷받침할 것입니다. 향후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교정현장의 선진화와 수용자 재범방지 및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한국교정학회의 지난 성과 중 눈여겨볼 점은 교정현장 실무자들이 학자로 전환한 것이다. 많은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학문적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현장과 이론을 결합한 상호 상

승작용을 통해 학문적 깊이를 더해가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교정행정의 발전은 실로 사람에서 시작되고 사람으로 행해지는 법. 한국교정학회는 '사람'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이다.

교정행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한국교정학회는 팬데믹으로 주춤 수밖에 없었던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재개하고 교정공무원과 교정현장의 선진화와 인권 등에 대한 실무 및 이론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년 동안 중단됐던 중국감옥공작협회의와 상호 교류를 다시 시작하며, 일본 교정협회 사토루 오하시 이사장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교정 현장과의 교류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엄격성과 질서가 잘 구축된 일본 교정현장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효율이 높은 터. 오경식 회장은 다양한 현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정학회에는 다양한 학문전공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젊은 학자가 부족합니다. 미래 교정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자들이 꾸준히 활동해야 합니다.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젊은 변호사와 학자들에게 다양한 연구공간과 학술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수많은 회원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오경식 회장은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다. 회원들에게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학문적 토론과 이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자유로운 학회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탄생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의 최대 과제는 교정청 독립입니다. 그 이전에 법무부에 교정, 소년정책, 외국인 등을 관장할 수 있는 법무부 2차관이 신설돼 제도적 조직 개편이 이뤄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자로서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을 지닌 채 회장으로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정현장과 교정 관련 학자들의 학문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교정행정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직결된다. 한국교정학회는 현장과 학문, 사회의 유기적인 경험의 고리를 구축하며 교정행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다. 앞으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굴하고 당면 과제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한국교정학회의 행보를 기대한다.

오경식 회장은 1987년 형사법 교수로 임용된 후 36년째 학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현재 국립강릉원주대 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제15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제6대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제7대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한국교정학회 29대 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경식 회장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낸 중국감옥공작협회. 한국교정학회와 중국감옥공작협회는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검은 토끼의 해를 관통하는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글 이준섭 문화칼럼니스트



지난 15년간 매년 우리를 찾아와 사회의 변화상과 새해의 트렌드를 전해 주고 있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렵다는 올해를 영민한 토끼처럼 슬기롭게 뛰어넘을 수 있는 '트렌드 지혜'를 이 책에서 찾아보자.

우리나라 트렌드의 궤적을 환히 밝히다

<트렌드 코리아>는 김난도 교수와 그가 센터장으로 있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10월께에 출간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트렌드 저서다. 소확행·팬슈머·오하운·특템력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트렌드 신조어를 만들어 낸 주인공이자 한 해의 굵직한 트렌드의 흐름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짚어 낸다는 평을 듣고 있다. 미디어와 언론이 앞다퉈 매년 발표되는 <트렌드 코리아>의 10대 키워드를 여러 개의 뉴스 꼭지로 다룰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덕분에 이 책은 발간일부터 이듬해 초까지 상당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리즈의 최대 강점은 15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트렌드 정보를 수집·분석해 왔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의 변화상을 보다 명확하게 짚어 낼 수 있다는 평가다. 이 책은 지난해를 돌아보는 1부와 새해의 트렌드를 전망하는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덕분에 트렌드 변화의 배경을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매년 <트렌드 코리아>가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연도별로 정리해 살펴보면 세상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다. 아울러 각 키워드는 이후에 발표된 키워드와 묘하게 연결된다. 예컨대 2017년의 키워드 중 하나인 '올로라이프'는 2018년의 '워라벨 세대', 2019년의 '소확행'으로 점차 변형되며 명맥을 잇고 있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면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어려움 속에서도 시사각각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의 바람처럼 좋은 소식이 넘치는 2023년이 되면 좋겠지만 전문가들은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년간의 팬데믹, 신냉전 시대 도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완전한 둔화 혹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 번에 금리를 대폭 높이는 '자이언트 스텝'을 여러 차례 단행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도 빠르게 높아졌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는 2023년도 1~2분기에 미국 경제가 바닥을 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대내외적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하지만 당시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훨씬 튼튼해졌다는 것이다. 김난도 교수도 <트렌드 코리아 2023>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이 여전히 견재하고 K-콘텐츠를 통한 문화 성장 동력이 갖춰진 만큼 2008년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렌드는 시사각각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가 불경기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지출을 줄이고 최대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반면, 이른바 '작은 사치'를 위한 명품시장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른 MZ세대가 자리한다. 결국 2023년의 트렌드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는 '경기 침체'와 'MZ세대'이며 <트렌드 코리아 2023>은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2023년을 대표할 10대 소비 트렌드를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분석인 만큼 잘 살펴보면 앞으로의 시간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3 선정 올해 10대 소비 트렌드

1. 평균실종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평균을 뛰어넘는,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2. 오피스 빅뱅

팬데믹 이후 직장 문화가 빅뱅 수준으로 바뀌며 근무 환경의 변화가 일고 있다.

3. 체리슈머

알뜰하고 합리적인 전략적 소비를 지향하는 '체리슈머'가 늘고 있다.

4. 인덱스 관계

요즘 세대는 인간관계를 인덱스(색인)로 분류·정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5. 뉴디맨드 전략

불황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대체 불가 상품이나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6. 디깅모멘텀

디깅러들은 좋아하는 것을 통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7. 알파세대가 온다

2010년 이후 태어난 알파세대는 출생 직후부터 첨단 IT 기술에 노출된 디지털 세대이다.

8. 선제적 대응기술

인간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미리 개발하는 선제적 대응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9. 공간력

매력적인 콘셉트와 테마를 갖춘 공간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10. 네버랜드 신드롬

어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 시대, 청춘과 연륜의 조화가 관건이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용자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장애인·외국인수용자를 중심으로-

이민희

법무부 교정기획과 교정관

I. 들어가는 말

II. 노인수용자

1. 현황
2. 관련규정
3. 개선방안

III. 장애인수용자

1. 현황
2. 관련규정
3. 개선방안

IV. 외국인수용자

1. 현황
2. 관련규정
3. 개선방안

V.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에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2016. 12. 29. 2013헌마142)고 하여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행형법은 1999년 일부개정으로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선언하고(행형법 제1조의3), 개정이유로 날로 증대하고 있는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수용자 처우에 반영함으로써 질서와 인권이 조화되는 교정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이후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행형법이 2007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로 전부 개정되었다. 형집행법은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고(법 제4조)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법 제5조)을 명시하였다.



한편 형집행법은 '제7장 특별한 보호'에서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라는 제목 하에 노인수용자, 장애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 또는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54조). 특별한 보호의 장은 행형법에서는 없던 내용으로 이 장을 신설한 형집행법 전부개정안은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의 처우에 대해 원칙적 규정을 둬으로써 수용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내지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되었다.¹⁾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노인수용자, 장애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현황 및 규정을 살펴보고 적합한 처우방안 및 법령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노인수용자

1. 현황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5163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901만8000명)가 차지하는 비중이 17.5%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21년에 비교하여 5.2%(44만7000명)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교정시설 노인수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2022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에 6.8%에 불과하던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수형자의 구성비는 2021년 15.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수형자 인원(2012~2021년)

(단위: 명)

| 구분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총 수형자 수 | 31,434 | 32,137 | 33,444 | 35,098 | 36,479 | 36,167 | 35,271 | 34,697 | 34,749 | 34,087 |
| 60세 이상 수형자 수 (구성비) | 2,150 (6.8%) | 2,350 (7.3%) | 2,801 (8.4%) | 3,324 (9.5%) | 3,841 (10.5%) | 4,243 (11.7%) | 4,440 (12.6%) | 4,802 (13.8%) | 5,178 (14.9%) | 5,291 (15.5%) |

출처 : 교정통계연보, 2002, 64면

1 신양균, (2006), 행형법상 수용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 검토 -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18(1), 99면.

2. 관련규정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허약, 만성질환, 거동불편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진 수용자에 대한 인도적인 과점에서 적절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형집행법은 노인수용자를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²⁾

노인수용자는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하는데(법 시행령 제81조) 형집행법은 노인수용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고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45조). 또한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이나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

노인의 경우 대부분 노화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크고 작은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어 일반 수용자의 경우보다 질병 치료 및 의료 서비스를 더욱더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적절한 의료적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수용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교정시설에서 의료처우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노인수용자의 인권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³⁾

노인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하여 형집행법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 검진을 하여야 하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47조).



2 금융명, (2021), 교정학, 박영사, 393면.

3 박영숙, (2011), 교정시설 내 노인 수용자의 인권 확대 방안, 인권복지연구, (9), 34면.

작업 및 교육·교화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형집행법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되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4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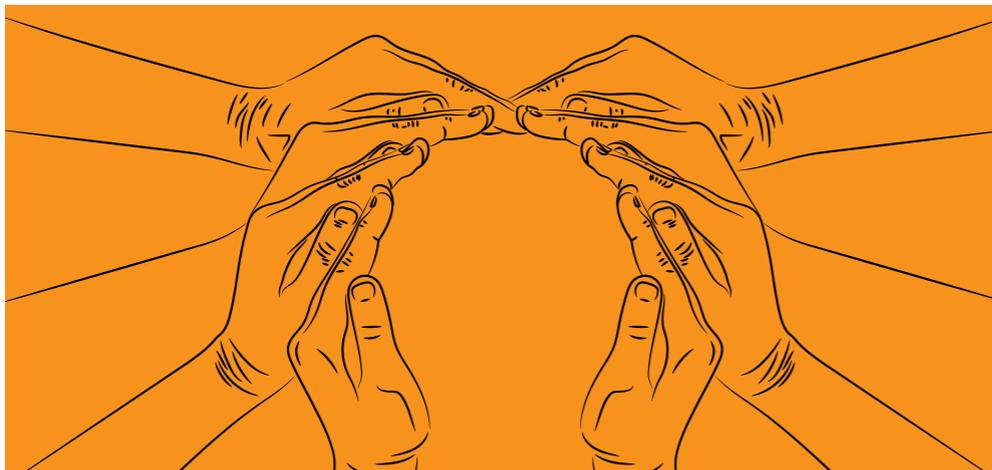
3. 개선방안

(1) 노인수용자 교정시설

노인 전담교정시설은 총 4곳으로 서울남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이다(교정통계연보, 2022:57). 전담교정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교도소·구치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43조). 교정시설의 노인수용자 거실은 시설 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전담교정시설이라고 하여 노인수용자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으며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도 노인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다.

한편 노인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해서 교정시설의 디자인을 바꾸어야 된다가나 노인수용자



만의 전용 수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⁴⁾ 여성수용자만 수용하는 청주여자 교도소나 소년수용자만 수용하는 김천소년교도소처럼 노인수용자만 수용하는 교정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립된 생활공간을 갖지 못하고 각 교정시설로 분산 수용된 노인수용자들은 시설 내 약자로서 괴롭힘이나 폭행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고 교정교화에도 지장이 있으므로 노인수용자만의 전용 수용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상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2016. 12. 29. 2013헌마142) 이후에도 여전히 과밀상태인 수용상황과 지역사회 반발로 인한 교정시설 신축·이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2) 소결

노인수용자의 급격한 증가는 교정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수용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의료처우 비용 및 의료인력 소요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노인수용자가 시설 내 약자로서 다른 수용자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거나 폭행 등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용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인수용자만의 독립 교정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노인수용자를 위한 예산, 인력, 시설의 뒷받침 없이는 특별한 배려나 처우는 불가능하다.

이미 교정시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다. 노인인구 및 노인빈곤율 증가에 따라 앞으로 노인수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수용자의 급격한 증가를 대비할 만큼의 예산 및 인력, 시설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수용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교정시설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사절차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설 내 노인수용자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고령수용자들을 재평가하여 시설처우에서 중간형 제재나 사회내처우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비추어 현실적으로나 인도적인 견지에서 환형유치가 부적절할 고령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가석방 제도와 별도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금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확정된 형의 집행 방식을 변경하여 보호처분 형태로 형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⁵⁾

4 김용명, 앞의 책, 388면/ 박영숙, (2011), 노인 수용자의 교정복지적 처우 방안, 교정복지연구, 22(22), 133면.

5 박형관, (2018), 고령범죄자에 관한 형사사법절차 개선의 쟁점, 형사정책, 30(3), 282면.

Ⅲ. 장애인수용자

1. 현황

장애인수용자란 시각·청각·언어·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이다(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청각·언어·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법 시행규칙 제49조).

교정통계연보를 통해 매년 수용자에 대한 많은 통계자료가 공개되고 있음에 반하여 공식적인 장애인 수용자 통계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1529명의 장애인 수용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기준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이 5만3873명(교정통계연보, 2022:60)인 것에 비추어 보면 전체 수용자의 약 2.8%가 장애인 수용자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수용자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771명(50.43%)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적장애 187명(12.23%), 시각장애 151명(9.88%), 정신장애 129명(8.44%), 청각장애 120명(7.85%), 뇌병변장애 65명(4.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⁶⁾

2. 관련규정

형집행법령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재활프로그램, 주·부식 등의 지급, 운동·목욕, 의료,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및 직업훈련 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장은 장애인수용자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법 제52조 제2항). 장애인수형자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지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법 제57조).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교도소·구치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종류별 특성에 알맞은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법

⁶⁾ 서동명/김동기/윤상용/장영재/김강원, (2020),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 4면.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법 시행규칙 제52조)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3조).

장애인 전담교정시설은 총 9곳으로 지체장애인 전담교정시설은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청주교도소, 광주교도소, 순천교도소, 군산교도소, 충주구치소, 통영구치소이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여주교도소, 청주교도소이며 언어·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이다(교정통계연보, 2022:57).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1조).

장애인수용자의 장애정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부식 등의 지급, 운동·목욕, 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에 관하여 노인수용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54조). 따라서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의 장애정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 교도관이나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장애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 장애정도·건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되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수용자 교육에 있어서 소장은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를 보완하는 교육용 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법 시행규칙 제104조). 그리고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소장은 약물중독·정신질환·신체장애·건강·성별·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119조).



3. 개선방안

(1) 문제점

서동명 등은 ‘구급시설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에서 장애인수용자 규정의 문제점으로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한다(서동명 등, 2020:19).

첫째, 장애인수용자 정의의 문제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9조가 정의하는 장애인수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모든 종류의 장애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6두50907판결에서 “입법기술상 모법이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애인수용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수용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우 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문제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장애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만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제43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이는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서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를 대상으로 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출입문·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대변기·세면대를 ‘의무’로, 소변기·점자블록과 그 밖의 시설 중 일부를 ‘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



한편 교정시설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여기서 변기 외의 ‘변기 등의 시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의 설비 역시 장애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의 거실에 준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법령에 의하면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종류별 특성에 맞는 재활치료프로그램 개발, 전문의료진과 장비 구비,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편성 및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어 장애인수용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 작용될 수 있다.

장애인수용자는 전담교정시설에만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분산되어 수용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수용자는 수용생활의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집행법이 장애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에 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2) 소결

장애인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12일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1호)이 발의된 바 있다. 이 의원 발의안은 현재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조문으로 구성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배려와 처우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의료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 장애인을 위한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의료체계 구축은 장애인수용자가 수용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편의시설 설치에 예산 확보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지만 의료처우 개선은 예산 확보와 더불어 의료체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정시설 의사는 상시적인 결원상태에 있다. 2021년 교정공무원 직렬별 인원 중 의무직 정원 117명 중 현원은 91명으로 결원인원이 20명에 이른다(교정통계연보, 2022:16). 2021년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이 4만8980명이므로 의사 1명이 420여 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같은 해 치료가 필요한 교정시설 내 환자가 2만2128명에 이르고(교정통계연보, 2022:97), 코로나19 등 전염병 상황에서는 교정시설 방역에 의료 인력

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처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2023. 1. 26. 법무부 보도자료)에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통해 수용시설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용시설 내 인권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의 문제이고 장애인 처우개선은 교정시설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료체계 개선과 장애인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 부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수용자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외국인수용자

1. 현황

2021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5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63만 명 대비 약 4%를 차지한다(법무부 출입국통계). 연도별 유학생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7%가 증가하였다.

국내 외국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수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외국인수용자는 1132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237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1년 외국인수용자 국적별 인원은 중국이 1092명으로 전체 외국인수용자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398명(16.7%), 베트남 163명(6.9%), 우즈베키스탄 107명(4.5%) 등이다(교정통계연보, 2022:82면).

외국인수용자 인원(2012~2021년)

(단위: 명)

| 연도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합계 | 1,132 | 1,222 | 1,271 | 1,884 | 1,997 | 2,096 | 2,079 | 2,315 | 2,451 | 2,377 |
| 수형자 | 769 | 773 | 770 | 1,123 | 1,232 | 1,320 | 1,338 | 1,416 | 1,445 | 1,386 |
| 미결 | 363 | 449 | 501 | 761 | 765 | 776 | 741 | 899 | 1,006 | 991 |

출처 : 교정통계연보, 2002, 82면

2021년 외국인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류 수형자가 425명으로 전체 수형자(1386명)의 30.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며 그다음으로는 사기·횡령 255명(18.4%), 살인 234명(16.9%), 강간 102명(7.4%), 강도 94명(6.8%), 절도 55명(4.0%), 폭행·상해 55명(4.0%), 기타 166명(12.0%) 순이다(교정통계연보, 2022:87면).

2. 관련규정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Mandela Rules)」(이하 ‘유엔최저기준규칙’) 제2조는 ‘본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용자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차별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교정당국에서는 수용자 개인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특수한 필요를 가진 수용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들은 필요한 것으로서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특별한 배려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형집행법도 수용자는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규정하면서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우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5조, 제54조 제3항).

외국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5조).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은 총 4곳으로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이다(교정통계연보, 2022:57).

유엔최저기준규칙은 제62조 제1항에서 ‘외국국적을 가진 수용자에게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소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정하며 동조 2항에서는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수용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관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내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전항과 동일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 국적 및 무국적 수용자에 대한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도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56조).

또한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하고 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용설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7조).

주·부식 지급에 있어서도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일반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열량인 1명당 1일 2500kcal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쌀, 빵 또는 그 밖의 식품을 주식으로 지급하되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8조).

한편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9조).

3. 개선방안

(1)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권고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가 1985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7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권고는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입법 및 실무운영에 있어서 지도이념으로서 존중되고 가능한 한 참작하도록 요구되는 국제적인 권고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

1. 외국인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수용지정은 수용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하여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2. 외국인수용자는 내국인수용자와 동등한 정도로 교육, 작업,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7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관계 국제규약집(2015), 388면.

3. 외국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인 수용자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교정시설로부터의 외출허가 그 밖의 공인된 교정시설로부터의 외출제도가 적용되는 자격과 함께, 구금에 대신하는 조치를 받을 자격을 가져야 한다.
4. 외국인수용자는 교정시설 수용 후 즉시 그가 이해하는 언어에 의해,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해, 관련 법령 및 규칙을 포함한 그 시설의 제도의 개요를 고지 받아야 한다.
5. 외국인수용자의 종교상의 계율과 관습은 존중되어야 한다.
6. 외국인수용자는 그의 지위에 관한 그 밖의 정보와 함께 그 국가의 영사부와 연락할 권리를 지체 없이 고지 받아야 한다. 외국인수용자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의한 원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락이 취해져야 한다.
7. 외국인수용자에게는 의료관계 직원 또는 처우계획관계 직원과의 대화, 특별한 편의, 특별한 식사 및 종교상의 표현 및 상담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원조가 주어져야 한다.
8. 외국인수용자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기관과의 접촉은 수용자의 동의를 얻어 접견 및 통신에 대한 모든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촉진되어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인도적인 국제기구에게는 외국인피구금자를 원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9.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또는 가석방된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원조에 관한 두 국가 간 또는 다국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외국인 수용자가 직면하는 문제해결에 한층 기여할 수 있다.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권고는 비준, 발효한 조약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유엔최저기준규칙과 더불어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규범이다. 이 권고는 형집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보다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수용자 수도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수용자도 정보공개청구, 각종 소송 등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처우 미흡은 교정시설 내 인권수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소결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요원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외국인수용자의 정보접근에 대한 규정을 두어 외국인수용자의 교정시설 적응을 지원하고 외국인수용자 처우를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⁸⁾

외국인수용자는 입소 즉시 외국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쓰인 문서에 의하여 수용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권고와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수용자의 필요에 따라 가장 통용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고 수용자가 해당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하는 유엔최저기준규칙 제54조 등 국제규범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난민문제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수준의 외국인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⁹⁾ 난민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난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규정 부재는 수용관리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수용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규정하는 유엔최저기준규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8 허경미, (2017),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법령의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27(2), 105면.

9 허경미, 앞의 논문, 106면.

V. 맺음말

형집행법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우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54조). 수용자는 신체적, 심리적, 국적, 나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처우상 배려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형집행법은 각각의 특성에 따른 처우를 달리하도록 한 것이다.¹⁰⁾ 외국인·장애인·노인수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하고 있다. 2021년 기준 2021년 전체 수형자의 15.5%가 60세 이상 수형자이며 향후 노인수용자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노인수용자만의 독립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형사절차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 내 처우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0 금융명, 앞의 책, 388면.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배려와 처우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과 의료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 장애인수용자는 전담교정시설에만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교정시설에 분산되어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 장애인 전담교정시설에 한정할 것이 아니다. 일반 교정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도 전담교정시설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전 부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의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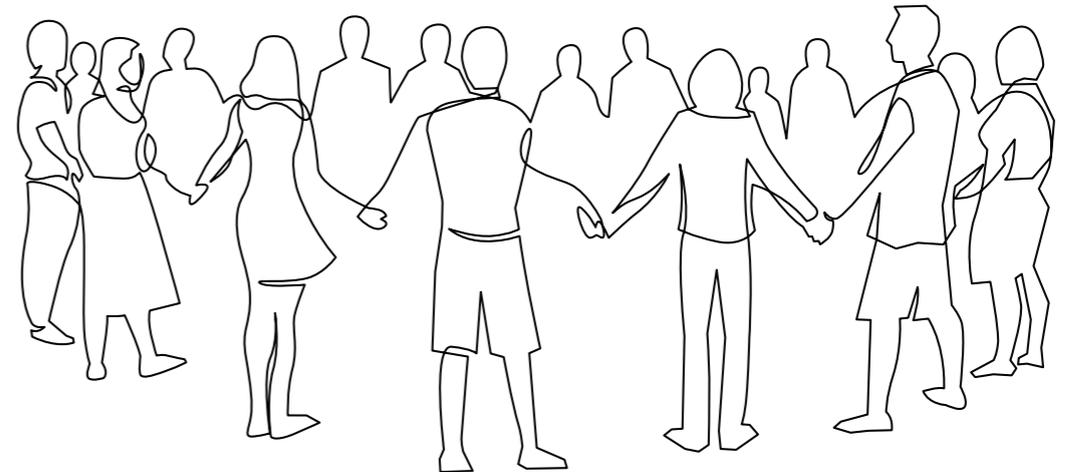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수용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없이는 수용질서 확립과 교정시설 인권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엔최저기준규칙이나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관한 권고 등의 국제규범을 참고하여 외국인수용자가 수용생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난민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난민이나 무국적자 수용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용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따라 종래 합헌이나 합법으로 인정되던 관행 및 법령 등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노인·외국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금용명, (2021), 교정학, 박영사.
- 박영숙, (2011), 교정시설 내 노인 수용자의 인권 확대 방안, 인권복지연구, (9).
- 박영숙, (2011), 노인 수용자의 교정복지적 처우 방안, 교정복지연구, 22(22).
- 박형관, (2018), 고령범죄자에 관한 형사사법절차 개선의 쟁점, 형사정책, 30(3).
- 서동명/김동기/윤상용/장영재/김강원, (2020),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신양균, (2006), 행정법상 수용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 검토 - 행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18(1).
- 허경미, (2017),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법령의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27(2).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 통제를 위한 교정행정 개선 방안

윤동호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사

제1장 서론

제2장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 유형

제1절 수용자의 권리 남용(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남용)

제2절 규율 위반 행위 유형

제3장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 원인

제1절 교정기관의 특성

제2절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 원인

제4장 교정행정 개선 방안

제1절 수용자의 권리 남용 대응 방안

제2절 교정공무원 폭행의 대응 방안

제3절 규율 위반 행위 통제 개선 방안

제4절 교정기관 ombudsman

제5장 결론

제1장 서론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노역수용자가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감찰을 벌여 현장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조치 또는 중징계 하었다고 밝혔다.¹⁾ 이와 같이 교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수용자의 중대한 피해 상황은 언론 기관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비교적 자세히 공개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교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 사실이 거의 제한 없이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한 통제는 언론과 제도 등으로 철저히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교정공무원인 연구자로서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 등과 같은 상황은 언론 기관을 통하여 알려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 의문이다. 그렇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교정기관이 상기와 같은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폭행 등의 사항을 검찰에 송치시키는 것뿐이다. 하지만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걸리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교도소, 구치소 등과 같은 교정기관의 폐쇄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 상황까지도 가려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건들을 보고 겪으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교정기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통제²⁾는 언론과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국가기관의 목적³⁾이기도 하다. 또한 학계에서도 수용자 인권 보호와 관



1 김계연, "법무부 '부산구치소 사망사건' 18명 징계·인사조치" 연합뉴스, 2020. 7. 3. 수정, 2022. 4. 8.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044700004?input=119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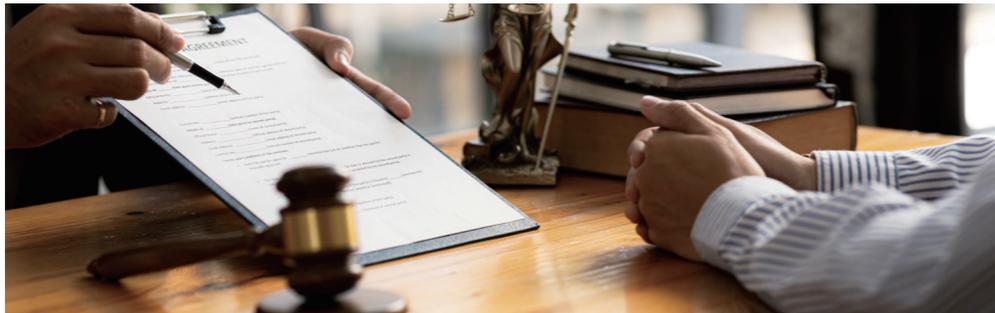
2 수용자의 입장에서 공권력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될 것이다.

3 우리 「형집행법」 제4조("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에서도 수용자의 인권 존중을 명문화하였다.

련된 논문은 계속 나오지만 반대로 교정공무원의 인권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논문⁴⁾은 드물며 교정공무원 처우에 대한 논문 등만이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수용자 인권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넘어서는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의 인권 침해적 상황이나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에 관한 정책이나 연구 역시 균형 있게 존재해야 한다.

처음에는 교정기관 내 수용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교정기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범주화하고 교정기관 공권력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교정기관 내의 구체적인 상황 등은 또한 특수성과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가지는 공권력에 대한 거대담론으로 다룬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논문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수용자 권리 남용이라는 이면에는 인권 보장적인 제도의 확충⁵⁾이라는 이면이 있고 수용자 규율 위반 행위의 증가에는 현장 근무자들의 징벌 관련 제도 적용의 적극성 등⁶⁾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제목과 같이 수용자의 권리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가 주된 연구 분야이다. 하지만 상기의 연구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교정기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용자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봄과 동시에 교정기관의 인적, 물적 특수성과 함께 위 사례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최종적으로 그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로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4 박근영/이용주, "수용자 인권에 대한 고찰",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교정상담학연구, 2000. 나달숙, "수용자의 인권현황과 인권교육의 과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11(2), 2018. 등 "수용자 인권"으로 논문 검색을 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문을 발견할 수 있다.
5 수용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이 늘어날수록 그 제도를 이용하는 수용자가 남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극단적으로 권리 구제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용자의 권리 남용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 교정기관의 현장 근무자들은 '형집행법'의 규정에 있어서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징벌 관련 규정에 대하여도 법 적용에 있어 재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징벌 대상 행위의 엄중성, 징벌 대상 행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정교화 가능성, 담당근무자의 업무성향, 징벌수용동의 수용 능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용자의 행위를 징벌 대상 행위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작은 차이는 있다.

제2장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 유형

제1절 수용자의 권리 남용(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남용)

1.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대상 고소·고발

[사례]⁷⁾

2020년 10월 15일 오전 10시쯤 인천의 한 구치소 운동장에서 A씨는 운동을 하던 중 수용실 복귀를 희망했으나 계호 문제로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수용실 복귀를 제지당했다. 이에 A씨는 "XX 아파서 들어가겠다고 비키라고, XX 건들지 마" 등 교정공무원을 향해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공무원이 A씨를 제지하기 위해 손을 뻗었으나 A씨는 이를 뿌리쳤다. 이후 교정공무원이 A씨에게 운동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며 등에 손을 대자 A씨는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며 과잉진압을 당한 것처럼 행세했다. 또 "네가 나 쳤냐? 직원이 사람 치네. 내가 너 고소할거야"라고 소리치며 교도관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기관의 수용자도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누구든지 고소·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자의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위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무분별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교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고소·고발은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최근 10년간 피소된 교정공무원 수는 1만6786명인데 <그림1>과 같이 기소된 인원은 7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⁸⁾ 0.04%에 해당하는 인원만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수용자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분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주요 고소·고발 사유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인데 이를 통하여 수용자들은 교정공무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고소·고발 등을 취하려는 조건으로 수용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7 노유림, "'네가 나 쳤냐?' 교도관에 당한 척...50대 재소자 2년 징역 추가", 국민일보, 2021. 7. 13. 송고, 2022. 6. 5. 접속,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51230&code=61121311&cp=nv>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8 2021 교정통계연보 이후 이 논문의 표와 자료는 특별한 각주가 없는 이상 2021 교정통계연보에서 가져온 것임.

것이다. 수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독거실 수용, 좋은 작업장으로의 이동⁹⁾ 등 다양하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위와 같은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정신적으로 큰 위축감을 느낀다. 2020년에만 1600여 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에 의하여 피고소·고발되었는데 이는 전체 교정공무원 중 10%를 차지하는 큰 수치이다.

<그림1> 교정공무원 피고소·고발현황(2011~2020년)

(단위: 건 명)

| 구분 연도 | 건수 | 피소 인원 | 진행중 | 결과(피소 인원 기준) | | | | | | | |
|----------|-----|----------|-----|-----------------|----------------|-------------|-------------|-------------|--------------|------------------|----------------|
| | | | | 계 | 무혐의 | 죄안됨 | 기소 유예 | 기소 | 공소권 없음 | 각하 | 기타 |
| 2011 | 646 | 1,669 | - | 1,669 (100%) | 461 (27.6%) | 1 (0.1%) | - | - | 23 (1.4%) | 900 (53.9%) | 284 (17.0%) |
| 2012 | 679 | 1,812 | - | 1,812 (100%) | 408 (22.5%) | 3 (0.2%) | 2 (0.1%) | - | 11 (0.6%) | 1,188 (65.6%) | 200 (11.0%) |
| 2013 | 647 | 1,732 | - | 1,732 (100%) | 463 (26.7%) | 1 (0.1%) | 1 (0.1%) | - | 5 (0.3%) | 938 (54.2%) | 324 (18.7%) |
| 2014 | 614 | 1,432 | - | 1,432 (100%) | 297 (20.7%) | 1 (0.1%) | 1 (0.1%) | - | 9 (0.6%) | 918 (64.1%) | 206 (14.4%) |
| 2015 | 733 | 1,551 | - | 1,551 (100%) | 275 (17.7%) | 3 (0.2%) | 4 (0.3%) | 3 (0.2%) | 12 (0.8%) | 1,179 (76.0%) | 75 (4.8%) |
| 2016 | 698 | 1,551 | - | 1,551 (100%) | 413 (26.6%) | 6 (0.4%) | - | - | 27 (1.7%) | 803 (51.8%) | 302 (19.5%) |
| 2017 | 783 | 1,586 | - | 1,586 (100%) | 407 (25.7%) | 1 (0.1%) | - | - | 13 (0.8%) | 1,035 (65.3%) | 130 (8.2%) |
| 2018 | 855 | 1,873 | - | 1,873 (100%) | 430 (23.0%) | 1 (0.1%) | - | - | 33 (1.8%) | 1,247 (66.6%) | 162 (8.6%) |
| 2019 | 916 | 1,886 | 39 | 1,847 (100%) | 314 (17.0%) | 4 (0.2%) | - | 1 (0.1%) | 19 (1.0%) | 1,410 (76.3%) | 99 (5.4%) |
| 2020 | 867 | 1,694 | 277 | 1,417 (100%) | 205 (14.5%) | 1 (0.1%) | - | 3 (0.2%) | 7 (0.5%) | 1,115 (78.7%) | 86 (6.1%) |

2. 수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수용자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함께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다. <그림2>와 같이 2016년 이후로는 수용자의 승소(원고 승소)는 한 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일부승소(원고일부승소)만이 몇 건씩 있을 뿐이다. 일반적인 국가배상의 인용률이 20% 이상인 것을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¹⁰⁾ 수

⁹⁾ 좋은 작업장의 의미는 수용자마다 다를 것이다. 좋은 작업장은 작업장려금이 높을 수도, 작업의 난이도가 낮은 곳일 수도 있다.

¹⁰⁾ 전국 14개 지구배상심의회 「국가배상통계」(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_idx_cd=1725).

용자가 승소하는 건수가 극히 적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국가배상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형성한다. 그것은 바로 구상권에 의한 교정공무원의 책임이다. 수용자들은 이와 같은 교정공무원의 책임을 이용하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2> 수용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현황(2011~2020년)

(단위: 건)

| 구분 연도 | 건수 | 진행중 | 결과 | | | |
|----------|-----|-----|---------------|-------------|---------------|----------------|
| | | | 계 | 원고승소 | 원고일부승소 | 원고패소 |
| 2011 | 124 | - | 124 (100%) | 1 (0.8%) | 10 (8.1%) | 113 (91.1%) |
| 2012 | 114 | - | 114 (100%) | 1 (0.9%) | 12 (10.5%) | 101 (88.6%) |
| 2013 | 93 | 1 | 92 (100%) | 1 (1.1%) | 12 (13.0%) | 79 (85.9%) |
| 2014 | 92 | - | 92 (100%) | - | 3 (3.3%) | 89 (96.7%) |
| 2015 | 111 | 1 | 110 (100%) | 1 (0.9%) | 12 (10.9%) | 97 (88.2%) |
| 2016 | 88 | 1 | 87 (100%) | - | 9 (10.3%) | 78 (89.7%) |
| 2017 | 94 | 8 | 86 (100%) | - | 7 (8.1%) | 79 (91.9%) |
| 2018 | 126 | 34 | 92 (100%) | - | 4 (4.3%) | 88 (95.7%) |
| 2019 | 152 | 79 | 73 (100%) | - | 2 (2.7%) | 71 (97.3%) |
| 2020 | 203 | 162 | 41 (100%) | - | 1 (2.4%) | 40 (97.6%) |



3. 수용자의 청원

「형집행법」은 권리구제 장에서 소장면담, 청원, 정보공개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교정기관 내의 처우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중 하나이다. 소장면담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소속 교정공무원이 대리하여 지체 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는 90% 이상 전부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되고 있어서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

<표1> 법무부, 교정기관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구분 | 법무부 | 교정기관 (점유율) | 처리현황 | | | | 미결정 (계류 중) | 기타 취하 |
|-------|--------|-------------------|------------------|-------------------|------------------|-----------------|---------------|-------------------|
| | | | 소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
| 2020년 | 52,428 | 38,595 (73.6%) | 28,039 (100%) | 23,445 (83.6%) | 2,791 (10.0%) | 1,803 (6.4%) | 2 | 10,554 (27.3%) |

하지만 청원은 그렇지 않다. 청원에서 수용자의 무분별한 권리 남용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낮은 인용률과 함께 높은 취하율이다. <그림3>과 같이 지난 10년간(2011~2020) 청원 건수는 7845건인데 그 중 인용된 건수는 111건으로 인용률은 1.4%에 그친다. 반면에 취하 건수는 5379건으로 취하율은 68.6%에 달한다. 특히나 낮은 인용률보다 높은 취하율이 수용자의 무분별한 권리 남용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용자 자신의 처우를 부당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청원 제도를 이용하여 교정공무원과 일종의 거래를 시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경우 청원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시 말해 청원 역시도 수용자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3> 수용자 청원 처리 결과(2011~2020년)

(단위: 건)

| 연도 | 구분 | 청원건수 | 결과 | | | | |
|------|----|-----------------|---------------|----------------|----------------|----------------|--------------|
| | | | 인용 | 기각 | 각하 | 취하 | 기타 |
| 2011 | | 1,313 (100%) | 1 (0.1%) | 204 (15.5%) | 201 (15.3%) | 902 (68.7%) | 5 (0.4%) |
| 2012 | | 1,094 (100%) | 2 (0.2%) | 148 (13.5%) | 144 (13.2%) | 795 (72.7%) | 5 (0.5%) |
| 2013 | | 1,071 (100%) | - | 172 (16.1%) | 159 (14.8%) | 739 (69.0%) | 1 (0.1%) |
| 2014 | | 903 (100%) | 1 (0.1%) | 215 (23.8%) | 115 (12.7%) | 546 (60.5%) | 26 (2.9%) |
| 2015 | | 957 (100%) | 1 (0.1%) | 235 (24.6%) | 144 (15.0%) | 559 (58.4%) | 18 (1.9%) |
| 2016 | | 797 (100%) | - | 134 (16.8%) | 124 (15.6%) | 520 (65.2%) | 19 (2.4%) |
| 2017 | | 744 (100%) | - | 166 (22.3%) | 129 (17.3%) | 422 (56.7%) | 27 (3.6%) |
| 2018 | | 772 (100%) | - | 217 (28.1%) | 147 (19.0%) | 405 (52.5%) | 3 (0.4%) |
| 2019 | | 558 (100%) | 22 (3.9%) | 144 (25.8%) | 81 (14.5%) | 308 (55.2%) | 3 (0.5%) |
| 2020 | | 593 (100%) | 84 (14.2%) | 167 (28.2%) | 159 (26.8%) | 183 (30.9%) | - |

4. 수용자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10년간 행정심판의 전부 혹은 일부인용을 보면 1%를 넘은 해가 없고 인용이 없는 해도 존재한다. 거의 대부분 기각, 각하, 취하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 수용자의 권리 남용의 측면이 의심되는 것은 각하와 취하 부분이다. 2020년의 각하와 취하의 비율은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인용의 비율이 행정심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청구건수 자체가 행정심판에 비하여 행정소송이 훨씬 적고 행정소송의 각하와 취하의 비율이 인용과 기각에 비하여 여전히 훨씬 높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취하율이다. 청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용자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뜻이 관철되거나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수용자의 권리 남용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2절 규율 위반 행위 유형

1.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폭행

[사례2]¹¹⁾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한 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에 화가 나 수용실 나무 밥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즉시 출동한 교도관 3명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제지하는 교도관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교도관들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OO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도관 G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2개월 가량 OO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수용자들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기관 관련 기사는 대부분 인권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수용자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수용자의 교정공무원의 폭행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수용자에 의해 교정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우리 사회는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폭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남용 그리고 반(反)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폭행은 사건 자체를 사소하게 치부해 버리거나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또는 통제능력 부재라고 해석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교정공무원들이 실제 교도소 내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들의 직무 관련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분석이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¹²⁾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교정공

11 전용모, “창원지법, 구치소서 교도관 3명 폭행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 2022. 4. 28. 게시, 2022. 6. 5. 접속,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42809525764359a8c8b5f58f_12

12 공정식/정선희 공저, 『현대교정학』, 한국학술정보, 2010, 50쪽.

무원 폭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교도소 내의 폭력(prison violence, interpersonal violence)을 주제로 한 연구 중에서도 가장 연구가 되지 않은 영역¹³⁾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림4>와 같이 2020년 한 해 동안 97건의 수용자에 의한 직원(교정공무원)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연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될 영역임을 보여준다.

<그림4> 교정사고 발생현황(2011~2020년)

(단위: 건)

| 구분 연도 | 계 | 도주 | 도주 미수 | 집행명 령위반 (귀휴미 귀 등) | 병사 | 자살 | 자살방지 (자살 미수) | 화재 | 폭행 치사상 등 수용 자간폭행 |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 기타 |
|----------|-----------------|-------------|-------------|----------------------------|--------------|--------------|--------------------|-------------|---------------------------|--------------------|----------------|
| 2011 | 911 (100%) | - | - | - | 16 (1.8%) | 11 (1.2%) | 72 (7.9%) | - | 432 (47.4%) | 53 (5.8%) | 327 (35.9%) |
| 2012 | 853 (100%) | 1 (0.1%) | - | - | 26 (3.0%) | 4 (0.5%) | 89 (10.4%) | - | 373 (43.7%) | 43 (5.0%) | 317 (37.2%) |
| 2013 | 909 (100%) | - | 2 (0.2%) | 1 (0.1%) | 19 (2.1%) | 7 (0.8%) | 73 (8.0%) | - | 375 (41.3%) | 77 (8.5%) | 355 (39.1%) |
| 2014 | 837 (100%) | - | 3 (0.4%) | - | 24 (2.9%) | 4 (0.5%) | 51 (6.1%) | - | 385 (46.0%) | 49 (5.9%) | 321 (38.4%) |
| 2015 | 940 (100%) | - | 1 (0.1%) | 1 (0.1%) | 24 (2.6%) | 4 (0.4%) | 51 (5.4%) | - | 491 (52.2%) | 43 (4.6%) | 325 (34.6%) |
| 2016 | 894 (100%) | 1 (0.1%) | 2 (0.2%) | - | 22 (2.5%) | 7 (0.8%) | 52 (5.8%) | - | 480 (53.7%) | 44 (4.9%) | 286 (32.0%) |
| 2017 | 908 (100%) | - | - | - | 20 (2.2%) | 2 (0.2%) | 44 (4.8%) | - | 455 (50.1%) | 73 (8.0%) | 314 (34.6%) |
| 2018 | 1,012 (100%) | 1 (0.1%) | 1 (0.1%) | - | 33 (3.3%) | 7 (0.7%) | 62 (6.1%) | - | 550 (54.3%) | 89 (8.8%) | 269 (26.6%) |
| 2019 | 1,000 (100%) | - | 2 (0.2%) | - | 28 (2.8%) | 8 (0.8%) | 70 (7.0%) | 1 (0.1%) | 506 (50.6%) | 66 (6.6%) | 319 (31.9%) |
| 2020 | 1,241 (100%) | - | 1 (0.1%) | - | 32 (2.6%) | 11 (0.9%) | 115 (9.3%) | 5 (0.4%) | 577 (46.5%) | 97 (7.8%) | 403 (32.5%) |

2. 일명 “만기 꼬장” 규율 위반 행위¹⁴⁾

가석방이나 사면이 아닌 형기를 모두 채워 출소하게 되는 형기종료 수형자들의 경우 출소일(만기)이 가까워지면 교정공무원의 지시와 규율을 잘 따르지 않고 건전한 수형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명 “만기 꼬장”으로 부르는 이와 같은 규율 위반 행위들은 교정기관 내

13 윤옥경/이수정, “수용자-교도관 폭행의 유형과 실태 : 교도관의 관점”, 형사정책연구원, 2005, 115쪽.

14 표준어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일을 방해하려는 공연한 심술을 이르는 말을 뜻함(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에서는 오래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단순히 개인의 규율 위반 행위가 아니라 교정기관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교정기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수용자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형기종료에 가까운 수형자들은 규율 위반 행위를 저질러도 가까운 시일 내에 출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기관 내에서는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하여 교정기관은 신속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형기 종료에 가까워진 수형자는 「형집행법」의 규율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교정기관의 조사 절차에 불성실하게 응하게 되고 사실상 의미 없는 징벌 처분만을 교정기관은 할 수 밖에 없다. 징벌 처분 중이더라도 형기에 도달하면 수형자 석방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3. 소결

상기의 유형은 대표적이고 심각한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폭행은 일상적 의사소통의 질과 양에 영향을 주고 개인적 차원에서 정신적, 신체적 가해와 피해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등 조직을 위한 동기 부여의 측면에서 문제를 표출하기도 하고 조직의 차원에서 형집행자의 권위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조직 목표인 질서 확립과 교정교화에 장애가 될 우려도 많이 있다.¹⁵⁾ 교정공무원들은 규율을 집행하는 통제자로서의 역할과 교정교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수용자들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피해의 위험과 고소·고발 및 진정의 위협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¹⁶⁾ 또한 일견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해 보이는 제도들까지도 그것이 악용되어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용자 행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수용자의 권리 남용과 규율 위반 행위의 원인을 알아보겠다.



15 윤옥경/이수정, “수용자-교도관 폭행의 유형과 실태 : 교도관의 관점”, 형사정책연구원, 2005, 108쪽.
 16 이민식, “교정공무원의 폭력피해가 직무만족 및 전직희망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006, 103쪽.

제3장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 원인

앞 장에서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의 사례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그 원인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정기관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것이다.

제1절 교정기관의 특성

1. 시간적·공간적 특성

가장 먼저 교정기관의 시간적 특성으로 24시간, 365일 근무 체계를 들 수 있다. 업무의 완급조절이라는 것이 없이 항상 긴장된 상태가 1년 내내 유지되는 것이다. 수용자 자살 사고는 아래 <표2>¹⁷⁾와 같이 취침 시간(22:00~다음 날 06:00)에 310건(38.7%)이 발생하며 높은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야간 업무 역시 교정공무원들은 큰 부담을 가진다.

<표2> 최근 10년간 자살 시도 관련 발생 시간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도 | 계 건수 | 00:00 ~ 04:00 | 04:00 ~ 06:00 | 06:00 ~ 08:00 | 08:00 ~ 12:00 | 12:00 ~ 16:00 | 16:00 ~ 18:00 | 18:00 ~ 20:00 | 20:00 ~ 22:00 | 22:00 ~ 24:00 |
|----------|---------|---------------------|---------------------|---------------------|---------------------|---------------------|---------------------|---------------------|---------------------|---------------------|
| | | 803 (100%) | 160 (19.9%) | 59 (7.3%) | 31 (3.9%) | 97 (12.0%) | 125 (15.6%) | 52 (6.5%) | 76 (9.5%) | 112 (13.9%) |
| 2012 | 93 | 22 | 6 | 3 | 9 | 17 | 4 | 11 | 10 | 11 |
| 2013 | 80 | 13 | 10 | 2 | 9 | 11 | 6 | 10 | 11 | 8 |
| 2014 | 55 | 15 | 6 | 3 | 6 | 4 | | 5 | 10 | 6 |
| 2015 | 55 | 10 | 3 | 3 | 6 | 6 | 3 | 6 | 12 | 6 |
| 2016 | 59 | 11 | 2 | 1 | 11 | 13 | 6 | 2 | 7 | 6 |
| 2017 | 46 | 9 | 7 | 1 | 5 | 7 | 2 | 2 | 4 | 9 |
| 2018 | 69 | 22 | 2 | 1 | 7 | 13 | 4 | 4 | 6 | 10 |
| 2019 | 78 | 14 | 5 | 4 | 9 | 9 | 7 | 9 | 10 | 11 |
| 2020 | 126 | 17 | 12 | 6 | 25 | 23 | 9 | 7 | 15 | 12 |
| 2021 | 142 | 27 | 6 | 7 | 10 | 22 | 11 | 20 | 27 | 12 |

또한 공간적 특성으로 교정기관은 범죄자의 격리라는 목적에 맞게 두꺼운 외벽으로 둘러싸여있다. 이와 같이 교정기관에 구금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적 제약이 있지만 또한 교정기관

17 2021년도 교정사고 등 통계 분석, 교정본부.

안에서도 수용자는 공간적 제약을 극심하게 겪는다. 교정공무원은 감시하고 수용자는 감시당하는 공간적 특성을 가진 곳이 교정기관이다.

2. 교정공무원의 업무적 특성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업무와 동시에 수용자를 교화시켜 사회로 보내야하는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다. 전자와 후자는 상호 모순되는 업무로서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러한 업무능력의 요구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직무탈진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아래 <표3>¹⁸⁾은 교정공무원의 직무긴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장에서 교정공무원들은 늘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대로 수용자들을 대하라고 교육받는다. 하지만 또 반대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진행할 때는 항상 수용자들의 말은 대개 거짓말이라며 믿지 말라고 하며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는 다른 수용자들까지 모두 의심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교육 받는다('존경 대 의심'의 사례). 수용자를 대할 때 교정공무원들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기를 기대 받지만 엄정한 업무 속에서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들과 갈등이 생기면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편지를 듣기 일쑤다('일관성 대 융통성'의 사례).

<표3> 역할 모호에 따른 직무긴장

| 조직규범 | 모순적인 긴장 | 갈등 |
|--------------------|--------------------|-----------|
| 수용자에 대한 존중 | 수용자 의심하기 | 존경 대 의심 |
| 수용자를 돌보기 | 거리감 유지와 엄격하기 | 돌봄 대 규율 |
| 규정과 절차를 따르기 | 융통성 발휘하기 | 일관성 대 융통성 |
| 문제해결을 위해 동료에게 의지하기 | 동료의 문제점을 상관에게 보고하기 | 연대성 대 자율성 |

본 연구자는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와 같은 업무적 갈등에 대해서 고민해왔다. 교정공무원은 「형집행법」의 집행자이기 때문에 법학의 관점에서 이 갈등을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의 균형 잡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였다. <표3>을 아래와 같이 <표4>로 변경하여도 크게 어색함이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교정공무원은 「형집행법」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형집행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18 인치견(2017),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직무몰입 및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직업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18-19쪽.

<표4> 법적 안정성 vs 구체적 타당성

| 법적 안정성 | | 구체적 타당성 |
|-------------|--|--------------|
| 수용자에 대한 존중 | 「형집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 | 수용자 의심하기 |
| 수용자를 돌보기 | 「형집행법」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 등 | 거리감 유지와 엄격하기 |
| 규정과 절차를 따르기 | 「형집행법」 제105조(규율 등) | 융통성 발휘하기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법관들이 법규범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순간마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처우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형집행법」을 기초로 고민해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하면서 수용자 처우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만 추구하는 교정공무원의 행동의 가장 극단에는 수용자의 '인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법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수용자는 관련 상황을 '인권 침해' 또는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상황마다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구체적 타당성만을 추구한다면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수용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교정공무원이 접하는 교정기관 내에서 모든 상황은 항상 한 가지의 정답만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균형의 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은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된다.

3. 수용자의 교도소화(prisonization)

범죄자가 교도소에 일단 수용되게 되면 교도소 내에서 생존을 위하여 적응을 하기 시작한다.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적응하고 교도소 내의 관행, 관습, 문화를 습득하며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을 '교도소화(prisonization)'라고 한다. 교도소 문화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을 한 클레머(Donald Clemmer)는 수용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시설 내에서의 수용자들의 가치관과 역할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론에서 수용자는 장기간 구금될수록 수용자들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강하게 젖어들어 사회 복귀에 더 어려움을 갖는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수용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나 지식을 습득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출소 이후 사회적응능력도 저하시킨다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¹⁹⁾

19 이백철, 『교정학 개정판』, 교육과학사, 2020, 401~402쪽.

제2절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 원인

1. 교정공무원의 이미지 왜곡

(1) '간수'라는 이미지(image)

교정공무원은 경찰관(警察官), 소방관(消防官)처럼 교도관(矯導官)으로 불린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수(看守)²⁰⁾'라고 불리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교도관을 간수라고 불렀고 해방된 이후에도 일정 시간 간수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²¹⁾되었다. 지금도 일선 교사(8급 상당) 직급의 교정공무원들을 부장이라고 지칭한다. 부장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시절 간수부장으로 불리던 직급의 잔재인 것이다. 또한 1970~80년대 많이 발생했던 교정기관 내에서의 불법적인 행위(교정공무원이 수용자들에게 담배를 팔거나 가석방 등의 혜택과 금품 거래 등)들은 간수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면서 교정공무원을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현재의 교정기관의 청렴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교정기관 내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2) 언론과 매스미디어의 편중된 입장

교정기관과 같은 구속, 구금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기관은 항상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도 속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능을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언론기관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정기관 내의 수용자 사망 혹은 폭행 등의 사건사고를 언론기관이 취재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권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교정기관 내의 수용자 관련 사건만큼이나 수용자에 의해 벌어지는 교정공무원 폭행 행위와 같은 교정공무원의 인권 침해 역시 균형 있게 보도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시민뿐만 아니라 수용자들까지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폭행과 같은 기사를 접함으로써 교정기관 내의 상황을 더욱 정확히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언론은 교도소 내의 사건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양적 비교를 해보았다. 포털 검색 엔진인 '네이버'에서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후에 "교도관 폭행"을 검색해 보았다.²²⁾ 부정적인 내용이 215회이고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의 언론 보도 횟수는 46회에 불과하다.

20 보살피고 지킨다는 뜻의 단어로 교도관을 뜻하는 옛 용어.

21 간수임용규정은 1962년 8월 22일에 폐지되고 교도보임용규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22 검색일시 2022. 6. 7. 18:00.

<표5> 부정적인 언론 보도 횟수

| 연번 | 제목 | 횟수 |
|--|---|-----|
| 비슷한 기사의 언론사 | | |
| 1 | 인천구치소 폭행 사건으로 수용자 증상...법무부 특별점검 지시(조선일보) | 3회 |
| 채널A, 인사이트 | | |
| 2 | 공주교도소에서 숨진 재소자...“갈비뼈 23개 부러져”(MBC) | 84회 |
| 대전MBC 15회, 중도일보, MBC 4회, 금강일보, 톱스타뉴스, 매일안전신문, SBS연예뉴스, 세계일보, 노컷뉴스 2회, 뉴시스 2회, Queen, 시사매거진, CBC뉴스, 제주교통복지신문, 셸럽미디어, 조이뉴스24, 아시아투데이, 데일리한국, 조선일보 2회, 국제뉴스, 스포츠동아, 싱글리스트, 스타뉴스, 푸드경제신문, 스타데일리뉴스, 헤럴드경제, 미디어펜, 톱스타뉴스, 뉴스엔, 한국강사신문, 이데일리 2회, 채널A, KBS 4회, 뉴스1 2회, 연합뉴스 2회, 채널A 3회, YTN 3회, 머니S, TJB대전방송, SBS, 세계일보, MBN 2회, 금강일보, 내외경제TV,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데일리한국, 한강타임즈, 국민일보, 문화일보, 글로벌경제, 한국경제TV | | |
| 3 | “현직 교도관이다... 도저히 관리 안 돼 청송으로 간 수형자들 상상 초월 기행 밝힌다”(위키트리) | 1회 |
| 4 | 인권위 “교도소 내 수용자 간 폭력사태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연합뉴스) | 11회 |
| 머니투데이, 조선비즈,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서울경제, 아시아투데이, 뉴스1, 뉴시스, 뉴스핌 | | |
| 5 | 법무부 감찰 받던 교정공무원 극단적 선택...유서에 “모두 제 책임”(프레시안) | 9회 |
| 펜앤드마이크, 데일리안, 뉴스1, 동아일보, 조선일보 2회, 더팩트, 헤럴드경제 | | |
| 6 | ‘난동 재소자 폭행 의혹’ 교도관 무혐의...징계절차는 계속(연합뉴스) | 4회 |
| YTN, 중부일보, 뉴스1 | | |
| 7 | ‘유동규 수면제’ 이어 송영길 폭행범 극단선택...구치소 무슨 일(중앙일보) | 1회 |
| 8 | “VIP급들이 줄줄이...”서울구치소 ‘범탈들의 감빵생활’ 소문과 진실(일요신문) | 1회 |
| 9 | 인권위 “치매 수형자 치료·관리 안한 교도소...건강권 침해”(뉴시스) | 9회 |
| 아시아경제, 뉴스1, 조선비즈,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서울경제, 메디컬투데이, 매일경제 | | |
| 10 | “불쌍한 척하니 봐주는데”...구치소서 반성 없던 10대들, 결국 징역형(MBN) | 24회 |
| SBS, 아시아경제 2회,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2회,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중앙일보, 로톡뉴스,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시사저널, 인사이트, 뉴스1 2회, 세계일보, 로톡뉴스, 아이뉴스24, 머니S, 국민일보, 매일경제 | | |
| 11 | 법무부, 공주·포항교도소 수용자 사망에 진상조사 나서(이데일리) | 5회 |
| 세계일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일요신문 | | |
| 12 | 인권위 “군 교도소 징벌 세부절차 마련...인권보장해야”(더팩트) | 1회 |
| 13 | 포항검찰·교도소, 행정소송 각하 노려 형사소송 항소했나(뉴시스) | 3회 |
| 경북매일, 경북매일신문 | | |
| 14 | [단독] 송치 뒤 이틀만에 극단선택...구멍 뚫린 교정시설(서울경제) | 1회 |
| 15 | “짹새야, 냄새난다” 주차 단속한 경찰·교도관 폭행한 벤츠 주인(머니투데이) | 5회 |
| 뉴스1, 파이낸셜뉴스, 머니S, 시사뉴스, 세계일보 | | |
| 16 | [76주년 교정의 날] 과밀수용에 교정환경 여전히 ‘열악’(중도일보) | 1회 |

| 연번 | 제목 | 횟수 |
|---|--|--------|
| 17 | [단독] “우리가 린치당할 땐 꿈쩍 않더니...”전국 교도관들 ‘뚜껑 열린’ 내막 (일요신문) | 1회 |
| 18 | [취재N팩트] CCTV 감시 독방서 재소자 목숨 끊어...“교도관들 뒤늦게 발견” (YTN) | 8회 |
| YTN, 천지일보, 조선일보, 데일리안, 이데일리, 동아일보, 서울신문 | | |
| 19 | 재소자 폭행한 의정부교도소 직원 1심 ‘벌금형’(OBS) | 5회 |
| 연합뉴스, YTN, 문화일보, 경기일보 | | |
| 20 | 교도소서 동료 수형자 초코바 훔쳐 먹고 난동..징역형(연합뉴스) | 2회 |
| TJB대전방송 | | |
| | | 총 215회 |

<표6>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언론 보도 횟수

| 연번 | 제목 | 횟수 |
|--|---|-------|
| 비슷한 기사의 언론사 | | |
| 1 | 창원지법, 구치소서 교도관 3명 폭행 항소심서 감형(로이슈) | 4회 |
| 경남도민일보, 노컷뉴스, 경남신문 | | |
| 2 | 안경다리 끌켜, 교도관에 침뱉고 폭행(매일신문) | 2회 |
| 로이슈 | | |
| 3 | 교도소에서 폭행·행패 일삼은 50대 2심도 실형(남도일보) | 4회 |
| 뉴스, 더팩트, 시사뉴스 | | |
| 4 | 물품구매신청서에 서명 요구했다고... 교도관에 물 뿌리고 폭행한 여성 수용자 실형(인천일보) | 7회 |
| 뉴스, 조선비즈, 세계일보, 문화일보, 머니투데이, 경인방송, | | |
| 5 | 울산지법, 법정서 실형 선고·법정구속에 억울하다며 교도관들 폭행·위협 실형(로이슈) | 16회 |
| 법률신문, 울산매일신문, 울산제일일보, 연합뉴스 2회, SBS, 중앙일보, 문화일보, 프레시안, UBC울산방송, 울산MBC, 뉴스, 머니투데이, 조선비즈, 뉴스1 | | |
| 6 | [단독]재소자도 ‘코로나 우울’...자살 시도-교도관 폭행 급증(동아일보 2회) | 2회 |
| 7 | 대구지법, 경찰서장실에서 소란피우고 구치소서 교도관 폭행 30대 실형(로이슈) | 9회 |
| 대구MBC, 대구일보, 경북일보, 영남일보, 대구신문, 뉴스, 대경일보, 경향신문 | | |
| 8 | 범죄자 인권 높아져 교도소에서 죄수한테 맞고 ‘고소’당하는 한국 교도관(인사이트) | 1회 |
| 9 | “○○야 문열어” 교도관에 욕설 행패(뉴스) | 1회 |
| | | 총 46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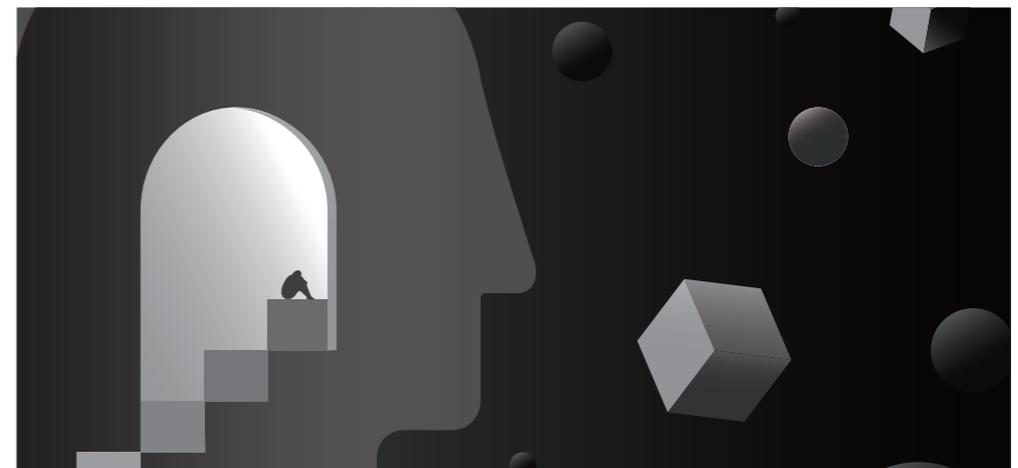
2.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최근 들어서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형집행법」과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학적 관점을 넘어서 교정본부는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의 관점에서 수용자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교정 조직 내부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다. 많은 수의 현직 교정공무원들은 교정 관련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3. 교정기관의 폐쇄성

교정기관은 역사적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교정기관에 수용된 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고 수용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역시 현대 교정학의 개념이 완성되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 교정기관에 수용된 인원은 인구 대비하여 0.104% 밖에 안 된다.²³⁾ 수용된 자들이 범죄자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그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공무원들은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거나 불법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 과정에서 수용자들은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일단 불법적으로 행사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과잉 행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폐쇄적인 교정기관 내



에서 불법 혹은 과잉 행사된다고 믿는 공권력에 대하여 순응하는 것보다는 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수용자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생각은 비단 수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생각하는 바였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교정기관²⁴⁾은 물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쇄성은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모두에게 서로의 부족한 환경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편의에 맞게 행동하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상호 존중 따위는 안중에 없게 된 것이다. 최근의 교정기관의 현실은 과거보다 더욱 개방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교정기관은 폐쇄적인 곳이다. 그 폐쇄성이 과거에는 교정공무원에 의한 수용자의 인권 침해에 사용되고, 그 인권 침해의 상황을 숨겼다면, 최근에는 그 폐쇄성이 수용자에 의한 권리 남용과 교정공무원의 폭행을 포함한 규율 위반 행위에 사용되고, 그 상황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정기관의 폐쇄성이 수용자로 하여금 권리를 남용하게 하거나 규율을 위반하게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4. 소결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더욱 다양한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교정공무원과 교정기관에서만 그 원인을 찾았다. 수용자의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복귀주의 측면에서 수용자는 범죄자로서 치료의 대상이자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의 측면에서는 교정교화의 대상이라고 상정하고 수용자들의 행위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였다.

제4장 교정행정 개선 방안

앞에서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 사례를 살펴보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 역시 알아보았다. 이제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수용자의 권리 남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먼저 살펴보고, 규율 위반 행위 중에서 가장 중한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따로 떼어 내어 제안하고, 그 외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정기관의 폐쇄성의 보완으로 교정기관 ombudsman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24 우리나라 교정기관 중 천안개방교도소를 제외하고 모든 교도소, 구치소가 높은 외벽을 가지고 있다.

제1절 수용자의 권리 남용 대응 방안

1. 소송 등 남용에 대한 대응

(1) 무고죄로 엄정 대응

수용자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에는 무고²⁵⁾ 등으로 같이 고소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다. 교정기관 내에서 소란행위를 피우며 자해 행위를 하려는 수용자를 교정공무원이 그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실로 이동하는 중 교정공무원을 폭행한 수용자가 오히려 교정공무원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면서 경찰 등에 고소장을 내는 경우 등이 자주 발생한다. 또는 수용자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허위로 직무를 태만히 한다며 징계처분을 당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것 역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²⁶⁾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생긴 뒤로 특별 채용 등을 통하여 지방교정청이나 규모가 큰 교정기관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교정공무원이 있다. 이들이 법률적 검토를 한 후에 무고 등으로 대응하여야만 수용자들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의 교도소 소송개혁법 적용

미국에서는 1996년에 교도소 소송개혁법(Prison Litigation Reform Act) 발효와 시행으로 수용자에 의한 소송 남용 방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 중 우리가 도입할 가치가 있는 것을 아래에 서술한다.²⁷⁾



25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 배종대, 『형법각론 제10전정판』, 홍문사, 2018, 674~69쪽.

27 연성진/노용준/신경우, “수형자의 법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295쪽.

첫째,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수용자는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둘째, 판사는 수용자가 제기한 소송이 하찮거나 악의가 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여 기각하는 경우 strike로 간주한다. 이러한 strike를 3개 받은 후에는 그 수용자는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송비용을 먼저 선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수용자가 심각한 부상으로 고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할 수 있다.

셋째, 수용자가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심각한 의료처우의 필요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무관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2. 청원 남용에 대한 대응

무분별한 청원 남용을 막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교정기관이 '청원 남용'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그 남용을 줄여야 한다.

수용자에게 청원 제도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다른 쟁송 수단보다는 단시간에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더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임은 틀림없지만 수용자의 청원 남용으로 인하여 담당 교정공무원의 처리해야 할 건수가 많아지면 행정 절차의 지연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쟁송 수단보다 더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원권의 남용은 수용자 본인들에게도 결국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항을 수용자들에게 평소에 안내하거나 교육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표7> 청원 남용 결정 사유

1.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경우
2.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경솔한 청원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청원 제출 또는 이미 문서로 답변한 청원에 대하여 재차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4.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사소한 일에 대한 청원하는 경우
5. 다수의 수용자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청원하는 경우
6. 문서를 이용한 공식적인 청원제기를 하지 못하는 청원
7. 추가 자료 제출과 같은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

제2절 교정공무원 폭행의 대응 방안

1. 교정공무원 폭행 우려 수용자 등 관리방안

(1) 교정공무원 폭행 우려자 선별 및 관리

교정기관에 입소하는 신입수용자는 신입심사를 받게 된다. 이 때 과거 수용기록상 교정공무원 폭행으로 징벌 처분을 받은 전력 유무, 사건개요상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주취 폭력 및 이유 없는 폭력 등의 범죄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교정공무원 폭행 우려자가 거실 밖으로 나올 때나 이동할 때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즉시 지원 요청하여 기동순찰팀(CRPT,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등 2명 이상 계호 아래 수용자를 처우하여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을 미연에 방지한다.

(2) '미지정' 수용동 과밀 해소

이 논문에서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규율 위반 행위와 밀접한 수용자 군(群)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결수용자는 제외하고 기결 수형자는 각각 경비 처우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개방, 완화경비, 일반경비, 중(重)경비 처우 즉 4가지의 등급을 분류심사를 통하여 분류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분류심사 후에 부여받는 경비처우 등급은 완화경비 혹은 일반경비 처우 등급이다. 그리고 대부분 수형자들은 징역형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역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개별 처우계획(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가장 먼저 시행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 작업 등 개별처우계획을 거부하거나 징벌 처분을 받은 수형자들은 지정된 작업 등의 처우가 없다는 의미로 '미지정' 수용동에 수용되게 된다. 이와 같은 미지정 수형자는 기본적으로 규율 준수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불만 사항 등이 많기 때문에 규율 위반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이다. 교정기관 전체의 과밀수용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미지정 수용동의 과밀수용은 다수의 규율 위반 행위를 초래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 명의 교정공무원이 100명 이상의 미지정 수형자를 담당하는 기관이 적지 않기 때문에 수용인원의 분산을 통하여 수형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의 위험성을 낮추고 전체적인 규율 위반 행위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지정 수형자들은 교정공무원의 많은 관심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미지정 수용동의 수용률을 낮추고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을 교정 프로그램에 따라 건전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은 교정교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 폭행 피해 교정공무원에 대한 조치

교정기관 내에서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특히 물리적 힘에 의한 폭행을 당한 교정공무원은 신체적인 상처도 힘들게 하지만 심적 상처 즉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을 가진 교정공무원은 신체적 상처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고 그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체적 상처 유무에 따라서 폭행당한 교정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선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교정공무원에게 최소한 1일 이상의 병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교정본부의 “마음나래 프로그램”이라는 심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무적인 심리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정공무원 역량 강화

신규 교정공무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수용자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일선 기관에 배치되었을 때 대부분의 신규 교정공무원이 맡을 보안과의 업무들(수용자 운동 계호 업무, 수용자 목욕 계호 업무, 수용자 이동시 계호 업무, 수용자 이송, 수용자의 보고문 처리하기 등)이다. 하지만 법무연수원에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를 충실히 교육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일선 교정기관에 배치된 후에 도제식 교육 방식으로 상기의 구체적인 업무를



익히고 있다. 이마저도 인력이 부족한 교정기관에서는 충분한 교육 없이 신규 교정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많은 수의 신규 교정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업무를 익혀가고 있다. 충분히 교육되지 못한 신규 교정공무원은 엄정한 법집행도 윤통성 있는 수용자 관리도 모두 실패하게 되고 교정기관의 공권력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신규 교정공무원의 일선 기관 배치 전의 법무연수원 교육 기간을 최소한 20주 정도의 소방공무원 수준으로 더 늘리고 연수원 내에 모형 교도소를 만들어 철저히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교정공무원 역시 끊임없는 근무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법무연수원에서는 현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역시 많은 시간 할당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법무연수원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할당된 시간은 1만6000명에 달하는 교정공무원을 교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1인당 연간 교육 횟수가 0.2회를 나타내는데 5년에 1회 정도 교육을 받는 수준이다.²⁸⁾ 따라서 법무연수원의 현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절대적인 교육시간을 우선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4. 교정기관 권한 강화

(1) 무관용원칙 대응(필요적 입건송치)

교정공무원을 폭행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필요적 입건 송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적 입건 송치에 대한 것은 당위적 관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나 조사관련 지침 등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행을 포함하는 것이다. 교정공무원을 폭행하는 행동을 한 수용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지켜본 다른 수용자에게도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공권력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2) 교도소장 등 즉결심판 권한 부여

현재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즉결심판권을 가지고 있다.²⁹⁾ 그래서 경찰 공권력을 침해하는 사람에게는 즉결심판권을 이용하여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는 즉결심판권이 없다. 물론 공권력 대항을 넘어 침해에 이르는 자에

28 2021 교정통계연보

2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계 교정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교정기관 내의 규율 위반 정도의 행위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 점을 만기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들이 악용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수형자들을 억제하거나 교정기관 내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즉결심판권의 교정기관장 부여가 필요하다.

제3절 규율 위반 행위 통제 개선 방안

1. 교정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언행 관련 조항 신설³⁰⁾

교정기관 내에서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에게 부당한 언행을 보이더라도 현재는 별도의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상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으나 형법상 구성요건 등이 엄격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오히려 교정기관이 범죄자를 양성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형법」 규정에 해당할 수준의 규율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 「형집행법」 상의 징벌 규정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적절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지시불이행’이나 ‘수용생활방해’ 등의 다른 규정을 이용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직접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사후에 교정공무원폭행 우려자 등의 구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과 다른 징벌 규정을 적용한다면 그 징벌을 순순히 납득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그에 맞는 처벌이 있어야만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수용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30 최제영, “수용자 징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정책연구서), 2019, 38쪽.



2. 선시제도 도입 - 건전한 수형생활 유인정책

(1) 개념³¹⁾

선시제도(Good Time System)란 수형자에게 교도소 내 수용생활의 선행 정도에 따라서 형기를 일정한 비율로 감하여 줌으로써 수형자 스스로가 자력 개선을 통해 석방의 시기를 일정기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도소 내에서 학과교육과정, 직업훈련 등 교정 프로그램에의 참여정도와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없이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하는 수용자 또는 수용생활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 등 수형자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기 자기 단축제라 부르기도 한다.

(2) 선시제도의 도입

수형자가 특별한 사고나 규율을 위반하지 않으면 일정한 일수의 선시일수를 인정하여 형기를 자기가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행동점수, 프로그램점수, 교육점수 등을 부여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석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석방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며 교정기관에서의 규율 유지나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형자에게 교정기관 내 규율을 준수하는 강력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시제도 또한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교도소 생활에 익숙한 수용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누범자가 조기에 석방될 수 있다는 점과 직업훈련이 덜 된 수형자라도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선시제도에 의해 조기 석방되어 사

31 도재덕, “선시제도 도입을 통한 가석방제도 보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14, 25~26쪽.

회 적응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시제도 도입과 함께 부여되는 점수를 다양한 측면에서 부여하고 누범 등 범수가 높은 수형자에게는 대신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시제도의 적용이 유예되거나 미적용됨을 사전에 설명하거나 또는 선시제도가 최대한 적용되어도 수형기간이 충분히 남은 수형자들을 상대로 직업훈련을 시행하면 두 번째의 단점도 해결될 것이다. 현재 교정기관에서 시행되는 직업훈련 역시 형기나 가석방 여부에 따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형자들을 선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선시제도로 인한 단점을 최대한 줄인다면 장점이 많은 제도이고 특히 수형자들의 건전한 수형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의무적 가석방 제도 도입 - 규율 위반 억제정책

(1) 가석방 현황

2020년 가석방된 자를 살펴보면 형기의 80% 이상 지난 후에 가석방된 수형자의 비율은 거의 83%를 차지하고 있다.³²⁾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누면 형기의 80% 미만 수용된 후 가석방된 자가 17%, 형기의 80% 이상 90% 미만인 수용된 후 가석방된 자가 57%, 형기의 90% 이상 수용된 후 가석방된 자는 26%이다. 형기의 80~90%를 채우고 가석방이 되면 사실상 만기 석방과 차이가 없고 가석방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없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밀수용의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법정 석방 제도(Statutory Release)

캐나다 연방교정청은 법정 석방이라는 제도³³⁾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형자가 형기의 2/3 시점이 도래하면 석방이 되어 보호관찰 등을 받으면서 일반 시민이 되어가는 것이다. 법정 석방은 가석방 신청이 거부된 수형자들이 대상이 된다.³⁴⁾ 물론 중신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2 2021 교정통계연보

33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C CRA), Statutory Release(127조).

34 캐나다의 경우에는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수형자의 출소 시점이 법정 석방으로 출소하는 수형자의 출소 시점보다 더욱 빠르다.

(3) 의무적 가석방 제도 도입

캐나다의 법정 석방 제도 도입은 규율 위반 억제정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캐나다처럼 법정 석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석방 제도를 일정한 조건하에 강제적,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의 경우에는 '의무적 가석방 제도'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캐나다 연방 교정청처럼 만기 전 1/3 시점을 도입하기에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고, 현재 가석방으로 나가는 출소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형기의 2/6, 3/6, 4/6, 5/6에 도달한 때에 정기재심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5/6에 도달하였을 때 의무적 가석방을 적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충분히 논의한 후에 현재 운용되는 가석방 제도와 비교하여 그 시점은 제도를 만들 때 정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왜 규율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인가? 의무적 가석방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 중에 규율 위반 행위를 적용한다면, 규율 위반 수형자는 다른 일반 수형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무적 가석방 이후의 기간만큼 더 징역이나 금고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8> 의무적 가석방 제도 도입의 예

| 형기 | 의무적 가석방 제도(형기 5/6 도달) | | 차이 |
|----------|-----------------------|------|-----|
| | 적용 | 미적용 | |
| 3년(36개월) | 30개월 | 36개월 | 6개월 |
| 2년(24개월) | 20개월 | 24개월 | 4개월 |
| 1년(12개월) | 10개월 | 12개월 | 2개월 |



4. 소결

규율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서 명확한 징벌 규정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건전한 수형생활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선시제도와 규율 위반의 억제책으로서 의무적 가석방 제도를 제안하였지만 그 반대 역시 성립한다. 다시 말해, 선시제도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가 억제될 수도 있고 의무적 가석방 제도를 통하여 규율 위반을 하지 않고 건전한 수형생활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시제도와 의무적 가석방 제도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수용자의 교정교화라는 교정기관의 목적을 한 발짝 더 빨리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교정기관 옴부즈만(Ombudsman)

1. 옴부즈만의 개념³⁵⁾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표자·대리인·변호인·후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옴부즈만 제도란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 할 수 있다. 옴부즈만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데 전통적 옴부즈만은 시민 고충 처리인으로 이해된다.



35 김수빈,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05. 14쪽.

2. 교정기관 내 옴부즈만 제도 필요성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의 원인으로 폐쇄성을 들었다. 따라서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는 교정기관은 폐쇄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많은 교정위원들이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하여 힘써주고 있고 가석방심사위원회, 중앙급식관리위원회 등에서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징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외부위원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교정기관의 공정성 증진과 함께 폐쇄성 극복의 한 모습이다. 하지만 교정위원이나 징벌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등은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 긴 시간 동안 교정기관에 머물며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정기관 옴부즈만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장관이나 독립한 위원회 등에서 선발 절차를 거쳐 옴부즈만을 선발하여 교정기관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교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 그 자체만으로 독립성, 개방성 모두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교정기관 옴부즈만의 형태

(1) 상시(常侍) 옴부즈만 - 공익법무관

교정기관 내에 상시 근무하는 옴부즈만을 두는 것이다. 교정기관 전반을 이해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외부인사가 교정기관 내 보안과에 상주하며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감시자 역할 및 상담자 역할을 맡는 것이다. 공익법무관을 상시 옴부즈만으로 활용한다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수용자의 법률적 처우를 위하여 공익법무관을 교정기관에 1명씩 둔다면 교정기관의 폐쇄성 극복과 함께 수용자 고충 해결 및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상시(非常時) 옴부즈만 - 변호사 실무수습

공익법무관처럼 항상 교정기관에 상주할 수는 없지만 비상시적으로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감시자 역할 및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 비상시 옴부즈만 역시 교정기관 전반을 이해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외부인사가 적합할 것인데, 6개월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외부

인사로 선임한다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법률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는 등의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이에 올해부터 경찰청은 변호사 실무수습을 위해 19명을 선발하고 이후에 차츰 늘려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³⁶⁾ 교정기관 역시 변호사 실무수습을 위해 선발된 변호사 실무수습자를 옴부즈만으로 선임하여 수용자 고충 해결 및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결론

지금까지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와 교정기관의 특성과 그 원인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교정행정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수용자의 권리 남용과 규율 위반 행위를 통제하려는 노력의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교정기관의 높은 벽을 넘어 수용자를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있다. 교정기관의 목적인 수형자의 교정교화는 무조건적으로 수형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면서 이루어질 수 없다. 건전한 시민에게 국가가 편의를 봐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없는 이유와 같다. 건전한 시민이란 법을 준수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한 건전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교정기관 내 교정교화 정책의 제일 첫 시작은 수용자의 권리 남용이나 규율 위반 행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아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를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신영복 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 아래와 같은 부분³⁷⁾이 있다.

여름 징역살이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36 이정현, "경찰청, 변호사 실무수습 19명 선발...확대 추진" 연합뉴스, 2022. 4. 25. 송고, 2022. 6. 29.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5043500004>

37 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들베개, 2016, 329면.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1985. 8. 28. 대전교도소에서

1985년의 교정기관의 환경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잠자리가 부족하고 여름에는 극도로 덥고 겨울에는 극도로 추위 징역살이를 형벌 중의 형벌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그것이다. 2023년의 교정기관의 풍경과는 많이 다르다. 여름엔 각 거실에 선풍기가 돌아가고³⁸⁾ 수용자들은 수용동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 겨울의 수용거실은 온돌 때문에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수용자들을 교정공무원들이 야간 순찰을 하면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만 봐도 흐른 시간만큼 교정기관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비단 교정기관의 물리적 시설만 인권친화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교정공무원 역시 대부분 높은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정기관은 과거보다 훨씬 인권친화적인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정기관을 감시하는 단체 역시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휴먼라이트워치(HRW),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같은 많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이 존재하여 인권 침해적인 모습을 항상 경계하고 있다. 물론 교정당국은 현재 수준의 교정기관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수용자에게는 더욱 인권친화적인 처우를 제공하고 수용자의 가족 역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역행하는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더욱 인권친화적인 교정기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수용자 인권 증진의 기초는 수용자의 교정기관 내 규율 준수로부터 시작됨을 인지하고 교정공무원의 인권 향상도 같이 이루어내어 균형 있는 교정기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38 다양한 질병으로 각각의 의료처우가 필요한 의료수용동의 경우에는 에어컨까지 구비되어 있다.

교정보호체계의 재범방지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 방안 연구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전공 교수

I. 서론

II. 이론적 근거들

1. 왜 교정보호체계 내 관리대상자수 적정화가 중요한가?
2. 교정보호체계 내 관리대상자수 적정화는 실현 가능한가?
: 미국의 탈구금 운동과 보호관찰 슬림화 사례 분석

III. 시설내처우 현황 및 적정화 방안

1. 관리대상자 현황 및 특징
2. 관리대상자 적정화 방안

IV. 사회내처우 현황 및 적정화 방안

1. 관리대상자 현황 및 특징
2. 관리대상자 적정화 방안

V. 결론

국문 요약

본 논문은 교정보호체계 내 대상자 수 적정화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룬다. 범죄자의 실효적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체계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대상을 명확히 하여 밀도 높은 교정교화 활동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정보호체계가 가진 큰 문제점은 교정과 보호체계 모두 필요 이상의 많은 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현상과 보호관찰소의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은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우리 교정보호체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해왔다. 그러나 교정보호체계가 각자의 몫집을 불러가는 망의 확장 현상은 귀중한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가장 설득력 있는 교정이론 중 하나인 RNR 이론에 따르면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교정과 보호 두 기관은 지역사회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설 내 교정체계는 지금 보다 많은 수용자를 탈 시설화(decarceration) 하여야 하고, 사회 내 처우체계도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조기해방(early release) 시켜줘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교정보호체계가 전체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의 감소를 통해 스마트한 교정보호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 정책대안과 향후 제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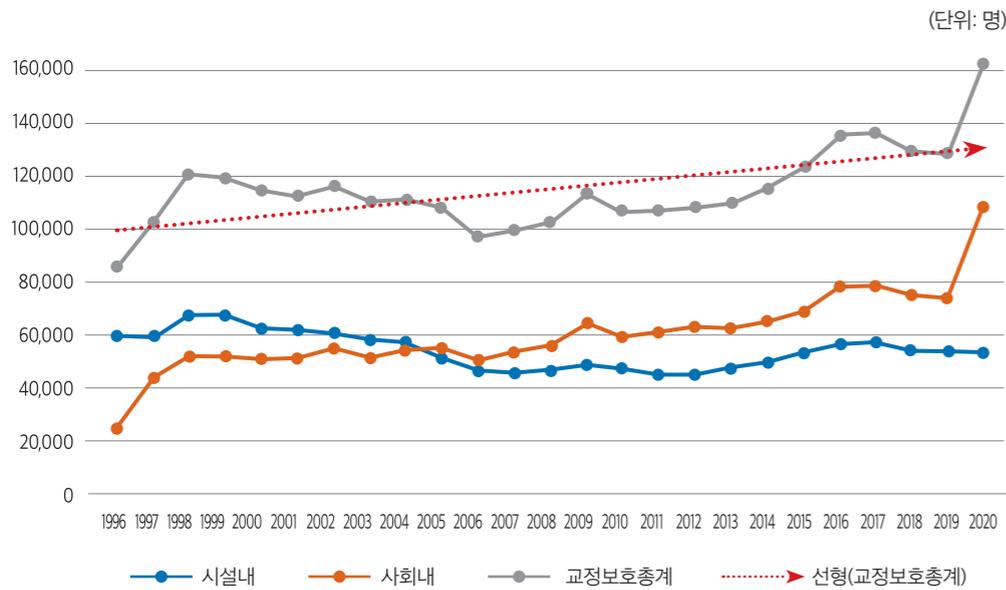
주제어 : 망의 확장, 과밀수용, 보호관찰관, 대상자 적정화, 재범방지



I. 서론

2020년 연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교정보호체계 내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범죄자의 총 수는 약 16만 명으로 교정시설에는 약 5만2000명의 범죄자가 수용되어 있고 사회 내에서는 약 10만8000명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감독을 받고 있다(법무연수원, 2021)¹⁾. 우리나라의 교정보호체계 내 대상자의 현황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 <그림1>과 같다.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해 성인범죄자를 상대로 한 본격적 사회내처우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 교정보호체계 내 대상자의 총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사회내처우의 지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의 수형자 인구 감소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사실²⁾은 서구에서 지적해 온 소위 '형사사법 망의 확장(net-widening)' 현상이 우리나라 교정보호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주희중, 1998).

<그림1> 우리나라의 시설내처우 및 사회내처우 대상자 추이



출처 : 범죄백서, 1995~2020

1 대상자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연도 말 현재원을 기준으로 하였고 사회내처우 대상자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약 2만5000건 정도의 판결전조사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2 <그림1>에서 관찰되는 전체 수용인원의 일부 감소는 수형자가 아니라 미결수용자의 감소에 기인하고 수형자의 규모는 약 3만2000~3만5000명 사이에서 안정적 추세를 보인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교정보호시스템의 재범방지 역량 강화라는 어젠다의 전제 요건으로 교정보호시스템 내 대상자 수 적정화 필요성에 대해 다룬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을 둔 재범방지 정책 수립과 집행체계의 전문성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될 수 있다(김병배, 2017).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대상을 명확히 하고 밀도 높은 교정교화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교정보호체계가 공통적으로 가진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교정과 보호체계 모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용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감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안성훈, 2017; 전정주, 2005) 급기야 지난 2016년에는 구치시설 과밀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2013헌마142). 보호관찰소의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도 같은 맥락에 있다. 보호관찰과 관련된 언론보도는 '기승전 인력부족'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보호관찰관 대비 사건수가 지나치게 많다(김일수, 2009; 윤웅장, 2017). 지금까지의 인력과 시설 확충 경과를 살펴볼 때 인력과 시설의 대폭적인 증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교정보호체계가 각자의 몸집을 불려가는 망의 확장 현상은 귀중한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가장 설득력 있는 교정이론 중 하나인 RNR 이론에 따르면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Andrews & Bonta, 2010).

교정과 보호 두 기관은 모두 지역사회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수를 감소 시킴으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설 내 교정체계는 지금 보다 많은 수용자를 탈 시설화(decarceration) 하여야 하고 사회내처우 체계도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조기해방(early release) 시켜줘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교정보호체계가 전체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의 감소를 통해 스마트한 교정보호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와 관련된 이론적 맥락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시설내교정, 사회내교정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이론적 준거틀

1. 왜 교정보호체계 내 관리대상자수 적정화가 중요한가?

(1) 재범률 감소를 위한 이론적 원칙 : RNR 원칙과 대상자수 적정화

위험성, 욕구, 상응성 원칙(Risk, Needs, Responsivity principle)은 범죄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정체계가 어떠한 원칙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모델이다(Andrews&Bonta, 2010; 김병배, 2017). 이 원칙에 따르면 범죄자의 재범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①재범위험성이 중간이상인 중/고위험 범죄자군에 집중하여 개입해야 하고(위험성 원칙) ②재범방지를 위해 이들 범죄자의 '범죄유발욕구(criminogenic needs)'에 개입해야 하며(욕구원칙) ③개입방법으로 인지행동적 접근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범죄자들의 개별적 특징을 반영하는 접근(상응성의 원칙)을 취하여야 한다. 왜 교정보호체계 내 적정 관리대상자수가 중요한지에 관해 RNR 원칙에서 엿볼 수 있는 핵심적 단초는 첫 번째 원칙인 위험성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은 재범률 감소의 효과가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범죄자들에게서 주로 발견되고, 저위험 대상자에 대한 강도 높은 개입은 오히려 재범률 증가라는 역효과를 산출하기도 한다는 점이다(이형제/김병배 2017; Lowenkamp&Latessa, 2004; Lowenkamp, Latessa,&Holsinger, 2006; Zweig, Yahner,& Redcross, 2011). 위험성 원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비교적 재범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들은 가급적 빨리 더 낮은 수준의 감독체계로 이동시키거나 서둘러 교정보호 감독체계로부터 해제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2)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와 시설내처우의 효과성

시설내처우의 재범방지 효과성은 크게 특별억제, 무해화, 치료재활의 세 가지 맥락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 먼저 구금형의 처벌경험을 통한 재범방지라는 특별억제효과는 수형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허경미, 2011; Gendreau, Goggin,&Cullen, 1999; Cullen&Johnson, 2016; Nieuwebeerta, Nagin,&Blokland, 2009). 이들 선행연구들의 일관적 메시지는 교도소 수감경험 여부가 향후 재범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음에 비해 복역기간의 증가는 오히려 향후 재범을 증가시켰다는 점이다(Smith, Goggin,&Gendreau, 2002). 교도소 처벌경험으로 인한 특별억제 효과가 명확하다면 시설내처우 대상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특히 장기간의 수용은 오히려 재범방지 측면에서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설내처우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가장 확실한 범죄방지 기제는 무해화(incapacitation)에 기반한다(Sweeten&Apel, 2007;

Spelman, 2000).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영리한 교도소 공간의 활용은 소위 '선별적 무해화 전략(selective incapacitation)'으로 가급적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사회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수용하는 방식이다(Blumstein, 1983).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교정시설에 선별 수용하면 할수록 시설내처우의 투입 대비 효과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시설 내 교정처우의 재범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 번째 맥락은 수형자에 대한 집중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전술된 RNR 원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치료프로그램이 가장 큰 효과를 산출하는 집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지목하여 오고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시설내처우의 재범방지 효과성은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고위험군을 교정시설에 무해화하고, 집중적으로 치료재활 할 때 최적화 될 수 있다. 또한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 대한 수용처분은 가급적 회피해야 한다는 사실역시 명확히 밝히고 있다.

(3)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와 사회내처우의 효과성

사회내처우의 재범방지 효과성도 크게 특별억제와 치료재활의 두 가지 맥락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 먼저 특별억제의 관점에서 사회내처우 및 중간처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1990년대의 전통적 연구들은 대부분 재범방지 효과성을 발견하지 못했다(Fulton et al., 1997; Petersilia&Turner, 1993). 그러나 2000년 이후 출현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등 일부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의 긍정적 재범방지 효과성 연구결과들은 주목할 만하다(Bales et al., 2010; Gies, Gainy,&Healy, 2016; Belur et al., 2020). 다만 이러한 긍정적 결과도 많은 경우 재범 위험성이 중간이상인 대상자에 한정해서 그 결과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치료재활의 관점에서도 보호관찰의 효과성은 최근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산출하고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전통적인 감시감독 위주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감소에 실패했다. 그러나 통상적 보호관찰관 면담에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을 접목한 캐나다의 STICS 프로그램(Bonta et al., 2011), 미국 썬시네티 대학교의 EPIC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재범방지의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Smith et al., 2012).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대상자 선발에 있어 재범위험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종합하여 볼 때 전술된 사회내처우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있다. 보호관찰관이 좀 더 작은 사례수를 가질 수 있다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단순한 법 집행-처벌적 기능에서 벗어나 치료재활적 관점의 지도감독으로 변경될 수 있다(Phelps, 2013). 실제로 미국의 선행연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적은 사례수와 함께 증거기반 실천을 수행하는 경우 상당한 정도의 재범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Jalbert&Rhodes, 2012).

2. 교정보호체계 내 관리대상자수 적정화는 실현 가능한가? : 미국의 탈구금 운동과 보호관찰 슬림화 사례 분석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위 ‘대 구금의 시대(era of mass incarceration)’라고 불릴 만큼 구금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70년대 중반 이전의 구금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동기간 내 미국에서는 약 4배 이상의 구금인원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과밀수용 완화 목적의 사회 내 중간제재(intermediate sanctions)를 적극 활용해 왔으나 과밀수용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망의 확장’이라는 역효과만 양산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Latessa&Smith, 2011).³⁾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00년 이후부터는 ‘탈 구금화(decarceration)’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실무계 모두에서 진지하게 시작되었다(Clear, 2021). 미국에서 탈 구금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1년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한 연방법원의 위헌판결(Brown v. Plata, 2011)로 인해 수만 명의 수용인원을

3 중간제재가 실패한 이유는 지역사회교정이 교도소형에 처해져 있거나 처해질 대상자를 상대로 부과되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저위험 대상자에게 중간제재가 확장되었거나 이러한 중간제재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잦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명령이 취소되면서 교도소에 재 입소하게 되는 악순환을 지적하고 있다(주희중, 1998).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교정시스템 재조정(corrections realignment)’이라는 개혁을 단행했다. 2011년에 시작된 이 정책은 교도소 수용자 중 상당수를 지역사회로 석방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일부 저위험 중범죄자들은 양형 시에 교도소에 수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만 명의 교도소 수용인원을 감축했다. 특히 이로 인한 재범률 증가 등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Petersilia, 2016; Lofstrom&Raphael, 2016). 미국의 지난 30여 년 간의 교도소 수용인원 감축에 관한 개혁사례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수용인원 감소는 매우 실행이 어려운 과제라는 점이다. 막대한 예산투입을 수반했던 90년대의 중간처벌제도 실험은 교도소 과밀수용을 해결하지 못했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매우 신중히 기획되고 과감히 실행된다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성공사례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다른 아닌 법원의 적극적 개입과 행정부의 과감한 정책대안 마련이었다(Petersilia&Cullen,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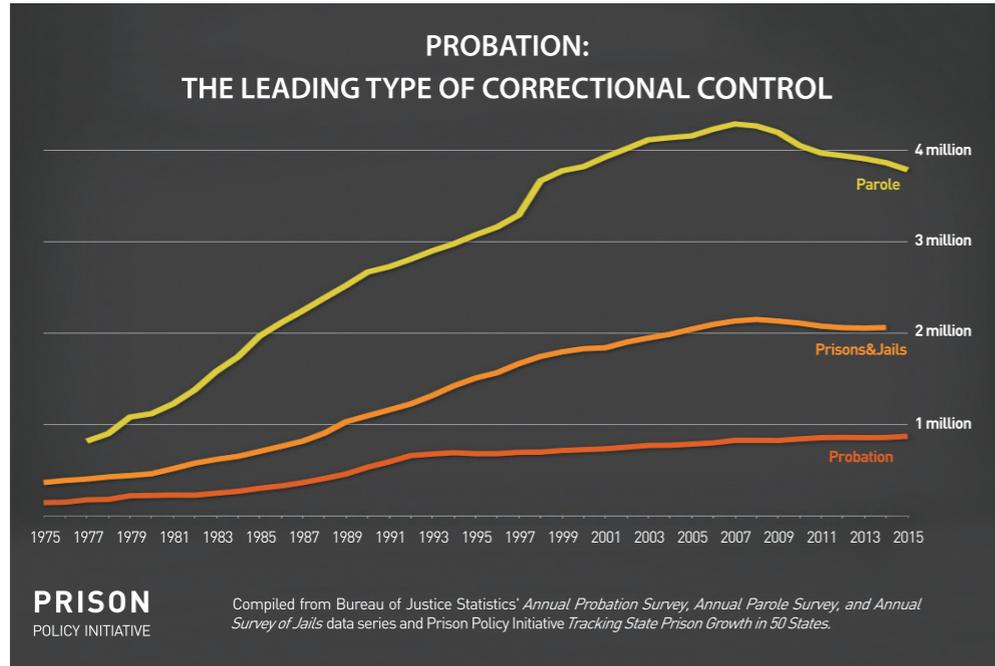
<그림2>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도소 수용자 변화 추이



출처 : Lofstrom&Martin, 2015, 재수정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보호관찰(probation)이 징역형처럼 형벌의 하나로서 활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보호관찰 활용률이 보호관찰을 독립형벌로써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약 4배 이상 증가했고 2007년 기준 대상자 총 수는 약 430만 명으로 미국 성인 53명 중 1명이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림3> 미국의 교도소 수용자 및 사회내처우 대상자 변화 추이



출처 : prison policy initi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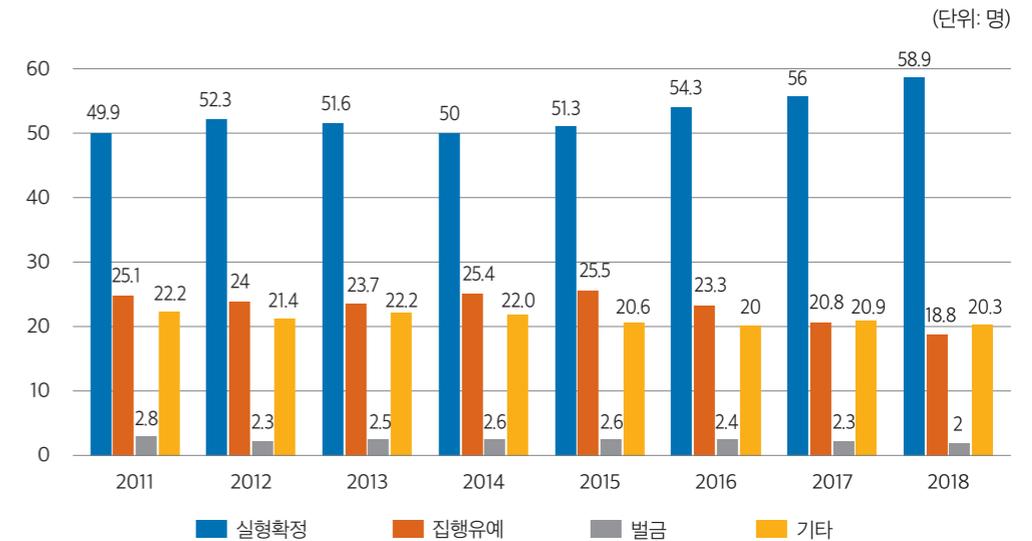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는 ‘대 보호관찰 현상(mass probation)’이다(Phelps, 2013; 2020). 방만한 보호관찰시스템 활용에 대한 반성으로 미국 내 진보적 보호관찰 조직은 보호관찰 운영시스템을 ‘대 보호관찰’에서 ‘집중감독체계(focused supervision)’로 변화하려 하고 있다(Harvard, 2017). 유사한 맥락에서 캘리포니아 주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중범 보호관찰의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최대 2~3년으로, 경범 보호관찰의 기간도 기존 3년에서 최대 1~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도 저위험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보호관찰 체계 내에서 해제시키려는 노력들 역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Vera, 2013). 미국의 보호관찰 슬림화사례는 한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호관찰 대상인원의 감소를 위해서는 ‘집행기간의 단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PEW 재단이 실시한 보호관찰 인구 감소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 대상 미국 22개주 중 15개의 주에서 보호관찰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들 주의 공통 특징은 대상자들의 평균 보호관찰 집행기간이 감소했다는 점이었다. 특히 이들 15개주 중 3개주는 명령개시자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명령이행 기간의 감소로 전체 인원은 감소하였다. 연구진들은 보호관찰 인원 감소를 위해 가급적 명령부과 기간을 줄이고 보호관찰 성적 우수자에 대한 조기 보호관찰 해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PEW, 2020).

Ⅲ. 시설내처우 현황 및 적정화 방안

1. 관리대상자 현황 및 특징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2013년 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121% 초과되어 약 3800여 명의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초과 수용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13직권0000100).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결정하면서 수용자 1인당 최소 2.58㎡의 수용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013헌마142결정).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수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먼저 구치시설의 과밀화가 뚜렷하다. 전술된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결정 모두 구치시설의 과밀화에 관한 결정이었다. 우리나라 구치시설의 수용인원은 2000년대 초반 사법개혁을 통해 상당히 감소하였음에도 전체 수용인원 대비 점유율이 아직도 약 35%에 육박한다.⁴⁾ 구치시설 과밀해소의 필요성은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사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피고인 중 실제 구금 형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약 60%였고 나머지 40%는 집행유예, 벌금 선고 등의 사유로 석방되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 또는 벌금을 선고 받는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약 20~28%를 유지하고 있다(법무부, 2020).

<그림4> 구치소 출소 사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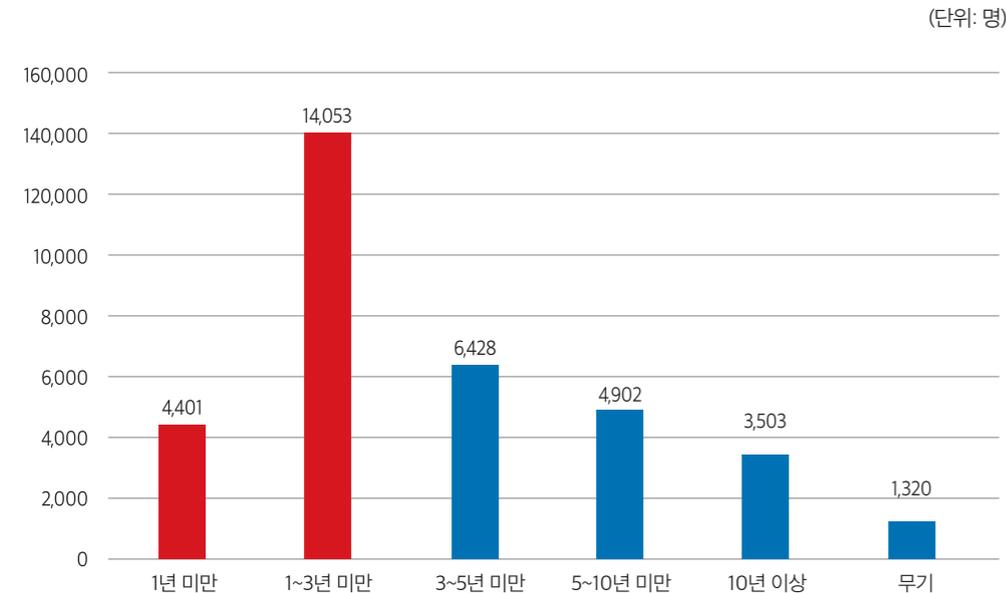


출처 : 범죄백서

⁴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미결구금인원 현황을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수준은 조사대상국 총 36개국 중 상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Walmsley, 2016).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현상은 단기구금형 선고자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1심 공판사건 선고현황을 살펴보면 1심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 받는 피고인 중 약 40%가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있다(사법연감, 2021). 이들 중 선고 당시에 미결구금된 피고인의 비율을 감안하면 실제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집행할 시기는 6개월 미만인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교도소에서 이들 징역 1년 미만 선고자들이 수형자 현재 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7%에 해당한다. 이 비율에 3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수형자 중에 3년 미만의 단기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약 53%를 초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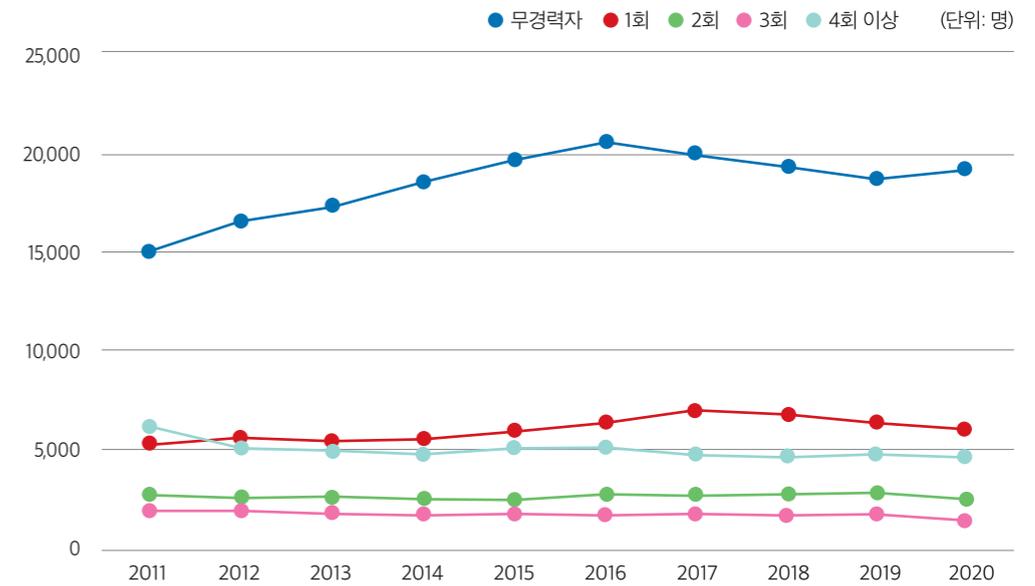
<그림5> 2020년 수형자 현재원 중 선고형이 3년 미만인자 현황



출처 : 교정통계연보, 2021, p.67 수정

우리나라의 교도소 수용현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세 번째 현상은 이전 입소경력을 기준으로 볼 때 초범의 점유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20년 연도 말 기준 전체 수형자 현재원 3만4749명 중 교도소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수형자의 수는 1만9379명으로 약 55.8%의 점유율을 보인다. 이러한 높은 점유율은 아쉽게도 상승추세에 있다.

<그림6> 수형자 입소경력 인원 변동 추이



출처 : 교정통계연보, 2021

2. 관리대상자 적정화 방안

(1) 미결 수용인원의 감소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는 많은 부분 미결수용자의 장기수용에서 기인한다(안성훈, 2017). 피고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석이 권리로서 허용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의 긴급한 구속요건이 소멸하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OECD 국가들은 재판 전 단계에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재판전감독제도(pretrial supervision)를 활용하고 있다(서보학/최석윤, 2004).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대표적 구속자 석방제도인 보석마저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신진수,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구속 피고인 중 보석 인원은 연간 약 10%를 약간 상회할 뿐이다. 2020년부터는 보석의 사회보호적 성격을 담보하기 위해 전자감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지만 활용빈도는 매우 낮고 감독체계도 불안정하다(김광현, 2021).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재판전감독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에 대해서 구속 또는 불구속 결정 외에 제3안의 대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제3안의 대안은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영장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이

다.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시점을 법원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긴급한 수사가 끝난 이후의 시기부터 영장의 집행을 일부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조건부 석방에 대한 청구권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부여하여 석방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도 있다.⁵⁾ 재판전감독제도의 정면 도입에는 석방된 피의자/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재판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구비할 필요도 있다. 현재의 보석 감독체계는 매우 형식적이고 보석을 허가하는 판사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감독 체계가 형행화되는 경우가 많다(조성용, 2010). 조건부 석방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자감독, 주거제한, 가택구금 등의 조건을 적극 부과하고 담당자의 체계적 지도감독도 병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판전감독제도의 집행 주체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단기구금형 수형자의 감소

단기구금형은 “악몽감염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교화개선을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라는 격언이 암시하듯 사회보호를 위해서도 수형자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정실무상 잔형기 3개월 미만의 수형자들은 형 확정 이후에도 구치소에 남아 있고 분류처우도 실시하지 않는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2조). 즉 단기구금형 선고자에 대한 시설내처우는 교화개선에 대한 노력보다는 단순 감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기구금형 회피 필요성에 관한 주장들은 국내외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지만(허일태, 2007; Nagin, Cullen,&Johnson, 2009) 가시적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단기구금의 대안으로 다이버전, 사회내처우의 확대, 가택구금의 활용 등이 논의되었지만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망의 확장 없이 ‘원래 교도소로 가야 하는 범죄자’를 상대로 이러한 대안처분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는 형법 또는 양형지침상 6개월 미만의 단기구금형의 선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12개월,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독일은 더 나아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년 미만의 징역형은 유예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56조). 이러한 개혁을 배경으로 실제 독일의 구금률은 200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96명에서 2019년에는 78명까지 떨어졌고 이러한 법률의 시행은 범죄율의 증가라는 역효과를 양산하지도 않았다(Subramanian&Shames, 2013; Reinventing criminal justice symposium, 2020).

5 본 내용과 유사한 제도는 2005년 사개추위 개혁안에 포함되어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두 번째 방법은 단기구금형을 실제 선고 받은 대상자를 상대로 일종의 ‘형벌 전환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잔형기가 6개월 미만의 수형자에게 형 집행의 방법을 사회내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신청권을 주고 판사가 허가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것과 유사한 형집행 방법의 변경제도이다.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두 번째 대안처럼 잔형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제3의 형벌제도로는 전자감독제도를 활용한 집중보호관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박성수, 2014). 기본적으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병과하고, 직장유지, 음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하여 교도소 내와 유사한 정도의 구조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되 생업을 위한 기본적 직업행위만 허가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3) 성적 우수 수형자의 조기석방

가석방제도는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를 연계하는 매우 중요한 행형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가석방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석방은 ‘제도의 소극적 운영’(이희정, 2021) 뿐 아니라 ‘대상선정과 심사의 공정성’(조준현, 2015), ‘시설 내 행동개선 효과 부족’(김정연 외, 2019)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해서 과밀수용은 완화하면서도 사회 안전은 담보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본 논문은 두 가지 개혁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단기수형자에 대한 필요적 가석방 심사제도의 도입이다. 미국 버몬트주 등 몇몇 주에서는 특정요건을 갖춘 수형자는 최소복역기간 등 단순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불허하는 ‘기본 가석방제도(presumptive parole)’를 시행하고 있다(Renaud, 2018).⁶⁾ 우리나라에서도 1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 받은 단기수형자에게는



6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2019년부터 초기가석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구금형 처분을 선고 받은 수형자가 최소 의무기간을 복역한 경우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단기복역자 가석방제도(Short Sentence Parole(SSP))를 시행하고 있다(www.parole.pa.gov).

형법상 가석방 신청 기간요건과 징벌경력 부재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본 심사 대상으로 추천하고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가석방을 허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강동범/이강민, 2017). 현실적으로 본 심사에 올라가기 전 교정기관의 가석방예비회의의 관문을 통과 하지 못하는 수형자들이 많은 상황을 피하고 단기구금형을 선고 받은 대상자 중 가급적 많은 대상자가 가석방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미국의 약 20개주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석방심사 가이드라인(parole guidelines)’의 실시를 제안한다. 법원의 양형 실무에 ‘양형 가이드라인(sentencing guidelines)’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가석방 실무에도 구체적 심사기준과 필요 복역률을 공표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감히 가석방을 허가하는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폭력위험성, 시설 내 행동, 프로그램의 참여도 등의 요인들이 포함된다. 아래 <그림7>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가석방심사 가이드라인을 요약해 제시한 것이다.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분하여 한 축에는 재범위험성(risk of recidivism), 다른 한 축에는 가석방 준비도(preparedness category)를 활용하여 격자식으로 가석방 허가와 불허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내에서의 행동양태에 대한 교도관의 평정을 점수화하고 작업, 직업훈련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이수 성적을 정치하게 점수화 한다면 시설 내 행동개선 효과는 물론 교정당국의 수형자 행동통제에 관한 우려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7> 펜실베이니아주 가석방심사 가이드라인

| | | | | | | | | |
|---------------|--|----------------|----|-----|----|----|----|----|
| 재범위험성 평가 | LSI-R 총점을 기준으로 3분 | | | | | | | |
| 가석방 준비도 | 자체 척도를 기준으로 3분 | | | | | | | |
| 관련성적 면접결과 | 의무교육, 징벌경력 등 7개 문항 동기, 향후계획 등 4개 문항 | | | | | | | |
| 강력사범 가석방 허가기준 | | 비강력사범 가석방 허가기준 | | | | | | |
| 위험성 | 준비도 | | | 준비도 | | | | |
| | | 낮음 | 중간 | 높음 | | 낮음 | 중간 | 높음 |
| | 높음 | × | × | ○ | 높음 | × | × | ○ |
| | 중간 | × | × | ○ | 중간 | × | ○ | ○ |
| | 낮음 | × | ○ | ○ | 낮음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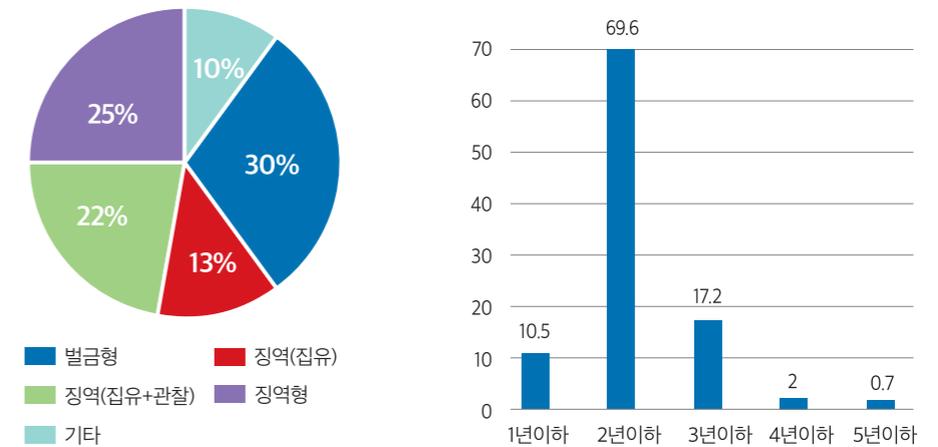
출처 : 펜실베이니아주 가석방심사위원회, 수정

IV. 사회내처우 현황 및 적정화 방안

1. 관리대상자 현황 및 특징

2020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회 내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범죄자는 현재원 기준 약 11만 명에 육박한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약 2배를 초과하는 수치이다(법무연수원, 2021). 사회내처우 대상자의 규모는 명령을 시작하는 대상자의 수와 대상자들이 부과 받은 명령기간에 영향 받는다(PEW, 2020). 현행법상 가장 대표적 보호관찰 처분 중 하나인 집행유예 단계에서의 보호관찰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심 공판사건을 기준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부과되는 대상자의 비율은 약 22%이다(법원행정처, 2019). 보호관찰이 징역형과 동일한 형벌의 하나로 부과되는 영미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내처분이 단순 집행유예사건과 보호관찰 등이 조건으로 붙는 집행유예 사건으로 나뉘면서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보호관찰의 평균명령 기간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유사 통계에 따르면 집행유예 단계에서 부과 받는 보호관찰의 기간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1년 초과 2년 이하의 비율이 약 70%에 육박하고 4년 이상의 점유율은 약 2.7% 정도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 단계에서 부과되고 있는 보호관찰 기간도 어느 정도 적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법무부, 2021).

<그림8> 집행유예 단계에서의 보호관찰 부과율(좌) 및 보호관찰 평균부과 기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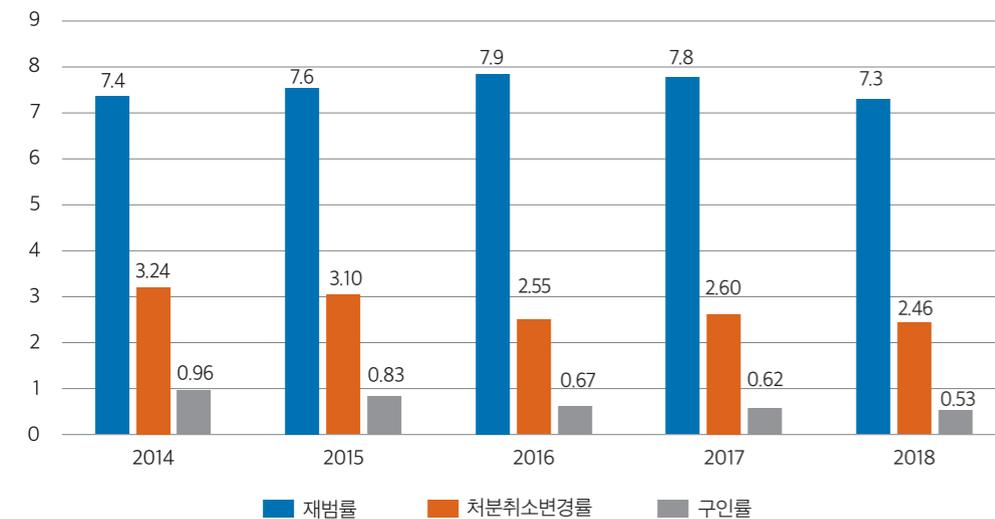


출처 : 사법연감, 2019, 재구성

출처 :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2021

문제는 이들 보호관찰 대상자들 중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임시해제 절차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보호관찰 기간의 단축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보호관찰 임시해제 통계를 살펴보면 매해 약 2000~3000여 건의 보호관찰 사건만이 임시해제를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약 2~3% 미만의 사건이다(법무부, 2020). 이러한 현황이 더 문제시 되는 이유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낮은 재범률과 준수사항 위반율에 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5년 평균 약 7%에 머물고 있고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심각히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의 처분취소 및 처분변경 등의 경우에도 최근 5년 평균 약 2.79%에 머물고 있다. 두 집단 간 중복 대상자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도 전체 대상자의 약 90%는 보호관찰 기간을 별 문제 없이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내처우 현장에서는 상당수의 보호관찰 사건수가 임시해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내처우 체계에서 지속 관리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9> 보호관찰 성적 불량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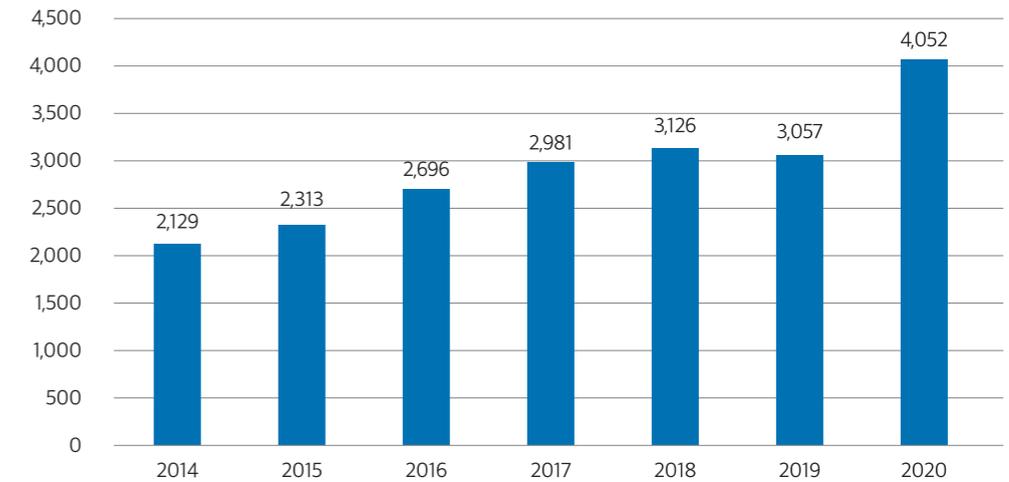


출처 :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2021, 수정

사회내처우의 대상자 특성과 관련하여 주목하여 할 정책 환경 변화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감독제도이다. 이 제도는 과거 20여 년간 경미 범죄자 위주로 시행되어오던 사회내처우의 성격을 강성 사회보호적 보안처분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 받는다(김민이, 2016). 전자감독 제도의 실시가 사회내처우 업무량과 관련하여 갖는 정책적 함의는 중요하다. 2020년 12월 기준 전자감독 현재원은 4052명으로 전체 사회내처우 사건 대비 약 3.8%의 점유

율만을 갖지만 담당 인력은 408명(관제인력 포함)으로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전체 보호직 정원의 약 24.4%에 달한다(법무부, 2021). 특히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 등 중/고위험 대상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 내에서 집중 관리감독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그림10>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추이



출처 :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2021

2. 관리대상자 적정화 방안

(1) 보호관찰 도시지 모형의 도입과 법정 명령기간 단축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이 보호관찰 초기 1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윤용장, 2017; Petersilia, 2007), 보호관찰 개시 후 1년간 별다른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은 대상자들은 추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사실을 제시한다(PEW, 2020).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초기에 지도감독의 역량이 집중되거나 고위험 대상자와 저위험 대상자간 월등히 차별적 감독수준의 구현이 어려운 상황이다(김병배, 2019). 이러한 비효율적 보호관찰체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첫째, 사회 내 교정체계에 너무 많은 사건수가 존재하고 둘째, 보호관찰의 업무구조가 명령기간의 완료를 염두에 두고 짜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업무형태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미국의 진보 보호관찰 조직에서는 보호관찰의 성격을 '기간 기반'에서 보호관찰의 '목표 기반'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면서(Harvard, 2017),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보호관찰 도시지 모형(probation dosage model)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지 모형은 의약학 분야의 약물투여 처방기준과 유사하게 보호

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입수준을 차등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최근 보호관찰 현장에서도 도시지 모형을 지지하는 기초연구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Lowenkamp, Latessa,&Holsinger, 2006; Sperber, Latessa,&Makarios, 2013). 미국 공공정책연구소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험수준별로 개입의 처치수준을 차등 규정한 도시적 모델을 제시하였다(Carter&Sankovitz, 2014).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이 2년의 단기라는 점과 처우에 필요한 도시지를 300시간이라고 비교적 긴 시간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전 '명령기간 중심 모델'과 비교해 볼 때 보호관찰의 명령기간은 대폭 감소했지만 개입의 강도는 대폭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지역사회 교정의 핵심 어젠다는 얼마만큼의 기간만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기간'의 개념에서 얼마만큼의 '시간'만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강도'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러한 도시지 모형의 실시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보호관찰 기간을 감축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최대 5년까지 부과 가능한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과 동일하여 최대 3년까지 부과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짧아진 기간만큼 보호관찰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려 보호관찰의 도시지 모형에 충실한 명령집행이 되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림11> 미국의 보호관찰 도시지 개념 모형

| 위험성 수준 | 명령기간 | 도시지 총합 | 보호관찰관 직접개입 | 외부기관 서비스연계 |
|--------|------|--------|------------|------------|
| 중간 | 12개월 | 100시간 | 2주당 45분 | 1주당 90분 |
| 중간/고위험 | 18개월 | 200시간 | 1주당 45분 | 1주당 3시간 |
| 고위험 | 24개월 | 300시간 | 1주당 45분 | 1주당 6시간 |

출처 : Carter & Sankovitz, 2014, 수정

(2) 부과된 보호관찰의 탄력적 집행 : 보호관찰 점수제의 도입

전술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내처우 대상자 감소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이슈는 성적우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임시해제의 활성화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미국의 최근 경향은 전통적으로 재소자에 적용해오던 선시제(good time credit)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우 2008년 주법 개정을 통해 매 30일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완전히 이행한 대상자에게 20일의 기간단축 혜택효과를 주고 있다. 선시제와는 약간 다른 보호관찰 자기해제 프로그램(earned discharge program)도 활용되고 있다. 선시제가 보호관찰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자동으로 명령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자기해제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구체적 행동에 보상을 주는 일종의 점수제(point system)이다(petersilia, 2007).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관찰 성적우수자에 대한 임시해제 활성화를 위해 보호관찰 점수제(point system)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보호관찰기간 중 면담사전예약제 준수여부, 생활보고서 작성 충실도, 생활태도 등에 있어서의 기본점수와 기타 취업, 학업관련 성과점수를 합산하여 특정 점수를 넘게 되는 경우 분류등급을 자동 하향 조정하거나 보호관찰 임시해제가 자동 신청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시해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 보호관찰관마다 발생하는 임시해제 활용 편차를 줄이고 특정 점수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방법을 통해 업무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실제 보호관찰 실무에서는 몇 해 전 점수제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시험실시가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었다. 해당 제도의 시뮬레이션 결과 점수제 실시는 성적 우수자의 신속한 분류등급 하향과 임시해제 신청에 높은 성과를 보였다(창원보호관찰소, 2015).

<그림12> 소년 보호관찰 점수제 시범실시 기준

| 구분 | 단기 보호관찰 | | 장기 보호관찰 | |
|-----------|---------|--------|---------|--------|
| | 점수범위 | 은전 기준점 | 점수범위 | 은전 기준점 |
| 집중 → 주요 | 158~214 | 200 | 180~324 | 200 |
| 주요 → 일반 | 133~155 | 150 | 93~350 | 150 |
| 일반 → 임시해제 | 65~225 | 100 | 83~402 | 150 |

출처 : 창원보호관찰소, 2015

(3) 전자감독 성적 우수자의 부착명령 임시해제 활성화

전술된 바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매우 높은 인력소요로 사회 내 교정체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다(문희갑, 2020). 따라서 성적우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부착명령 임시해제는 보호관찰 임시해제와 달리 업무량 감소에 주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이들 대상자 중 상당수가 성범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임시해제 활용률은 낮다. 문제는 이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경우 명령기간이 매우 길고 또 대상자 중에는 부착명령 집행에 놀랍도록 순응적인 범죄자들도 많다. 실제 부착명령 임시해제율은 평균 약 2%로 낮고 그나마 성범죄자에 대한 임시해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김광현, 2021).

최근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성범죄 피부착자에 대한 낮은 임시해제 활용률 극복을 위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했다(김병배/곽대훈, 2021). KSORAS-DST로 명명된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해제 적격 후보자에 대한 향후 5년의 성범죄 동종 재범확률을 추정하도록 도와준다. 실제 법무부 서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도구의 평정점수와 전문가의 심리평가 결과 담당 보호관찰관의 평정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얻은 피부착자들은 그들의 이전 범행경력과 무관하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조기 해제하도록 하

고 있다. 가급적 다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전자감독 대상자 중 성적 우수자에 대한 부착명령 임시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림13> KSORAS-DST 문항구조

| 문항 | 위험요인 | 범주 | 점수 |
|----------------------------------|---|------------------|----|
| 1 | 개시평가 시 재범위험성 수준 - 개시평가 시 기준 KSORAS 평가 점수 | 14점 이하 | 2 |
| | | 15~17점 | 1 |
| | | 18점 이상 | 0 |
| 2 | 본 건의 부착명령 처분 유형 - 부착명령의 부과단계 | 가석방/집행유예/가중료 | 1 |
| | | 형기종료(소급포함) | 0 |
| 3 | 성범죄 전력 유무 - 본 건 외 과거 성범죄 경력 유무 | 없음 | 2 |
| | | 있음 | 0 |
| 4 | 전체 수용/감독 중 문제행동 - 교정시설 징벌경력, 사회내처우 원처분취소 경력 | 없음 | 2 |
| | | 있음 | 0 |
| 5 | 심사신청 시 연령 - 임시해제 신청 시 (만)연령대를 기재 | 60대 이상 | 2 |
| | | 50대 | 1 |
| | | 40대 이하 | 0 |
| 6 | 감독개시 후 재범 없이 보낸 기간 - 전자감독 개시 후 임시해제 신청 시까지 재범 없이 보낸 기간 | 6년 이상 | 5 |
| | | 5년 이상~6년 미만 | 4 |
| | | 4년 이상~5년 미만 | 3 |
| | | 3년 이상~4년 미만 | 2 |
| | | 2년 이상~3년 미만 | 1 |
| | | 2년 미만 | 0 |
| 7 | 전자감독 중 준수사항 위반 여부 -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았는지 여부 | 없음 | 3 |
| | | 있음 | 0 |
| 8 | 전자감독 중 지도감독 순응도 - (최근 1년)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적극 순응여부 | 적극 순응 | 1 |
| | | 미순응 | 0 |
| 9 | 가족관계 안정성 - (최근 1년) 혼인관계의 안정성 | 안정(기혼, 1년 이상 동거) | 1 |
| | | 불안정(미혼, 이혼, 불화) | 0 |
| 10 | 직업관계 안정성 - (최근 1년) 생업활동의 안정성 | 안정(70% 이상 출근) | 1 |
| | | 불안정(무직, 잦은 이직) | 0 |
| 11 | 음주문제 안정성 - (최근 1년) 음주문제 경력과 현재 문제 존재 | 안정(1문항 이하 해당) | 2 |
| | | 다소 불안정(2문항 해당) | 1 |
| | | 매우 불안정(3문항 해당) | 0 |
| 12 | 정신과문제 안정성 - (최근 1년) 정신과 문제의 유무 및 안정성 | 안정(없음) | 1 |
| | | 불안정(진단경력, 문제의심) | 0 |
| KSORAS-DST 채점 결과 | | | |
| 총점 기준 □ 하(16점 이하) □ 상(17점 이상) | | | |

출처 : 김병배/곽대훈, 2021

V. 결론

본 논문은 한국 교정보호체계의 재범역량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정/보호체계 대상자 수 적정화에 관한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들 방안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교정시설 과밀화와 사회내처우 업무 폭증이라는 이슈를 ‘시설 확충’ 또는 ‘인력 총원’의 대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적과 앞으로의 전망은 모두 부정적이다. 특히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교정보호 체계의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로 인식한다면 이런 방법보다는 현재의 대상자 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긴급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정/보호관찰 당국과 교정학계 모두의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둘째, 교정보호체계의 기본적 역할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교정/보호체계는 형벌 및 보안처분의 집행 측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여 왔고 그러한 이유로 징역과 보호관찰의 명령기간을 가급적 종료 하는 것이 형 집행기관의 기본적 임무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교정보호 기관의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이런 집행위주의 수동적 입장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상자의 행동개선을 촉진하고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대상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단순히 사법기관의 명령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교정/보호기관이 주도적으로 형벌과 보안처분을 집행하고 그 목표를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행동개선에 두는 것이 교정/보호기관의 사명에도 더 부합한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정보호체계를 둘러싼 업무환경과 업무처리 관성을 고려해보면, 교정보호체계 내 대상자 총량의 감소라는 이슈는 꽤 성공하기 어려운 어젠다인 것은 명확하다. 실제로 교정당국에는 교정시설에 투입되는 수용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경우 범죄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안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교정시설 과밀해소와 사회내처우의 슬림화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공공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정책대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원 등 사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의 의견과 인기영합적 정책 수립의 유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행정부와는 달리 사법부에는 이러한 유혹이 덜 하기 때문이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후속연구를 통해 다듬어 지고 발전되면서 우리나라의 교정보호체계 내에 지금보다 적은 범죄자들이 관리감독 받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강동범/이강민, (2017),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교정연구 27(2), pp.3-28.
- 김광현, (2021),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NARS 현안분석, 입법조사처.
- 김민이, (2016), 보호관찰제도의 강성적 변화에 따른 운용형태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7(4), pp.141-165.
- 김병배, (2017), 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채택과 향후 과제, 보호관찰 17(1), pp.41-81.
- 김병배, (2019),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의 효과성 평가, 형사정책연구 30(3), pp.181-207.
- 김병배, (2021),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패턴에 대한 탐색적 분석: 왜 재범은 보호관찰 초기에 집중되는가?, 교정담론 15(1), pp.145-165.
- 김병배/곽대훈, (2021),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수법 분석 및 재범위험성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일수, (2009), 한국 보호관찰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호관찰 9(1), 7-20.
- 김정연/윤옥경/차종진/배상균, (2019),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p.1-286.
- 문희갑, (2020),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호관찰 20(1), pp.83-113.
- 박성수, (2014), 가택구금제도의 다양한 활용방안, 보호관찰 14(1), pp.59-97.
-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2021.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2021.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5~2021.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1.
- 서보학/최석운, (2004), 판결전절차에서 보호관찰제도의 활용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신진수, (2014), 자유의 도구로서 바라본 전자감시-재판 전(Pretrial Release) 구금완화를 중심으로, 일강법학 29, pp.191-218.
- 안성훈, (2017),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교정연구 27(1), pp.55-93.
- 이형재/김병배, (2018), 경향성점수 가중치법(PSW)을 활용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재범방지 효과성 평가, 한국범죄학 12(3), pp.87-105.
- 이희정, (2021), 가석방제도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31(1), 3-30.
- 윤웅장, (2017), 소년보호관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11(3), pp.1-29.
- 전정주, (2005), 교정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과밀수용해소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29, pp.177-207.
- 주희중, (1998),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문제와 향후 교정정책의 방향, 교정연구.
- 조성용, (2010), 현행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구속 및 구속자 석방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법조 59(5), pp.119-167.
- 조준현, (2015), 우리나라의 가석방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67(67), pp.7-43.
- 허경미, (2011), 구금처우의 재범억제 효과성의 한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2, pp.91-120.

- 허일태, (2007), 한국 형법의 개혁과 발전, 동아법학 (39), pp.105-128.
- 창원보호관찰소, (2015), 은전기준표 활성화 방안, 법무부 내부보고서.

[외국 문헌]

- Andrews, D. A., & Bonta, J., (2010),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Newark, NJ: Lexis Nexis.
- Bales, W., Mann, K., Blomberg, T., Gaes, G., Barrick, K., Dhungana, K., & McManus, B., (2010),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Tallahassee, FL: Florida State University.
- Belur, J., Thornton, A., Tompson, L., Manning, M., Sidebottom, A., & Bowers, K., (2020),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offend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68, 101686.
- Blumstein, A., (1983), Selective incapacitation as a means of crime contro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1), pp.87-108.
- Bonta, J., Bourgon, G., Ruggie, T., Scott, T. L., Yessine, A. K., Gutierrez, L., & Li, J., (2011), An experimental demonstration of training probation officers in evidence-based community supervisio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8(11), pp.1127-1148.
- Brown v. Plata, 2011.
- Carter, M., & Sankovitz, R. J., (2014), Dosage probation: Rethinking the structure of probation sentences. Silver Spring, MD: Center for Effective Public Policy.
- Clear, T. R., (2021), Decarceration problems and prospects.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4, pp.239-260.
- Fulton, B., Stichman, A., Travis, L., & Latessa, E., (1997), Moderating probation and parole officer attitudes to achieve desired outcomes. The Prison Journal, 77(3), pp.295-312.
- Gendreau, P., Cullen, F. T., & Goggin, C., (1999), The effects of prison sentences on recidivism (pp. 4-5), Ottawa: Solicitor General Canada.
- Gies, S., Gaaney, R., & Healy, E., (2016), Monitoring high-risk sex offenders with GPS. Criminal justice studies, 29(1), pp.1-20.
-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 2017.
- <https://www.hks.harvard.edu/centers/wiener/programs/criminaljustice/research-publications/executive-sessions/executive-session-on-community-corrections/publications/toward-an-approach-to-community-corrections-for-the-21st-century>
- Jalbert, S. K., & Rhodes, W., (2012), Reduced caseloads improve probation outcomes.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35(2), pp.221-238.
- Cullen, F. T., & Jonson, C. L., (2016), Correctional theory: Context and consequences. Sage Publications.

- Latessa, E., & Smith, P., (2011), *Corrections in the community*. Routledge.
- Lofstrom, M., & Martin, B., (2015), *Public safety realignment: Impacts so far*,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 Lofstrom, M., & Raphael, S., (2016), *Incarceration and crime: Evidence from California's public safety realignment reform*.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64(1), 196-220.
- Lösel, F., & Schmucker, M., (2005),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 comprehensive meta-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1), pp.117-146.
- Lowenkamp, C. T., & Latessa, E. J., (2004), *Understanding the risk principle: How and why correctional interventions can harm low-risk offenders*, *Topics in community corrections*, 2004, pp.3-8.
- Lowenkamp, C. T., Latessa, E. J., & Holsinger, A. M., (2006), *The risk principle in action: What have we learned from 13,676 offenders and 97 correctional programs?*, *Crime & Delinquency*, 52(1), pp.77-93.
- Nagin, D. S., Cullen, F., & Johnson, C. L., (2009), *Imprisonment and recidivism*.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38(1), pp.115-200.
- Nieuwebeerta, P., Nagin, D. S., & Blokland, A. A., (2009), *Assessing the impact of first-time imprisonment on offenders'subsequent criminal career development: A matched samples comparis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5(3), pp.227-257.
- Pennsylvania Parole Board : www.parole.pa.gov
- Petersilia, J., (2007), *Employ behavioral contracting for earned discharge parole*. *Criminology & Public policy*. 6, 807.
- Petersilia, J., (2016), *Realigning corrections, California styl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64(1), pp.8-13.
- Petersilia, J., & Cullen, F. T., (2015), *Liberal but not stupid: Meeting the promise of downsizing prisons*. *Stanford Journal of Criminal Law and Policy* (Vol. 2).
- Petersilia, J., & Turner, S., (1993), *Intensive probation and parole*, *Crime and justice*, 17, pp.281-335.
- PEW, (2020), *States can shorten probation and protect public safety*.
- Phelps, M. S., (2013), *The paradox of probation: Community supervision in the age of mass incarceration*, *Law & policy*, 35(1-2), 51-80.
- Phelps, M. S., (2020), *Mass probation across the US: States'control regimes from 1980 to 2016*, In *Criminal Justice Theory* (pp.119-142), Routledge.
- Prison policy initiative, <https://www.prisonpolicy.org/reports/pie2022.html>
- *Reinventing criminal justice symposium*, 2020.
- Renaud, J., (2018), *Eight keys to mercy: How to shorten excessive prison sentences*, Prison Policy Initiative.

- Smith, P., Gendreau, P., & Goggin, C., (2002), *The effects of prison sentences and intermediate sanctions on recidivism: General effects and individual differences*, Ottawa: Solicitor General Canada.
- Smith, P., Schweitzer, M., Labrecque, R. M., & Latessa, E. J., (2012), *Improving probation officers' supervision skills: an evaluation of the EPICS model*.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35(2), 189-199.
- Spelman, W., (2000), *What recent studies do (and don't) tell us about imprisonment and crime*. *Crime and justice*, 27, pp.419-494.
- Sperber, K. G., Latessa, E. J., & Makarios, M. D., (2013), *Examining the interaction between level of risk and dosage of treat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0(3), pp.338-348.
- Subramanian, R., & Shames, A., (2013), *Sentencing and prison practices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New York, NY: Vera Institute of Justice.
- Sweeten, G., & Apel, R., (2007), *Incapacitation: Revisiting an old question with a new method and new data*.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3(4), pp.303-326.
- Thibaut, F., Cosyns, P., Fedoroff, J. P., Briken, P., Goethals, K., Bradford, J. M., & WFSBP Task Force on Paraphilias, (2020), *The World Federation of Societies of Biological Psychiatry (WFSBP) 2020 guidelines for the pharmacological treatment of paraphilic disorders*, *The World Journal of Biological Psychiatry*, 21(6), pp.412-490.
- Vera Institute of Justice, (2013), *The potential of community corrections to improve safety and reduce incarceration*.
- Walmsley, R., (2016), *World pre-trial/remand imprisonment list*, London: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 Zweig, J., Yahner, J., & Redcross, C., (2011), *For whom does a transitional jobs program work? Examining the recidivism effects of the 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program on former prisoners at high, medium, and low risk of reoffending*, *Criminology & Public Policy*, 10(4), pp.945-972.



여성수형자에 대한 국내 교정정책 개선방향

심혜인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교도소의 과밀수용 및 개별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남성수형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수형자의 과밀화 문제와 개별처우,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등 교정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여자교도소와 관련해 2008년 KBS2 '다큐멘터리 3일'의 청주여자교도소 편을 통해 여성수형자의 개개인의 삶을 조명하기도 하였고 1997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창단한 '하모니 합창단'을 모티브로 한 영화 '하모니'가 2010년에 개봉해 300만 명 이상의 관객 수로 흥행하면서 여자교도소와 여성수형자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생겼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지속되지는 않았다.

여성수형자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

법무부의 '2022 교정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여성수형자는 2436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7.1%였으며 10년 전 2012년 전체 수형자의 5.0%(1571명)가 여성수형자였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55.1% 증가한 수치를 볼 수 있다. 지난 35년간 여자범죄자에 대한 교정 개별처우가 어려웠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여자수형자의 재복역율, 연령, 죄명의 변화이다. 지난 10년간 여성수형자의 평균 재복역율은 11.2%였다. 10년 전에 비해 2021년 여자수형자는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60대 이상의 여자수형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죄명별 여자수형자의 가장 큰 변화는 마약류 여성수형자의 증가로 2012년 45명에서 2021년 170명으로 약 3배 가까운 증가수준을 보였다.

2015년에 진행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에서 「UN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법규와 교정 실제 현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가 최근까지의 여성수형자 교정 운영 실재와 큰 차이가 없어 여성수형자의 교정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고 있다.

여성수형자 교정처우 개선 필요

국내 여성 전용 교도소는 1989년에 설립된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하다. 평균적으로 약 750명의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인원을 고려할 때 미결수를 포함한 여성수용자 4043명의 18.6%만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나머지 81.4%의 여성수용자는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분산 수용되어 온 것이다. 외국인 여성수용자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되는

데 외국인 여성수형자는 2012년 35명에서 2021년 111명으로 증가하였고 여성미결수용자는 2012년 28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에 대한 부담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

전국의 7개 여성전용형무소를 마련하여 구치소를 제외하고는 남녀수형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각각 마련한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 여자교도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시설점검 및 여자교도소의 추가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준공 경과 연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교정시설이 52.8%(28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2003년에 준공된 청주여자교도소는 경과 연수가 20년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덜 노후화된 시설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건물의 준공연수가 20년이 되면 건물 노후화의 시작점으로 보고 각종 교내 시설의 개보수를 시작하기에 청주여자교도소도 시설의 점검과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수용자와 교정직원 등 1000여 명이 넘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로의 사례를 통해 교정시설에도 교정시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감염병 예방 대책이 적용된 교정시설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수형자는 성별의 차이로 인해 임신, 출산, 양육 등 특수한 욕구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남성수형자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받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수형자는 교정시설 배치 및 이송 시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수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과의 관계나 자녀와의 만남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수용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 등의 여성수형자의 교정의 지원과 훈련 프로그램의 개선도 진행되어야 한다.

여자교도소의 추가 신설은 필수불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여자교도소 설립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교정기관 유치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많이 변화하여 교정시설 신축의 어려움이 과거보다는 나아지기는 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과의 의견 수렴 및 소통, 사전협의 등이 부재했던 화성여자교도소 추진과정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유한 영역과 관련된 이해를 반영한

여성수형자에 대한 전략과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여자교도소의 추가 신설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여성수형자의 과밀화 및 교정처우 개선을 위한 화성여자교도소의 설립을 시작으로 여성수형자의 교정처우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엄중관리대상자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고찰

이세린

안양교도소 보안과 교감

I. 서론

II. 본론

1. 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권의 인정여부
2. 조직폭력수용자로의 지정 및 해제의 해석
3. 마약류수용자로의 지정 및 해제의 해석
4. 관심대상수용자로의 지정 및 해제의 해석
5.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그 밖의 논점

III. 결론

I. 서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형집행법 제1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형집행법 제104조는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범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관리를 위하여 '엄중관리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에서는 엄중관리대상자를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로 구분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장은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범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범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의 부여가 금지되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0조) 조직폭력수용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송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1조). 또한 조직폭력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접견할 수 있고 귀휴나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처우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2조) 조직폭력수용자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



이 엄격히 적용되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3조) 위와 같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기본적인 처우는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형집행법 제104조 제2항) 일반 수용자들과는 다른 처우를 받게 되고 귀휴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를 결정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소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으므로(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자는 구체적으로 마약반응검사(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물품교부 제한(동법 시행규칙 제207조), 영치품 등 수시점검(동법 시행규칙 제208조) 등에 관하여 다른 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엄중관리대상자'로의 지정은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익·불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지정 및 해제가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엄중관리대상자(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관심대상자)에 대한 지정 및 해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판례를 통해 분석하여 해당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권의 인정여부

수용자가 엄중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의 해제를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는 엄중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처분'있는 때, 그 지정의 적법 여부를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있음에도 추후 해제를 구할 별도의 신청권을 인정하여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수용자가 그 해제를 신청하였음에도 당해 교정시설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해당 수용자)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2002두12489판결 등 참조).

형집행법 제10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장(제194조 내지 제213조)에서는 소장의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정과 해제에 대한 규정만 규율하고 있을 뿐, 당해 수용자의 지정해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용자는 법규상 지정해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자의 엄중관리대상자 지정해제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수용자가 해제를 구할 신청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일관된 태도로 수용자의 조직폭력수용자·마약류수용자 지정에 대하여 수용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841판결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위 법리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는 행위와 마약류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839

-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성립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거부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종전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그 이후 새로운 행정쟁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7252).
- 그러므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는 그 거부처분을 기준으로 한 쟁송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마약류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자 지정과 별도로 지정해제를 신청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을 교정시설(소장)에서 거부한 경우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별도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의 경우에도 마약류수용자 지정의 경우와 같이 소장이 그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한번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방할 때까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정 효과는 계속성,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이나 지정해제 신청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없게 된다면 실제로 조직폭력수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자를 구제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수용자 인권의 존중(형집행법 제4조)과 차별금지(형집행법 제5조)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용자의 엄중관리대상자로서의 지정해제는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고 수용자는 지정해제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수용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2. 조직폭력수용자로서의 지정 및 해제의 해석

형집행법 제104조는 마약류수용자·조직폭력수용자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조직폭력수용자로서의 지정 대상, 제199조는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지정대상(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①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수용자로 명시된 수용자 ②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수용자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③ 공범·피해자 등의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수용자로 명시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①, ②는 당해 수용자의 조직폭력수용자로 명시 및 단체 등의 구성·활동·이용·지원·범죄단체 등의 조직범죄에 대한 것이므로 수용자의 조직폭력 해당여부에 대하여 폭력조직에 가담 활동의 시기와 판단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30750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가 정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수용자, 즉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던 전력이 있는 범죄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 바 단지 원고에 대한 형사항소심 판결이유 중 검사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내용에 원고가 조직폭력수용자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가 규정하는 재판서 등이 작성될 당시에 수용자가 조직폭력수용자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규정한 재판서 등은 해당 범행에 대한 판단을 기재한 문서들로 수용 원인이 된 범행 당시에 수용자가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었음은 위 재판서 등을 작성한 법원 등이 판단 할 수 있는 내용이다.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의 문언에 비추어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수용자로 명시되어 있으면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장이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수용자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수용자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는 대상자는 당해 사건 당시 조직폭력수용자에 해당하였던 것을 요하며 단순히 검사에 의한 항소이유

기재에 불과한 것이 아닌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재판서의 인정 사실의 경우(사실 경위 등)도 재판부의 사실인정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므로 사실 경위에 수용자의 조직폭력사범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지정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직폭력사범임을 명시한 내용이 범행의 경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3호와 관련하여 당해 수용자에 대한 조사·재판기록이 아닌 공범·피해자 등의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다는 사유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해야하는 실익이 문제될 수 있다.

광주고등법원 2020누1778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3호는 ‘공범·피해자 등’이라고 규정하여 문언의 해석상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이 되는 재판서 등을 공범의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을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명시된 부분의 기재내용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이어야 한다거나 명시된 내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조직폭력사범은 일반적으로 조직폭력의 사회적 위험성과 집단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재범률을 보이며 외부 폭력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높고 세력을 모으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 이에 따라 조직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하여 예방적인 교정행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크다. 조직폭력사범을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고 가벌성의 관점에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
- 조직폭력사범에 해당한다는 기재내용이 단순히 검사나 피고인 측의 주장을 기재한 것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경위사실의 기재라 하더라도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직폭력수용자로의 지정은 법원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닌 예방적인 교정행정을 위한 측면이 존재한다. 형벌은 일정한 행위를 한 자를 벌하는 것을 예고하거나 현재에 처벌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경고를 발하는 ‘일반예방’ 측면과 죄를 범한 특정인에 대하

여 그를 개선하는 작용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특별예방’ 측면을 모두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폭력수용자로의 지정은 지정으로 인한 엄중관리에 대하여 일반인에 대한 예방적 측면과 특정 수용자에 대한 교화적 작용이라는 특별예방을 도모하며 조직폭력수용자에 대한 관리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수용자에 대한 조사·재판 기록에 조직폭력사범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공범, 피해자 등의 조사·재판기록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예방적 차원의 조직폭력사범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므로 형집행법 제198조 제3호로 이를 규정한 것이다.

나. 지정 및 해제(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1항은 소장은 제198조 각호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19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1항 전단에 따라서 소장은 해당 수용자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폭력수용자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후단에서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19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현재의 수용생활’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이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분쟁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문언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파악해보고자 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 및 관계법령은 형기 종료와 석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형집행법 제2장, 동법 시행령 제3편 수용의 종료 참조). 따라서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모든 형기가 종료되어 석방이 이루어져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가 조직폭력범죄와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8조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해당 형기 전 기간에 대하여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이 가능하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형기 집행 중 다른 범죄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예정되는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대하여는 조직폭력범죄의 형기가 종료되었다고 곧바로 조직폭력사범의 해제를 한다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1항 후단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한 형이 제198조 제1호 또는 제2호’는 문언에 따르면 ① ‘제19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이 집행되고 석방 없이 다른 범죄에 따른 형이 집행되는 경우와 ② 다른 범죄로 형이 집행 중이고 ‘제19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집행이 예정된 경우라고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위 해석은 문언에만 기인하여 이루어진 해석이므로 향후 구체적 사례, 판례 및 새로운 입법 등을 통해 구체적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조직폭력사범의 경우 단순히 구성의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력을 통해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다른 범죄의 집행과 관련하여 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의 해석에 따라 수용생활에 엄중한 관리가 요구되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그 해석의 정립은 수용자의 처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2020누1778

- 형집행법 제199조 제2항 단서가 말하는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 해제 사유인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수용자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조직폭력범죄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조직폭력사범으로 표시되었거나 조직폭력범죄가 적용된 부분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든지 또는 형사재판 결과 최종적으로 판결 등에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에 따라 조직폭력사범 또는 조직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처분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수사과정에서 발부 가능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반면, 그 지정을 해제하는 처분은 공소장 변경, 재판 확정에 따른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에 공소제기 된 이후의 공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 해지에 대하여서도 공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재판 확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로 보인다. 이는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은 수사과정에서 발부한 것으로도 가능하므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기재로 확인되는 것이 아닌 적어도 법원이 판단한 사항으로 해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이루어진 지정처분의 신뢰성을 보호함과 함께 법원의 판단(공소장 변경의 경우, 법원의 판단범위 축소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광의적 측면의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을 통해 조직폭력수용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수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마약류수용자로의 지정 및 해제의 해석

가. 지정대상(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에서는 마약류수용자의 지정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1호는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를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204조 제2호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로 규정되어 있어 별건의 범행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지가 문제된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841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제2호는 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을 “마약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별건 범죄가 마약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하여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
-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그 목적이 있는 제도가 지 해당 수용자의 집행유예 선고 실효에 따른 마약류 범죄의 형의 집행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통칭하므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제2항 소정의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에는 아직 별건 범죄에 관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도 포함되는데 해당 수용자가 별건 범죄에 관하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일단 마약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으로 수용되면 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제2호가 마약류 범죄로 인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별건의 범행이 마약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질

필요는 없으며 집행유예 기간 전에 이루어진 범죄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즉, 마약류수용자로의 지정은 별건의 범행의 시기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 다른 범죄로 수용되는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 엄중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형법 63조) 그 효력의 관계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은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하여 재판 중에 있는 자(실형 선고 전)', '과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재판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별건의 확정 전, 마약류수용자로의 지정의 필요성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 지정 및 해제(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1항은 마약류수용자로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에서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와는 달리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



자가 지정 후 5년이 지나고 수용생활 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마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위 법률은 마약류에 대한 의존(중독 등)으로 인한 오용 또는 남용에 대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의존에서 해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5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용생활 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에 지정해제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4. 관심대상수용자로의 지정 및 해제의 해석

조직폭력수용자 및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었던 자의 관심대상수용자로의 지정 및 해제가 논의될 수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0조 제5호는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을 관심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동조 13호에 근거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해제된 자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관심대상수용자의 경우는 조직폭력수용자 및 마약류수용자의 지정·해제와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다.

관심대상수용자로의 지정해제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은 담당교도관 또는 감독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관심대상수용자는 수용자 일신상의 내외적 요인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폭행, 자살, 자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아, 평소 수용관리 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조직폭력수용자 및 마약류수용자로의 지정은 수용자의 특별한 내외적 요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1조 제3항은 수용자의 수용생활 태도에 대하여 실제 해당수용자를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관심대상수용자로서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5.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그 밖의 논점

가. 지정처분 취소 또는 해제신청의 피고적격(피신청인)

광주고등법원 2020누1416

-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는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제1항 전문).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및 해제하고, 그에 따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9. 21. 제주 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마약류수용자 지정 및 해제, 그리고 그에 따른 관리 권한은 원고가 현재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인 광주교도소의 소장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원고에 대하여 마약류수용자 지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이를 해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5조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및 해제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소장에게 있으며, 이때 ‘소장’은 해당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가 이감되어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지정해제는 현재 수용중인 교정시설의 장을 상대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감 전 교정시설의 장에 대하여 신청을 하는 경

우, 지정해제의 권한 없는 자에 대한 신청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마약류수용자 지정 및 해제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며 조직폭력수용자로의 지정 및 해제, 관심대상수용자로의 지정 및 해제의 경우에도 당해 수용자가 이감된 경우 현재 수용중인 교정시설의 장이 해당 수용자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현재 수용중인 교정시설의 장을 상대로 지정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엄중관리대상자로의 지정’과 ‘지정해제에 대한 거부처분’이 모두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문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조 제2항에서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엄중관리대상자로의 지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지정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거부를 당한 날로부터 위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또다시 지정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30750

- 원고도 형사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을 무렵에는 자신에 대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 위법한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위법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으로 인한 손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날마다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지정과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모두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르면 위법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으로 인한 손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정해제 신청은 손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교정시설(소장)의 거부가 있을 경우 손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엄중관리대상자 지정에 대한 계속적·강제적 성격을 고려하면 실질적 수용자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보장을 위하여 이러한 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손해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지정해제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형집행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4조 이하에서 엄중관리대상자(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관심대상자)로의 지정 및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 거실지정, 직책의 부여 금지, 접견, 귀휴, 물품의 지급 등 수용생활에 있어서 다른 수용자들과는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엄중관리대상자로의 지정과 해제는 해당 수용자의 수용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정과 해제에 대한 근거법령에 대한 해석은 수용자의 온전한 수용생활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수용자의 해제 신청권을 조리상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수용자가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의 실질적 실현 및 수용처우에의 즉각적 반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엄중관리대상자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하여는 실무상 ‘조직폭력수용자’, ‘마약수용자’의 지정 및 해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당해 사건 범죄행위 당시 조직폭력사범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재판서의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의 경위에 불과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으며 재판서는 공범 및 피해자등의 재판서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조직폭력수용자로의 지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형집행법 제199조 제1항 후단 ‘현재의 수용생활 중’의 범위에 대하여는 문언적 해석은 가능하나 향후 실질적 사례, 관련 판례의 축적 및 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조직폭력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폭력사범 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 즉각적 해제를 하도록 권고¹⁾하고 있으므로 조직폭력수용자로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중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조직폭력수용자로의 지정의 필요성과 해제 사유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조직폭력수용자로서의 지정에 대하여 필요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여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교정행정의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마약사범은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2021년 대비 12.9%가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특별수사팀을 조직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마약사범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마약류수용자로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수용생활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중관리대상자로의 지정은 수용자 인권보장이 더욱 강조되는 현 상황에 비추어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및 이와 연계성을 가지는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의 필요성과 적절성 및 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더불어 수용질서의 확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앞으로의 교정행정이 도모하여야 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¹ 국가인권위원회 20003. 4. 7.자 02진인1683결정 등.

마약류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심혜인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I. 들어가며

II. 마약류사범 교정프로그램

1. 미국
2. 캐나다
3. 일본

III. 맺음말

국문 요약

최근 국내 마약류사범의 전체적인 급증, 마약류 여성사범의 증가, 1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로 인한 저연령화 등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약류범죄’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마약의 중독 특성 때문에 마약류사범의 재복역 가능성이 커져 교정기관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교정통계연보의 공식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마약류범죄 증가 양상과 유형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마약류사범 대응 및 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교정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미국, 캐나다, 일본의 3개국을 선정하였으며 미국은 메타돈 유지 치료프로그램(Therapy in Methadone Maintenance Treatment),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프로그램, 주거용 약물 남용 프로그램(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을, 캐나다는 주사기(교환) 프로그램(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 아편 중독 치료 프로그램(Opioid Agonist Therapy, OAT)을, 일본은 다르크(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아파리(Asia Pacific Addiction Research Institute)의 마약류 중독 관련 프로그램, 세리가야 필로폰 재발 방지 프로그램(The Serigaya Methamphetamine Relapse Prevention Program)의 내용 및 운영과 효과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마약류사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구축하는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교정시설에서 마약류사범이 교정, 재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이 운영되어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 마약류수형자, 마약류 중독치료프로그램, 마약류사범 재활프로그램,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해외마약류관련교정프로그램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더는 아니게 되었다. 10대 마약류사범이 5년 동안 281% 급증하였으며¹⁾ '펜타닐' 불법 유통 및 투약으로 10대 청소년 42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²⁾ 텔레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 SNS를 활용하여 마약류 약물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10대의 사례를 볼 때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및 예방대책과 관련된 정책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 1만7073명 중 10대가 454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류 수형자는 2021년 1849명으로 2012년 1295명에 비해 42.8%가 증가하였다. 특히 마약류 여성수형자는 지난 10년간 297.8%, 약 3.0배가 증가한 수치로 2021년 마약류 여성수형자는 179명이다. 마약류 남성수형자도 지난 10년간 33.6% 증가하였으며 2021년 1670명이다.³⁾ 또한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는 2021년 425명으로 2012년 56명에 비해 658.9%, 약 6.6배 증가하였다. 2021년 마약류 수형자 중 외국인 수형자는 23.0%이며 외국인 수형자 중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는 30.7%이다.⁴⁾ 마약류사범의 재범역률은 2021년 42.1%(762명)이며 마약류사범 재

1 서울경제, 2023.01.29, "10대 판매총액까지 등장...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범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NWD09DN> 2023년 1월 29일 최종검색.
 2 연합뉴스, 2021.05.20, "마약성 진통제 유통·판매한 10대 42명 검거... 학교서도 투약",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59700052> 2023년 1월 20일 최종검색.
 3 아래 표와 같다(법무부 교정본부, 2022교정통계연보, 2022, '수형자 죄명별 인원(65면)과 여성수형자 죄명별 인원(76-77면)'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표1> 마약류 수형자 성별 현황

| 구분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 2012년 | 1,295 | 100.0 | 1,250 | 96.5 | 45 | 3.5 |
| 2013년 | 1,380 | 100.0 | 1,324 | 95.9 | 56 | 4.1 |
| 2014년 | 1,344 | 100.0 | 1,295 | 96.4 | 49 | 3.6 |
| 2015년 | 1,553 | 100.0 | 1,489 | 95.9 | 64 | 4.1 |
| 2016년 | 1,890 | 100.0 | 1,792 | 94.8 | 98 | 5.2 |
| 2017년 | 2,133 | 100.0 | 2,067 | 96.9 | 66 | 3.1 |
| 2018년 | 1,329 | 100.0 | 1,225 | 92.2 | 104 | 7.8 |
| 2019년 | 1,996 | 100.0 | 1,862 | 93.3 | 134 | 6.7 |
| 2020년 | 1,595 | 100.0 | 1,461 | 91.6 | 134 | 8.4 |
| 2021년 | 1,849 | 100.0 | 1,670 | 90.3 | 179 | 9.7 |

4 아래 표와 같다(법무부 교정본부, 앞의 글, '수형자 죄명별 인원(65면)과 외국인 수형자 죄명별 현황(86-87면)'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표2>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 현황

| 구분 | 마약류 수형자 &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 | | | | 외국인 수형자 &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 | | | |
|-------|-----------------------|-------|-------------|-----|-----------------------|-------|-------------|-----|
| | 마약류 수형자 전체 | |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 | | 외국인 전체 | |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 |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 2012년 | 1,295 | 100.0 | 56 | 4.3 | 769 | 100.0 | 56 | 7.3 |
| 2013년 | 1,380 | 100.0 | 52 | 3.8 | 773 | 100.0 | 52 | 6.7 |
| 2014년 | 1,344 | 100.0 | 67 | 5.0 | 770 | 100.0 | 67 | 8.7 |

범역률은 2012년 38.6%(88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6년 49.6%(638명)에 가장 높았고 201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⁵⁾

우리나라 교정기관은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횟수, 재범위험성 및 이수명령 시간을 고려하여 기본·집중·심화로 구분하여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⁶⁾ 심리치료 집중과정은 현재 정부·서울남부·진주·경주·홍성·군산·청주여자·장흥교도소, 충주구치소 등 총 9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⁷⁾ 마약류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체 인원은 2021년 494명으로 2012년 4907명에 비해 89.9%가 감소하였다. 과정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기본과정에 참여한 마약류 수형자는 93.0%가 감소하였고 집중과정에 참여한 마약류 수형자는 4.8% 증가하였다. 심화과정에 참여한 마약류 수형자는 2017년 19명에 비해 2021년에는 47명으로 147.4% 증가하였다.⁸⁾

| 구분 | 마약류 수형자 &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 | | | | 외국인 수형자 &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 | | | |
|-------|-----------------------|-------|-------------|------|-----------------------|-------|-------------|------|
| | 마약류 수형자 전체 | |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 | | 외국인 전체 | |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 |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 2015년 | 1,553 | 100.0 | 117 | 7.5 | 1,123 | 100.0 | 117 | 10.4 |
| 2016년 | 1,890 | 100.0 | 149 | 7.9 | 1,232 | 100.0 | 149 | 12.1 |
| 2017년 | 2,133 | 100.0 | 115 | 5.4 | 1,320 | 100.0 | 115 | 8.7 |
| 2018년 | 1,329 | 100.0 | 126 | 9.5 | 1,338 | 100.0 | 126 | 9.4 |
| 2019년 | 1,996 | 100.0 | 222 | 11.1 | 1,416 | 100.0 | 222 | 15.7 |
| 2020년 | 1,595 | 100.0 | 299 | 18.7 | 1,445 | 100.0 | 299 | 20.7 |
| 2021년 | 1,849 | 100.0 | 425 | 23.0 | 1,386 | 100.0 | 425 | 30.7 |

5 아래 표와 같다(법무부 교정본부, 앞의 글, '죄명별 재범역 인원 현황(176면)'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표3> 마약류 수형자 출소 후 재범역 현황

| 구분 | 출소인원 | | 재범역인원 | | 구분 | 출소인원 | | 재범역인원 | |
|-------|-------|-------|-------|------|-------|-------|-------|-------|------|
| | 인원 | % | 인원 | % | | 인원 | % | 인원 | % |
| 2012년 | 1,295 | 100.0 | 886 | 38.6 | 2017년 | 1,554 | 100.0 | 733 | 47.2 |
| 2013년 | 1,380 | 100.0 | 781 | 40.7 | 2018년 | 1,641 | 100.0 | 794 | 48.4 |
| 2014년 | 1,344 | 100.0 | 784 | 46.0 | 2019년 | 1,417 | 100.0 | 693 | 48.9 |
| 2015년 | 1,553 | 100.0 | 638 | 42.3 | 2020년 | 1,625 | 100.0 | 744 | 45.8 |
| 2016년 | 1,890 | 100.0 | 796 | 49.6 | 2021년 | 1,811 | 100.0 | 762 | 42.1 |

6 법무부 교정본부, 앞의 글 162면.

7 법무부 교정본부, 앞의 글, 57면.

8 아래 표와 같다(법무부 교정본부, 앞의 글, '마약류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현황(162면)'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표4> 마약류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현황

| 구분 | 총원 | | 기본과정 | | 집중과정 | | 심화과정 | |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 2012년 | 4,907 | 100.0 | 4,802 | 97.9 | 105 | 2.1 | 0 | 0.0 |
| 2013년 | 4,937 | 100.0 | 4,830 | 97.8 | 107 | 2.2 | 0 | 0.0 |
| 2014년 | 5,492 | 100.0 | 5,411 | 98.5 | 81 | 1.5 | 0 | 0.0 |
| 2015년 | 4,001 | 100.0 | 3,912 | 97.8 | 89 | 2.2 | 0 | 0.0 |
| 2016년 | 4,623 | 100.0 | 4,159 | 90.0 | 464 | 10.0 | 0 | 0.0 |
| 2017년 | 694 | 100.0 | 574 | 82.7 | 101 | 14.6 | 19 | 8.7 |
| 2018년 | 788 | 100.0 | 648 | 82.2 | 113 | 14.3 | 27 | 9.4 |
| 2019년 | 773 | 100.0 | 610 | 78.9 | 125 | 16.2 | 38 | 15.7 |
| 2020년 | 386 | 100.0 | 265 | 68.7 | 69 | 17.9 | 52 | 20.7 |
| 2021년 | 494 | 100.0 | 337 | 68.2 | 110 | 22.3 | 47 | 30.7 |

이처럼 급속히 증가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교정기관의 마약류사범 재범역률을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수용기간 동안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 등의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정기관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하여 국외 마약류사범 교정프로그램들을 검토하여 국내 교정프로그램의 도입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마약류사범 교정프로그램

1. 미국

미국은 수형자들에게 약물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흔히 메타돈 유지 치료프로그램(Therapy in Methadone Maintenance Treatment)⁹이라 불리는 작용약물 유지 치료(Agonist Maintenance Treatment)처럼 적절한 양의 약물사용으로 약물사용을 줄이는 약물치료법을 병행하는 처우 형태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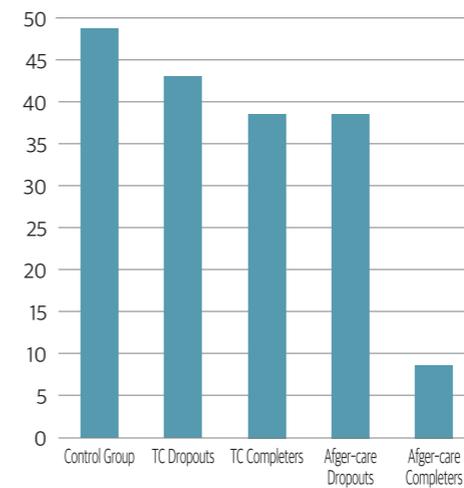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국립약물남용연구소는 '형사사법기관 내 마약류 중독치료의 원칙'¹³ 가지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약물법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프로그램 과정 중 약물을 재사용할 경우 감시감독을 증가하거나 치료를 강화하고 해독, 재활 그리고 사후관리가 종합적으로 마약중독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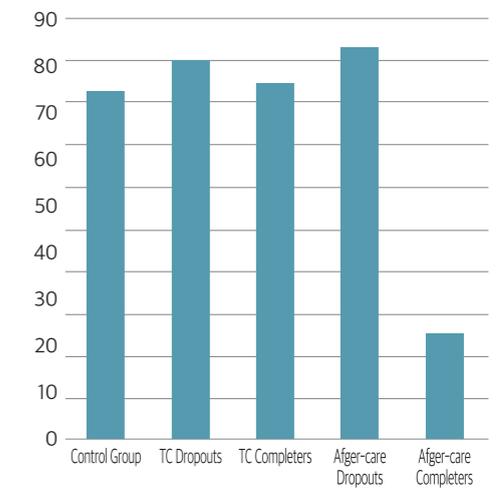
9 작용약물 유지 치료프로그램은 장기간 작용하는 메타돈(Methadone)과 LAAM과 같은 합성 아편계 치료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아편 금단증상을 예방하고, 불법적인 아편 사용의 효과를 차단하여 아편 갈망을 감소시키는데 적절한 1회 용량으로 지속 가능한 기간 동안 입안으로 투약하는 방법이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획특집-약물중독치료", 2006, 22면, http://www.drugfree.or.kr/html/data/PDF/Text_Data/paper/2006_spring/2006_paper_spring_21-34.pdf).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는 의료인 또는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조와 구성원 간의 자조를 통한 치료접근법이다.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아미티 재단이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TC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1년 뒤와 3년 뒤를 추적 관찰하였을 때, TC 기반 사후관리 시설에 다니는 수형자들의 재범역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그림 2> 참고).

<그림1> 교도소 TC(캘리포니아) - 1년 간 재범역률



<그림> 교도소 TC(캘리포니아) - 3년 간 재범역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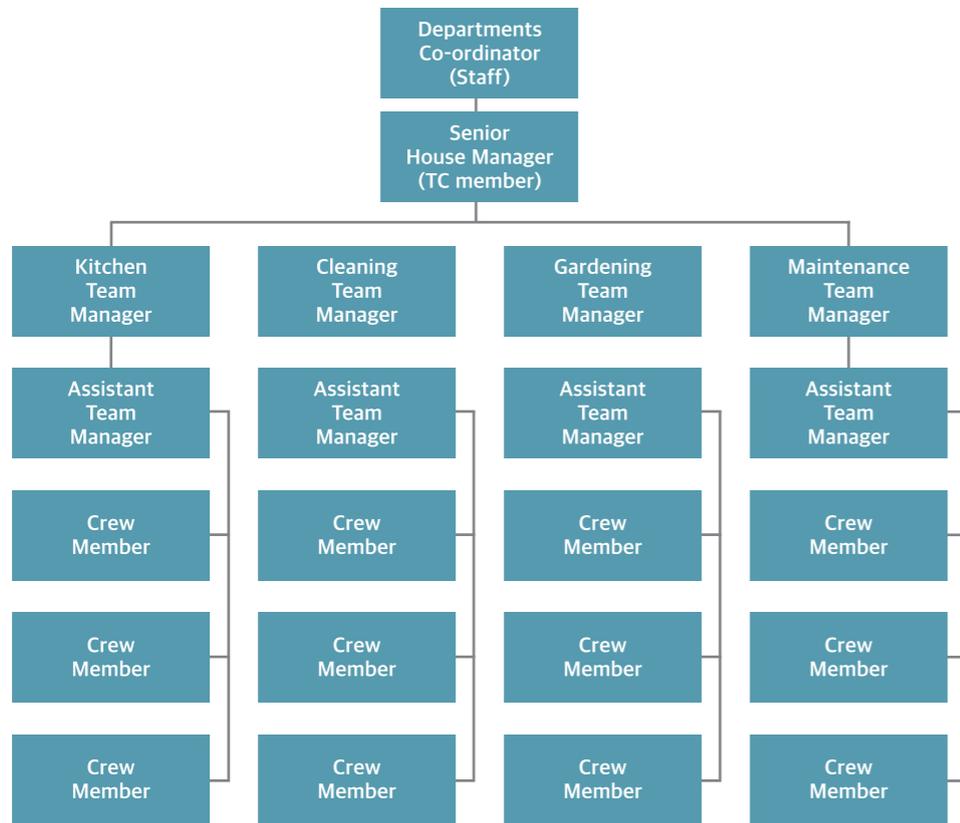
출처 : Rowdy Yates, Rod Mullen, Naya Arbiter & Robert Teltzrow PRISON-BASED THERAPEUTIC COMMUNITIES (TCs): A HANDBOOK FOR PRISON ADMINISTRATORS, TREATMENT PROFESSIONALS AND TRAINERS, 2021, 18면-19면 'FIGURE1: FIGURE 1: Amity Prison TC (California) - 1 year Return to-Custody Rates'과 FIGURE2: Amity Prison TC (California) - 3 year Return to-Custody Rate' 인용

치료공동체는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마약류 재사용과 재범 위험성 억제에 있어 효과성이 입증되어 온 프로그램으로 미국교정시설에서 가장 널리 운영되는 가장 대표적인 교도소 치료 프로그램이다.¹⁰ 약물 사용을 절제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감소함으로써 취업능력을 향상하고 친사회적 가치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은 마약류사범들만 사동으로 분리하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별 처우한다.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한 수형자들의 재범률을 조사하였을 때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수형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

10 김남희/정은희/조상은, "약물사용자의 치료공동체 서비스이용 의사결정과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제10권 1호, 177면.

치료공동체는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성된다.¹¹⁾ 1단계는 기존의 치료공동체 구성원들이 치료공동체의 생활규칙, 치료과정, 운영직원, 교정직원을 새로운 치료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소개한다. 치료 기간은 약 2~3개월로 개인 및 집단상담을 통해 마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치료과정이다. 2단계는 집중적인 약물치료 단계로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이 개입한다. 약 5~6개월이 소요되며 단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강조한다. 마지막 3단계는 성공적인 일상생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2~3개월 동안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반적인 TC 구조도는 <그림3>과 같다.

<그림3> 전형적인 TC 구조도



출처 : Rowdy Yates, Rod Mullen, Naya Arbiter & Robert Teltzrow PRISON-BASED THERAPEUTIC COMMUNITIES (TCs): A HANDBOOK FOR PRISON ADMINISTRATORS, TREATMENT PROFESSIONALS AND TRAINERS, 2021, 23면 'FIGURE 3: A typical TC house structure' 인용

11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홈페이지, <https://crimesolutions.ojp.gov/ratedpractices/52>, 2023년 1월 20일 최종검색.

<표5> 치료 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TC) 프로그램

| 구분 | 치료 기간 | 치료내용 |
|-----------------|-------|---|
| 1단계 유도 및 초기치료단계 | 2~3개월 | • 공동체 활동에 참여 •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약물문제를 파악하고 본질을 이해하는 치료과정 |
| 2단계 집중치료단계 | 5~6개월 | •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과 증거기반 행동치료 개입 |
| 3단계 사회복귀 준비단계 | 2~3개월 | • 사회복귀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

주거용 약물 남용 프로그램(RDAP, 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은 미국 연방교정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U.S.C. 18 § 3621」¹²⁾에 따라 약물남용문제를 가진 연방수형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개인 및 집단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RDAP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3가지 구성요소를 완료해야 한다.

첫 번째는 단위기반 구성(The unit-based component)요소이다.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총 500시간의 과정을 가진다. 교도소에서 약물남용치료프로그램활동과 업무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사이에서 하루를 나누고 1단계가 끝나면 수료증을 받는다. 두 번째는 후속 관리(Follow-up services)이다. 세 번째는 마약류 남용 치료(Transitional drug abuse treatment, TDAT)이다.

RDAP를 이수한 수형자들을 위해 미국 연방교정국에서는 법원이 부과한 형량의 길이를 기준으로 감형을 제안하고 있다. 형량이 30개월 이하는 6개월 감형, 31~36개월 형량은 9개월 감형, 37개월 이상 형량은 12개월을 감형을 해주고 있다.¹³⁾

<표6> RDAP 프로그램 세부내용

| 구성요소 | 내용 |
|---------------|---|
| 1단계 단위기반 구성 | • 6~12개월, 총 500시간의 과정 • 교정시설에서 약물남용치료프로그램활동, 교육프로그램 이수 • 개인, 그룹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 수료증 부여 |
| 2단계 후속 관리 | • 교정시설에서 사후관리(after-care)를 받음 |
| 3단계 마약류 남용 치료 | • 출소 후 6개월까지 치료 지속 • Halfway house에서 운영 |

12 미국연방교정국의 가석방절차(Early Release Procedures Under 18 U.S.C. § 3621(e)).

13 RDAP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fam.org/wp-content/uploads/FAQ-Residential-Drug-Abuse-Program-5.3.pdf>, 2023년 1월 20일 최종검색.

<그림4> 미국 RDAP(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 활동사진



출처 : Federal Criminal Defense Lawyers & Prison Consultants 홈페이지. "RDAP Program | 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 <https://federalcriminaldefenseattorney.com/prison-life/residential-drug-abuse-rdap>, 2023년 01월 10일 검색

RDAP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를 이수자, 참여자, 적격 비참여자로 구분하였을 때 <표7>과 같은 재범률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RDAP의 이수자가 마약류 재범률이 가장 낮았으며 참여 개월 수가 낮을수록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표7> RDAP 프로그램 참여 수형자의 재범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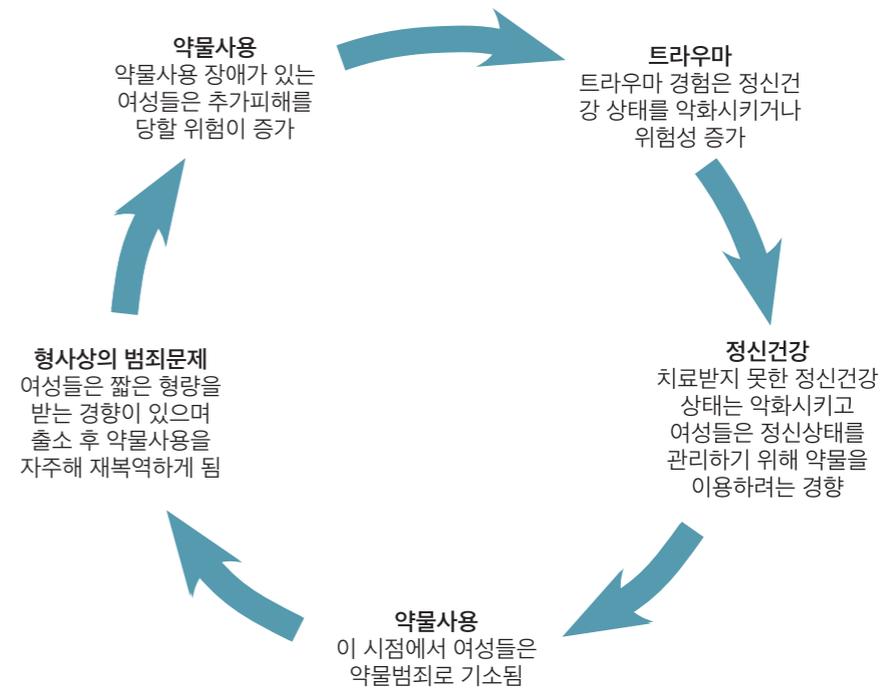
| 구분 | 이수자(n=5,677) | 참여자(n=2,456) | 적격 비참여자(n=341) |
|---------------|--------------|--------------|----------------|
| 재범률 | 48.2% | 59.2% | 68.0% |
| 평균 재범기간 | 24개월 | 20개월 | 16개월 |
| 평균 재범 수 | 2 | 3 | 3 |
| 출소 후 가장 흔한 사건 | 폭행(18.6%) | 폭행(21.7%) | 폭행(30.6%) |

출처 : Recidivism and Federal Bureau of Prisons Programs: Drug Program Participants Released in 2010,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20면, "Table 3. Recidivism Rates for RDAP-Eligible Offenders" 인용

또한, 성별에 따라 약물의 사용과 마약류사범이 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 남성과 달리 여성 마약류사범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상호 관련 요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5>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5> 여성범죄자의 약물사용 도식화



출처 : Edwards, L et al., "A systematic review of post-release programs for women exiting prison with substance-use disorders: Assessing current programs and weighing the evidence", Health & Justice, 2022, <fig 1. Pathways to women's criminal offending> <https://healthandjusticejourna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40352-021-00162-6>

2. 캐나다

캐나다 연방 교정국(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CSC)은 2018년부터 전국 연방 기관에서 재소자 간 주사기 공유를 방지하고 HIV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교환) 프로그램(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 PNEP)¹⁴⁾을 시행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수형자의 비율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으며 이들은 주사기 바늘과 주사기를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된다. 이는 곧 혈액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주된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형자는 교정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피해야 하고 소독 용품이 없으므로 주사 도구를 소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에 위험 수준은 더 높다고 할

14 강은영/신성만/홍민지,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AB-07, 2012, 61면.

수 있다.

PNEP의 목표는 주사기 공유 및 교도소 내에서 유통되는 주사기의 수를 줄이고 정신과 진료 및 아편 중독 치료 프로그램(Opioid Agonist Therapy, OAT)¹⁵⁾을 포함하여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쉽게 한다. <그림6>은 캐나다 아편 사용 장애 관리와 관련해 국가 임상 실무 지침을 도식화한 자료이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이즈(AIDS)를 포함하여 혈액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의 전파를 줄이고자 하였다.

교도소 내에서 PNE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관리 및 운영, 교도소 산업 보건 안전 위원회, 수감자 위원회와 지역사회 자문 위원회 등 광범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캐나다 연방 교정국(CSC)은 PNEP를 시행 이전에 운영에 대한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개별 교정시설과 협력을 유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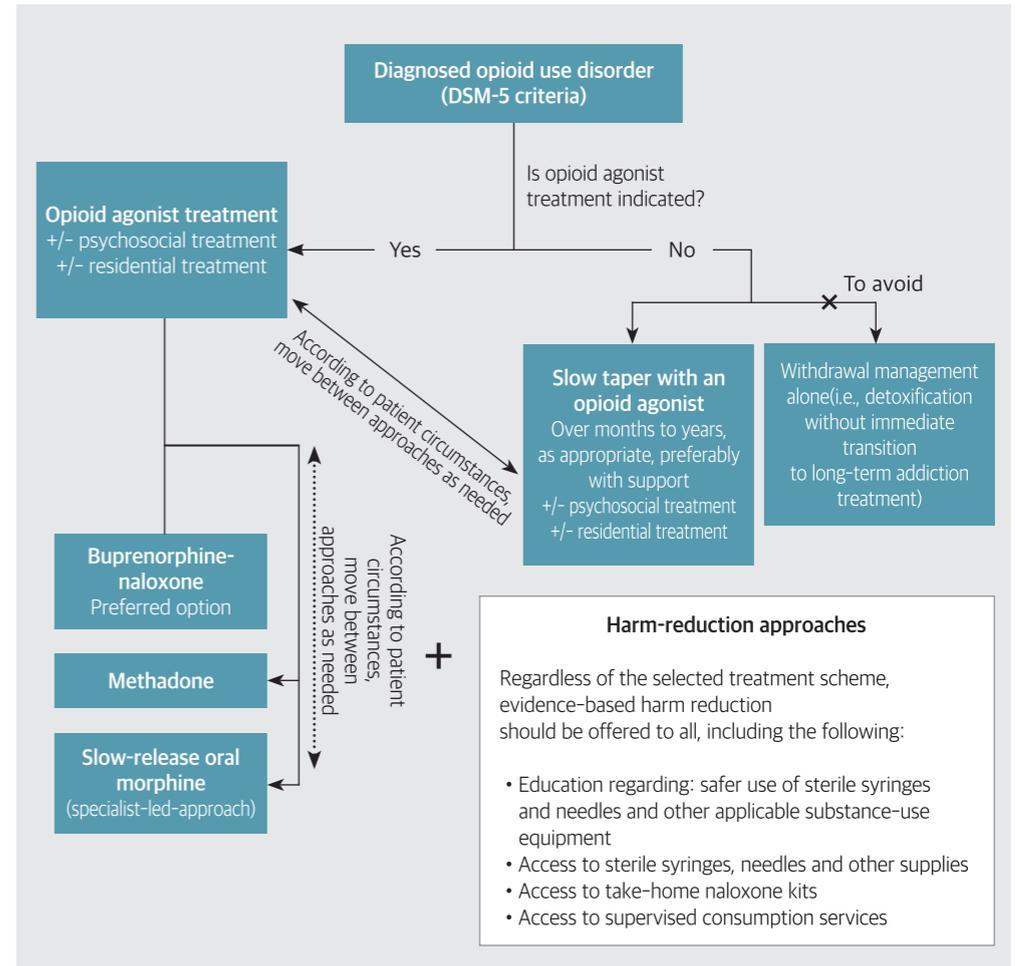
수형자들은 PNEP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방교정국에 있는 보건 서비스 관리부서와 면담을 진행한 이후 의료진들에게 약물 사용, 안전한 사용법, 약물 사용 피해에 대한 교육, 전염병에 대한 상담 및 기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형자는 PNEP 참여와 관련한 보안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교도소장 또는 부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계약서에 서명한다.¹⁶⁾



15 아편계 사용 장애(Opioid use disorder, OUD)는 심각한 개인적, 공중 보건 및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며 치료를 요한다. 효과적인 치료 개입과 후속 조치를 통해 OUD로부터 완화할 수 있으며 중증도 중 중증에 속하는 OUD 재소자들에게 대한 1차 치료인 OAT는 아편계 약물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HIV와 C형 간염의 위험을 줄여 추후 지역사회로 돌아올 때 약물 사용 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이다. OAT 프로그램은 통합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및 피해를 감소하고자 상담, 약물사용 모니터링, 감정-정신 건강 평가 및 모니터링, 심리사회적 치료 개입 및 지원이 제공된다. Correctional Service Canada 홈페이지, "Guidance on Opioid Use Disorder (OAT) Program: August 16, 2021", <https://www.csc-scc.gc.ca/health/002006-3004-en.shtml>

16 Correctional Service Canada 홈페이지, "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 <https://www.csc-scc.gc.ca/health/002006-2005-en.shtml>

<그림6> 캐나다 아편 사용 장애 관리 : 국가 임상 실무 지침



출처 :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CMAJ) 홈페이지, "Management of opioid use disorders: a nation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https://www.cmaj.ca/content/190/9/E24>



<그림7> 캐나다 연방 교정국 주사기(교환) 프로그램(PNEP) 활동사진



출처 : Union of Canadian Correctional Offices 홈페이지 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 PNEP 관련 활동사진, <https://cco-sacc-csn.ca/files/prison-needle-exchange-program-pnep>, 2023년 01월 10일 검색



3. 일본

일본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재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재범방지촉진법(ACT 17)」을 제정하였다. 2016년 이전 마약류 사용자는 환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지원 가능한 병원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위의 법 제정 이후 마약류 사용자의 치료가 시행되어야 함이 명명되면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마약류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 약물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약물의존에 대한 지원과 치료를 강화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다양한 조치와 개입이 시행되고 있다.

유엔 마약범죄국(UNODC)의 2016년 기준 16세에서 64세 중 연간 대마사용 유병률 자료를 살펴보면 대마초는 북아메리카가 12.9%로 가장 유병률이 높았고 서유럽 및 중유럽이 7.0%,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0.6%로 나타났다. 암페타민은 북아메리카가 2.0%로 가장 유병률이 높았고 서유럽과 및 중유럽이 0.7%이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자료는 없었다. 오피오이드의 경우 북아메리카가 4.2%, 서유럽 및 중유럽이 0.6%,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0.2%로 순으로 나타났고 아편은 북아메리카 0.8%, 서유럽 및 중유럽 0.5%,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일본의 국립신경정신의학센터가 16세에서 64.5세의 시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 전국 약물사용실태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일본은 대마초, 암페타민, 오피오이드, 아편의 마약류 약물의 12개월 유병률은 0.1% 미만이었으며 유기용제는 국제자료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나 일본의 경우 유병률이 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⁷⁾

<표8> 약물 사용의 12개월 유병률 국제비교

| 구분 | 대마초 | 암페타민 | 오피오이드 | 아편 | 유기용제 |
|------------|-------|------|-------|------|------|
| 일본 | 0.1% | 0.1% | 0.1% | 0.1% | 0.1% |
| 동아시아/동남아시아 | 0.6% | - | 0.2% | 0.2% | - |
| 북아메리카 | 12.9% | 2.0% | 4.2% | 0.8% | - |
| 서유럽/중유럽 | 7.0% | 0.7% | 0.6% | 0.5% | - |

출처 : Goro Koto et al., (2020), "Table 1: 12-month prevalence of drug use : International comparison"표 번역

¹⁷ Goro Koto, Masayoshi Tarui, Harue Kamioka, Kanna Hayashi, "Drug use, regulations and policy in Japan", IDPC, Japan Advocacy Network For Drug Policy, 2020, 2면.

다르크(ダルク, DARC,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는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 자조 모임이다. 일본 교도소에서는 정기적인 마약류사범 그룹 세션을 다르크 멤버를 초청하여 진행한다.¹⁸⁾ 다르크는 마약류사범 중독자들끼리 각자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단약의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NA(Narcotics Anonymous, 익명의 약물중독자들) 모임'을 운영한다.¹⁹⁾

2005년 26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시작된 다르크 프로그램은 75개 교도소로(2012년 기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다르크는 또래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출소 전 집단치료를 하여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마약류사범 수형자들의 교도소 생활과 출소 후 활동 전반에 걸쳐 격려·지원하고 있다.²⁰⁾

아파리(アパリ, APARI, Asia Pacific Addiction Research Institute)는 아시아-태평양 중독 연구소로 2000년 NPO(Non-Profit Organization; 민간 비영리 단체)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아파리는 1985년 약물 의존자를 한곳에서 원스텝(ONE-STEP)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다르크 뿐만 아니라 병원, 법률사무소, 데이케어, 야간 케어 등 복수의 기관이 종합하여 있는 지역시설이다. 아파리는 사법지원, 시설운영, 연구 및 계몽활동, 가족교실, 전화 상담, 국제협력 활동, 강연활동, 관련 타 기관 연계, 약물 검사용 수액 행정기관 판매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약물 의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²¹⁾

아파리는 마약류사범의 조기개입을 위하여 마약류사범 치료 조건부 보석 및 구류집행정지 프로그램은 형사사법절차의 체포, 구류,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²²⁾ 또한 다르크의 아파리 활동에는 출소 후 취업프로그램과 자조그룹의 참가를 계속 유지하고 약물 사용 중단의 생활에 정착한 사람은 생활지도 등을 하여 1인 생활 및 가정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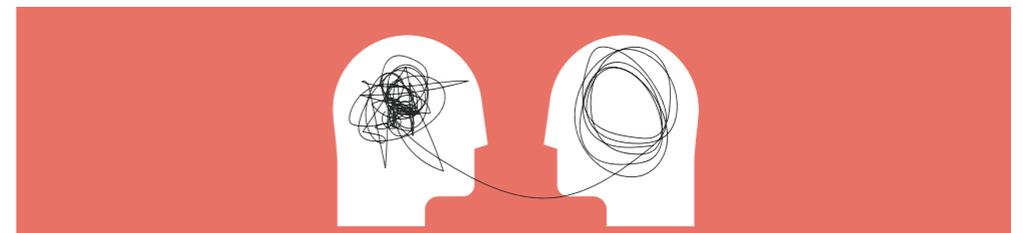
18 강은영 외, 앞의 글, 71면.
 19 한국일보, "일본 약물중독자 마음의 고향 '다르크'를 아시나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1240459701426>, 2018년 1월 24일, 2023년 1월 20일 최종검색.
 20 강은영 외, 앞의 글, 71면.
 21 강선경/차명희, "일본의 약물 중독치료 시설인 '다르크(DARC)'의 동향 분석: '역사적 선도성(先導性)'의 관점에서 본 지역의 역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68호, 2019, 34면.
 22 강은영, 앞의 글, 44면.
 23 강선경/차명희, 앞의 글, 36면.

<표9> 다르크 & 아파리사업의 생활시설의 프로그램

| 구분 | 월-목 | 토 | 일 |
|-------------|---|------|----------------|
| - | 아침식사 | 개별작업 | |
| 9:30 | 청소 | | |
| 10:00 | 가정 미팅, 다르크 미팅, 후지오카RPP | | |
| 11:00 | 역할 작업시간과 개인작업 | 팀 미팅 | 각 조별 미팅 1.2 |
| 12:00 | 점심식사 | | |
| - | 대북 연습(30분) | | |
| 13:00-14:00 | 스포츠, 소그룹활동, 그룹 미팅, 음악, 예술프로그램, 브레인스토밍, 인카운티 그룹 활동 | | |
| 14:00 | 각 역할 작업시간과 개인 작업 | | |
| - | 저녁식사 | | |
| 19:00-21:00 | 자조그룹참가(NA, AA 등) | | |

출처: 강선경/차명희, "일본의 약물 중독치료 시설인 '다르크(DARC)'의 동향 분석: '역사적 선도성(先導性)'의 관점에서 본 지역의 역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68호, 2019, <표2> 치료회복시설의 주간 시간표, 36면 재인용

세리가야 필로폰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하 스마프, SMARPP(スマーフ), The Serigaya Methamphetamine Relapse Prevention Program(せりがや覚せい剤依存再発防止プログラム)은 미국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필로폰을 포함한 불법약물 사용자들을 정신 병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카나가와현립 정신의료센터 세리가야 병원에서 개발된 인지 행동 요법형 외래 의존증 치료프로그램이다.²⁴⁾ 스마프(SMARPP)는 약물 남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전문가들의 치료를 요구하는 제도로 약물 남용자를 위한 새로운 인지 행동 치료법이다. 일본의 정신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외래환자 집단치료를 통해 약물 의존증 환자에게 동기부여와 치료를 시도하는 여러 임상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SMARPP는 그 중 효과성이 많이 입증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진 프로젝트 중 하나로²⁵⁾ 현재 많은 일본의 정신과 기



24 Takano A, Kawakami N, Miyamoto Y, Matsumoto T, "Improvement in the therapeutic attitudes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who offer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owards substance abusers", Nihon Arukoru Yakubutsu Igakkai Zasshi = Japanese Journal of Alcohol Studies & Drug Dependence, 2014 Feb;49(1):28-38, PMID: 24818356.
 25 Kobayashi O, [Treating drug dependent patients through outpatient group therapy-Serigaya Methamphetamine Relapse Prevention Program (SMARPP)]. Seishin Shinkeigaku Zasshi = Psychiatria et Neurologia Japonica, 2010 ;112(9):877-884, PMID: 21077296.

관에서 도입하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주 1회 마약류 사용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인지행동치료로 구성되어 있다. 소변 검사를 통해 이들이 주기적으로 마약을 활용하는지 파악하며 또한 희망에 따라 참여 횟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단발성 참여보다는 1년 이상의 정기적인 치료를 진행하였을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마약 의존 범죄자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8> 일본 다르크(日本ダルク) 홈페이지



출처 : 일본 다르크 홈페이지, <http://darc-ic.com>, 2023년 2월 2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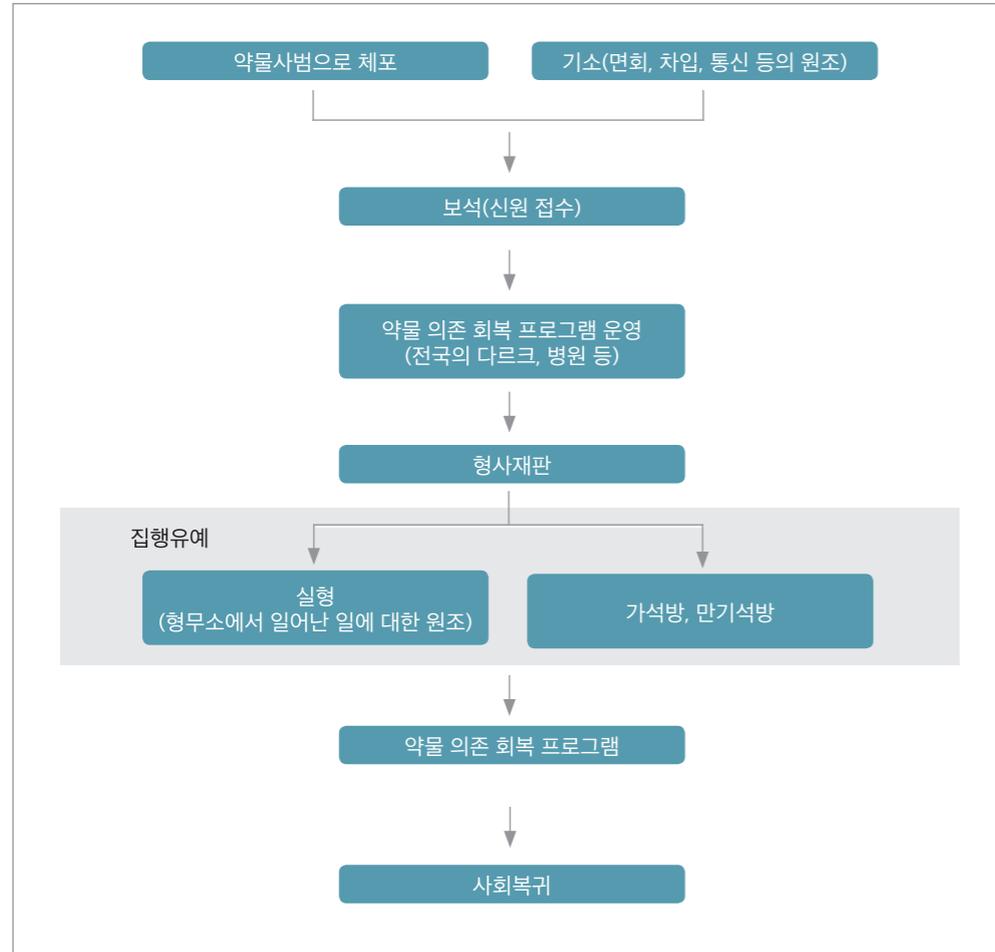
26 Tanibuchi Y, Matsumoto T, Imamura F, et al, "Efficacy of the Serigaya Methamphetamine Relapse Prevention Program (SMARPP): for patients with drug use disorder: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1-year follow-up outcomes", Nihon Arukoru Yakubutsu Igakkai Zasshi = Japanese Journal of Alcohol Studies & Drug Dependence, 2016 Feb;51(1):38-54, PMID: 27295823.

<그림9> 일본 아파리(APARI) 홈페이지



자료 : 일본 아파리 홈페이지, <https://apari.or.jp>, 2023년 2월 2일 검색

<그림10> 다르크의 이파리사업 사법지원 흐름도



자료 : 강선경/차명희, 앞의 글, “<표1> 다르크의 아파리사업의 사법지원 흐름도” 36면 재구성



<그림11> 스마프(SMARPP) 프로그램 소개 홈페이지



자료 : 스마프 SMARPP(스마프) 소개 관련 홈페이지, http://seishin.kanagawa-pho.jp/treat2/depend_intro.html, 2023년 1월 10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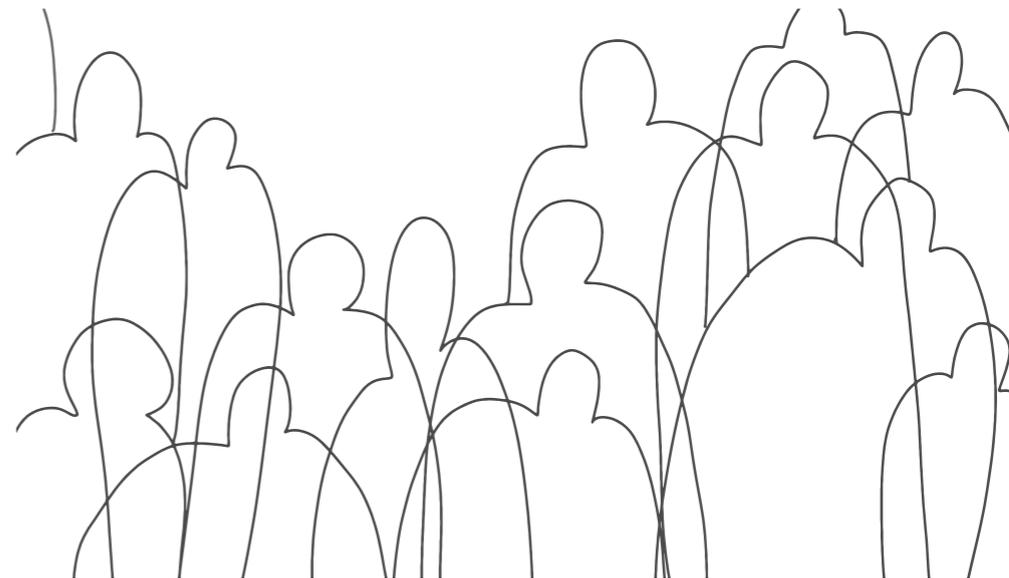
III. 맺음말

국내 급증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대응 및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기관에서 선제적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일본 3개국의 교정기관 마약류사범 프로그램 중 효과성이 드러난 프로그램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더 많은 마약류사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나 더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하였고 3개국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마약류사범 교정정책과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이 연구의 한계이다. 다만 기존에 국내에 알려져 있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변화한 부분을 점검하였다. 이와 같은 마약류사범 프로그램에 관하여 소개를 함으로써, 마약류사범에 대한 개별처우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선경/차명희, “일본의 약물 중독치료 시설인 ‘다르크 (DARC)’의 동향 분석 : ‘역사적 선도성 (先導成)’의 관점에서 본 지역의 역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68호, 2019.
- 강은영/신성만/홍민지,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AB-07, 2012.
- 김남희/정은희/조상은, 약물사용자의 치료공동체 서비스이용 의사결정과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도움추구과정단계모형의 적용. 미래사회복지연구, 10(1), 173-205, 2019.
- 법무부 교정본부, 2022교정통계연보, 2022.
- 서울경제, “10대 판매총액까지 등장...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범죄”, <https://www.seaily.com/NewsView/29KNWD09DN>, 2023년 1월 29일, 2023년 1월 29일 최종검색.
- 스마프 SMARPP(스마-프) 소개 관련 홈페이지, http://seishin.kanagawa-pho.jp/treat2/depend_intro.html, 2023년 1월 10일 검색.
- 연합뉴스, “마약성 진통제 유통·판매한 10대 42명 검거... 학교서도 투약”,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59700052>, 2021년 5월 20일, 2023년 1월 20일 최종검색.
- 일본 다르크 홈페이지, <http://darc-ic.com>, 2023년 2월 2일 검색.
- 일본 아파리 홈페이지, <https://apari.or.jp>, 2023년 2월 2일 검색.
- 한국일보, “일본 약물중독자 마음의 고향 ‘다르크’를 아시나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1240459701426>, 2018년 1월 24일, 2023년 1월 20일 최종검색.
-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CMAJ) 홈페이지, “Management of opioid use disorders : a nation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https://www.cmaj.ca/content/190/9/E247>
- Edwards, L., Jamieson, S. K., Bowman, J., Chang, S., Newton, J., & Sullivan, E, (2022), A systematic review of post-release programs for women exiting prison with substance-use disorders: Assessing current programs and weighing the evidence. Health & Justice, 10, 1-32.
- Federal Criminal Defense Lawyers&Prison Consultants 홈페이지, “RDAP Program|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 <https://federalcriminaldefenseattorney.com/prison-life/residential-drug-abuse-rdap>, 2023년 2월 2일 검색.
- Goro Koto, Masayoshi Tarui, Harue Kamioka, Kanna Hayashi, “Drug use, regulations and policy in Japan”, IDPC, Japan Advocacy Network For Drug Policy, 2020.
- Kobayashi O, “Treating drug dependent patients through outpatient group therapy-Serigaya Methamphetamine Relapse Prevention Program (SMARPP)”, Seishin Shinkeigaku Zasshi=Psychiatria et Neurologia Japonica. 2010 ;112(9):877-884, PMID: 21077296.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홈페이지, <https://crimesolutions.ojp.gov/ratedpractices/52>, 2023년 2월 2일 최종검색.

- RDAP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famm.org/wp-content/uploads/FAQ-Residential-Drug-Abuse-Program-5.3.pdf>, 2023년 1월 20일 최종검색.
- Recidivism and Federal Bureau of Prisons Programs:Drug Program Participants Released in 2010,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2022.
- Rowdy Yates, Rod Mullen, Naya Arbiter&Robert TeltzrowPRISON-BASED THERAPEUTIC COMMUNITIES (TCs):A HANDBOOK FOR PRISON ADMINISTRATORS, TREATMENT PROFESSIONALS AND TRAINERS, 2021.
- Takano, A, Kawakami, N, Miyamoto, Y.,&Matsumoto, T. “Improvement in the therapeutic attitudes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who offer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owards substance abusers”, Nihon Arukoru Yakubutsu Igakkai Zasshi=Japanese Journal of Alcohol Studies & Drug Dependence, 49(1), 28-38, 2014.
- Tanibuchi, Y., Matsumoto, T., Imamura, F. U. M. I., Wakabayashi, A, Kawachi, H. I. R. A. K. U., Hikitsuchi, E., ...&Wada, K, “Efficacy of the Serigaya Methamphetamine Relapse Prevention Program (SMARPP):for patients with drug use disorder: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1-year follow-up outcomes.” Nihon Arukoru Yakubutsu Igakkai zasshi=Japanese journal of alcohol studies & drug dependence, 51(1), 38-54, 2016.
- Union of Canadian Correctional Offices 홈페이지, 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 PNEP 관련 활동 사진, <https://ucco-sacc-csn.ca/files/prison-needle-exchange-program-pnep>, 2023년 01월 10일 검색.



NEWS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교정본부TV)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February + Vol. 561

야근 근무자 특수건강검진 개선 알림

추진 배경 야근근무자에게 특수건강검진 항목을 대폭 늘리고 검사 방법을 개선해 실질적 건강 관리 지원

개선 사항 실효성 있는 검사를 위해 건강검진비를 1인 10만 원으로 인상
• 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암 요인 검사 등 검사항목 추가
• 집단검사 방식에서 의료기관 방문검사로 개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검진 시 공가 부여

시행 시기 2023년 특수건강검진부터 시행

| 야근 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 | | |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1인 2만5000원 | 1인 3만 원 | 1인 6만 원 | 1인 10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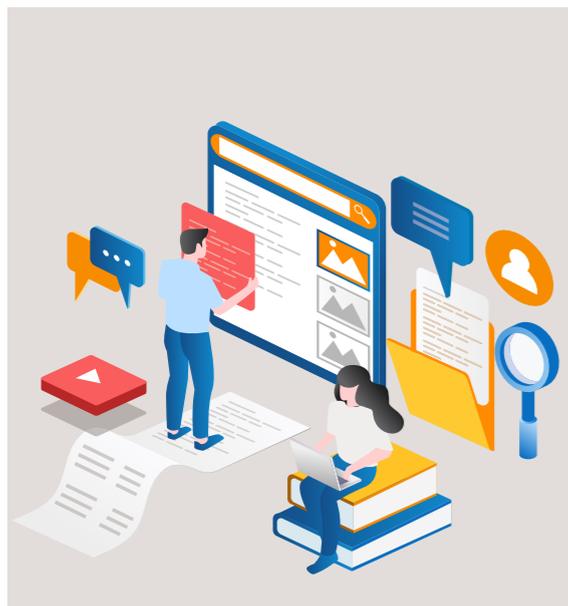
순직 교정공무원 총흔탑 건립 계획



추진 배경 6·25 전쟁과 교정업무 수행 중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직 교정공무원을 위한 총흔탑을 건립해 교정 공무원 사기 진작 및 호국정신 함양

건립 형식 총흔탑 및 추모비

보안업무 관련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활용 계획



추진 목적 모바일 기기에서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활용해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

활용 방안
• 주요 기능: 업로드 기능(사진, 서류 등), 정보 활용(수용동 정보) 등
• 운영 기기: 태블릿PC형 300대, 스마트폰형 400대
※ 수용자 입소 및 NFC 기술을 활용한 야간 수용관리 업무 증점 활용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목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상시 유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마련 필요

활용 방안
• 경징계 사건에 대해서도 중징계 문책전보 기준 적용
• 전 직원 서약서 징구, 결의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 적극 시행
• 기관장·부서장 등에 대한 지휘책임,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김석구

광역특별사법경찰대 출범

서울지방교정청은 1월 19일 교정시설내 범죄 근절을 위해 광역교정경찰대를 공식 출범했다. 정병헌 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수용자의 시설 내 범죄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 차원 높은 교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 교위 김승일

성금 전달 행사

서울구치소는 1월 18일 관내 장애인, 노인, 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녹향원·마리아의 집·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 홀몸 노인 등 불우이웃 차상위 가구(10개 가구)에게 각 1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민낙기 소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 사각지대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안양교도소 | 교사 이승연

성금 전달 행사

안양교도소는 1월 17일 안양시의 희망나눔지역아동센터,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수원구치소는 1월 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임명장 전수 및 공무원 선서, 꽃다발 수여식 등

로 진행됐다. 서호영 소장은 “교도관으로 첫 발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시설 참관 행사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1월 12일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과 관련, 사업 적정성 평가 및 국유재산개발 사업 계획을 위해 한국 조세제정연구원 연구위원 3명에 대한 시설 견학 및 참관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현대화로 구현된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유관기관 합동 방호훈련 실시

인천구치소는 1월 12일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국가중요 시설 유관기관인 군·경찰·소방 등과 합동 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기관에 대한 침투 및 진압, 고층건물 화재, 응급환자 대응 등으로 진행됐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수용자 물품 기증

서울남부구치소는 1월 19~20일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한과과귀미 2000개, 기독교분과로부터 떡 2000개, 불교분과로부터 굴 2500개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수용자를 위로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공명환

직원 격려 행사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정본부장이 쓴다! 기관장이 쓴다!’ 행사를 실시했다. 수용관리를 위해 힘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커피차를 비롯해 복지단체의 출장 붕어빵으로 더욱 풍성한 시간을 만들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채병준

청렴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1월 2일 새해를 맞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체 제작한 리플

릿을 배포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렴 분위기의 확산을 강조하는 시간이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홍재성

유관기관 협의회 실시

여주교도소는 1월 10일 여주소방서와 함께 응급상황 발생 대응 체계 등을 논의하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정시설과 수용환경의 특수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등 실질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이동휘

시설 참관 행사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1월 12일 ‘정명성 작가와 함께 하는 답사 여행모임’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 참관인들은 컴퓨터운영선반, 한식조리 등의 직업훈련과정과 독거 수용동을 둘러보며 교정 현장 확인 및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위문품 전달 행사

춘천교도소는 1월 19일 사회복지시설 세 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직원들이 직접 모은 성금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전달해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황진석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아낌없는 사랑과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위문품 전달 행사

원주교도소는 1월 18일 가톨릭 사회복지회 소속 천사노인 요양원에 140만 원 상당의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원주교도소 사랑나눔봉사회에서는 원주복지원과 최양업토

마스의집에 라면 및 생필품 등 100만 원 상당을 기증하기도 했다.

강릉교도소 | 교사 고경오

성금 전달 행사

강릉교도소는 1월 16일 강릉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4곳을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강릉교도소 전 직원은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고 다짐했다.

영월교도소 | 교위 서찬우

시설 참관 행사 실시

영월교도소는 1월 11일 제36보병사단 부대원들의 시설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부대원들은 교정관련 홍보영상 시청 및 구내 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과 교정시설에 대해 이해하고 유관기관 협조관계 증진 및 자체 방호계획 수립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수용자 물품 기증

강원북부교도소는 1월 20일 속초시 소재 신홍사로부터 기증품을 기부 받았다. 허만혁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기증품을 기부해주신 신홍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신년맞이 행사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월 2일 새해를 맞아 신년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규성 지소장은 “2022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해에는 늘 건강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제4대 소장 취임식

김영식 소장이 1월 2일 소망교도소 제4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김영식 소장은 “전 직원이 교화 열정으로 단합해 수용자의 내적 변화와 재범 방지에 더욱 기여 할 수 있도록 선진국 민영 교정사례를 적용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최윤호

성금 전달 행사

대구지방교정청 미소봉사단은 1월 18일 자매결연가정과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게 위문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생필품과 위문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대구교도소는 1월 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나눔으로써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공직생활의 적응도를 높이고자 한 자리였다. 김남주 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며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부산구치소는 1월 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박수연 소장은 “새로운 출발을 부산구치소에서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강중구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월 1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빵과 커피라면 1300개를 기부 받았다. 장중선 소장은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을 수용자들에게도 잘 전달해 교정교화에 힘쓰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김시진

성금 전달 행사

창원교도소는 1월 9~13일까지 소망원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 9곳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총 37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12일에는 소망원과 푸른꿈 그룹홈에 소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과제빵 직업훈련반의 교육생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빵도 전달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이재운

나눔 행사 실시

부산교도소는 1월 16~20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홍연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 어르신 가정처럼 소외된 지역사회의 이웃을 살피는 등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박승현

성금 전달 행사

포항교도소는 1월 18일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44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지역사회 및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준비했다. 장원재 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사랑과 나눔의 교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진주교도소는 1월 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철민 소장은 “교정공무원으로의 첫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구치소 | 교위 장지운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대구구치소는 1월 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직원에 대한 환영의 의미로 계급장과 함께 꽃다발을 전달했다. 한천영 소장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한 자세로 근무하길 바란다”며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윤시현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직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임용 직원에 대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나눴다. 김광희 소장은 “새로운 출발을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신동관

장학금 전달 행사

안동교도소는 1월 3일 풍산을 풍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생 3명에게 각 20만 원의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안동 MBC 경북 공동모금회에 2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월 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강성현 소장은 “공직의 첫 발걸음을 이곳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경험을 잘 쌓아 어느 교정시설에 가든 지 책임감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교정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1월 18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협조해 생명나눔·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허덕환 소장은 “이번 헌혈 활동이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사 최도원

승진·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월 9일 승진·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송진수 소장은 “우리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 교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울산구치소는 1월 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영광 소장은 “처음에는 낯설어 긴장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훌륭한 교정공무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이상길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경주교도소는 1월 1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릴레이 운동을 실시했다. 최재우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혈액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명 나눔에 앞장서서 지역사회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통영구치소는 1월 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진아 소장은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한 명의 교정공무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봉사활동 실시

밀양구치소 미르피아 보라미봉사단은 1월 18일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관내 마을회관 3곳을 방문해 15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독거노인 4가정을 방문해 각 10만 원씩 성금을 전달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나눔 행사 실시

상주교도소 달팽이 봉사단은 1월 18일 사벌국면의 희망재활원, 노인회관 2곳, 소외가정 2곳을 방문해 총 2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달팽이 봉사단은 상주교도소 직원들의 참여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최경환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류기현 대전지방교정청장이 1월 5일 취임을 맞아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류기현 청장은 소속기관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순국선열 묘역을 참배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위문 행사 실시

대전교도소는 1월 4일 남녀 출역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위문 공연 '리본 RE:BORN'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수용자들의 피로도와 무력감을 해소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수용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단체 늘품이엔티의 재능기부를 받아 진행됐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청주교도소는 1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의 협조로 '2023년 제1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윤순풍 소장은 "여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랑 나눔을

해줘 고맙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교도소 | 교사 광태업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천안교도소는 1월 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기용 총무과장은 "앞으로 교정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와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해줄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조은희

위문품 전달 행사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11일 아동시설 참 좋은 집 등 사회복지시설 5곳 및 지역아동복지시설에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강기천 소장은 "직원들이 바자회와 일일분식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줘 고맙다"며 "시설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공주교도소는 1월 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정진호 소장은 이날 신규직원과 소통하며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켰고 축사를 통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당부했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비상대기숙소 공동세탁실 개선

충주구치소는 1월 17일 비상대기숙소 세탁실 개선 공사 진행을 마무리했다. 기존의 낡은 공동세탁실을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로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또한 세탁기-건조기 교체, 벽걸이 텔레비전 설치, 직원휴게실 확보 등으로 직원복지를 향상시켰다.

홍성교도소 | 교사 김희빈

승진·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1월 9일 승진·신규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박석규 소장, 각과 과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꽃다발 전달과 계급장을 수여했다. 참석 직원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환영을 통해 화목한 기관 분위기 개선에 기여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위문 행사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1월 19일 지역 소재 공동생활가정 3곳을 위문하고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위문 행사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월 19일 소외된 이웃들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제한국 소장은 "인근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더 나은 내일과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전운배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월 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진행했다. 신규직원 교도시보 한서현 등 7명은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영광스럽고 앞으로 열심히 배워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인균

나눔 행사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1월 17일 장애인 복지시설 밀알의 집과 아동보육원인 애육원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동현 청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교정이 되겠다"며 나눔 문화 동참 소감을 밝혔다.

광주교도소 | 교위 이현진

나눔 행사 실시

광주교도소는 1월 18일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복귀 삼각동과 일곡동 내 학생 6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규철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찰

문홍성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월 17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했다. 변화하는 교정행정 프로그램과 수용관리 등 교정현장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수용동 등 구내 시설을 시찰하고 300만 원 상당의 모시송편 1100개를 전달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수용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개최

순천교도소는 1월 26일 '2022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순천교도소 산업체위탁교육장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제5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졸업생 18명은 전문학사 학위와 한식·양식·제과·제빵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다. 백금태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시설 참관 행사 실시

목포교도소는 1월 5일 지역 주민 16명을 대상으로 민원실, 심리치료센터, 자치수용동 등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참관 대표자 이상현 씨는 "대중매체에서 비춰지는 교정기관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교도소 | 교위 우영미

성금 전달 행사

군산교도소 옥정골 보라미봉사단은 1월 18일 군산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등을 방문해 총 12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2009년 설립된 옥정골 보라미봉사단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계획이다. 사랑의 집 박경애 원장은 "군산교도소 직원들의 관심과 정성으로 따뜻한 설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고동성

위문품 전달 행사

제주교도소는 1월 18일 성이시들복지의원, 제주사랑요양병원 등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1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병호 소장은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우리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흥교도소 | 교사 채종건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장흥교도소는 1월 9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진행했다. 조병주 소장은 "교정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항상 자긍심을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나눔 행사 실시

해남교도소는 1월 18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최종일 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온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정읍교도소 | 교도 윤홍익

나눔 행사 실시

정읍교도소는 1월 18일 사회복지시설 2곳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따뜻한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지역 시민과 유대 관계 결속 및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국군교도소 | 중위 천준경

민·관·군 교정기관 협력 체계 구축

국군교도소는 1월 19일 여주교도소·소망교도소의 교정기관장을 초청해 신축수용시설 참관 및 교정업무 발전 토의를 진행했다. 국군교도소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공용휴게실 및 호흡감지센서, 바이오월 등을 참관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정동우회 | 사무총장 송영삼

교정동우회·정우회(특별회) 정기총회 개최

퇴직 교정공무원 단체인 교정동우회(회장 이태희) 및 정우회(특별회)는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총회(서면개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예산결산과 2023년도 예산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정우회는 이국주 전(前) 부산구치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서울동부구치소 교위 황의중

황의중 교위는 1995년 9급 교도로 임용된 후 28년 동안 성실하고 소신 있는 근무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배상 및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원 관련 소송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교정행정에 기여했다.



울산구치소 교위 이미영

이미영 교위는 현재 여성수용동 팀원 근무자로 신입 여성 수용자가 입소 신체 검사 및 소지품 검사 시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용자의 소지품을 면밀히 검사해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천안개방교도소 교감 김진숙

김진숙 교감은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복지와 구입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직원 및 수용자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기능전환 추진반의 수석팀장을 맡아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



광주교도소 교위 노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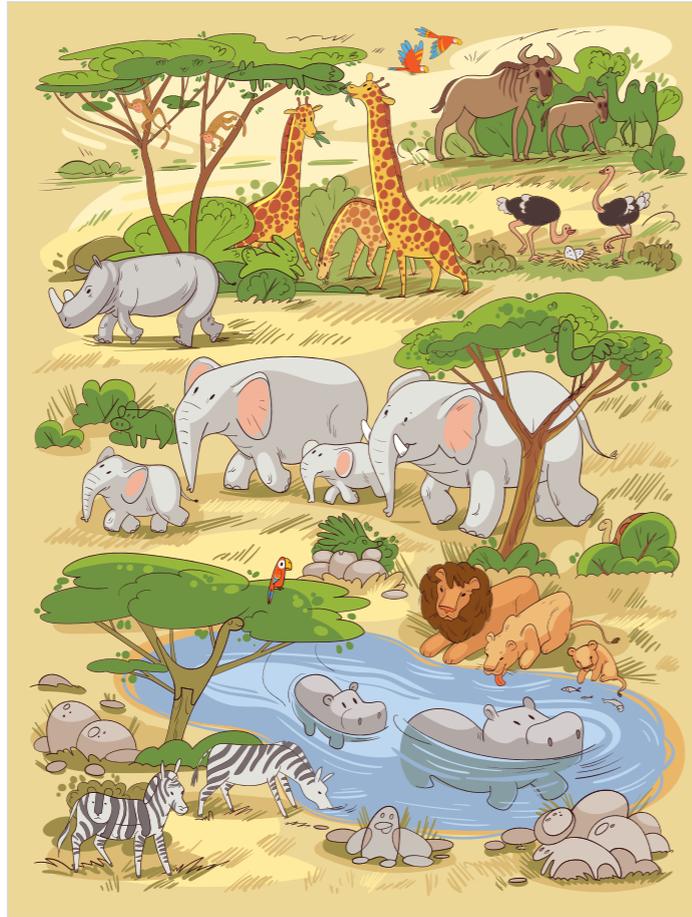
노근학 교위는 출정과 근무자로서 출정 중 수용자 규율유지 및 외부인 접촉 사전 차단 등으로 교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며 법정 구속자와 출정 수용자의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해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에 기여했다.

독자퀴즈

숨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숨은 그림 10개를 찾아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여우
-  토끼
-  고슴도치
-  호랑이
-  펭귄
-  닭
-  낙타
-  뿔소
-  돼지
-  공룡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걱정없이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 20종

일반 휴게음식점(연면적 100㎡ 이상),
(관광) 숙박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농어촌민박

보상범위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

| 담 보 | | 보상 한도액 |
|-----|------|--------------------------------|
| 대 인 | 사 망 | 1명당 1억 5천만 원 (피해자 수 제한없음) |
| | 후유장애 | 1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 | 부 상 | 50만 원 ~ 3천만 원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 대 물 | | 1사고당 10억 원 |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손해까지 보상

가입문의

메리츠화재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흥국화재 1688-1688 | 삼성화재 |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 KB손해보험 1544-0114 | DB손해보험 1588-0100 | 해나손해보험 1566-3000 |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sh수협보험 1588-4119 | 신한 1544-3030 | MG새마을금고 1599-9010 | MG손해보험 1588-5959 | 캐롯손해보험 1566-0300

소규모 음식점 사장님들
주 — 목!!!

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음식점 대상 '재난희망보험' 출시

연면적 10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사업주에게 희망이 되는
임의가입자용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재난사고에 대비하세요~
재난희망보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캐롯손해보험 내가게보험 (<https://bit.ly/carrot-hope>)

교정본부 유튜브 채널 새단장!

유튜브에서 '교정본부TV'를 검색하세요
www.youtube.com/교정본부TV



★ 교정본부(Korea Correctional Service)
공식 유튜브 채널이 새단장을 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교정본부가 함께 합니다.